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 방안 연구

양원탁 · 박진경



참여연구진

저 자 양원탁, 박진경

연구진 연구책임자 양원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진경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요약

1. 연구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는 확대되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투자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
 -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심화할 가능성이 크고, 인구감소 시대 지역은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 지역의 재정투자와 국고보조는 지속해서 증가하였으나, 관 주도의 단발적·소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비효율성 및 효과성 문제가 제기
- 정부는 재정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지역 투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도를 도입
 - 민간자금과 금융기법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체가 되어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설계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금융 논리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유용하나,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에는 한계가 발생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PF 대출, 모펀드의 후순위 출자, 특례보증 등 금융 기법과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금융 관점에서는 성공가능성이 높음
 - 금융 중심의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전국 단위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유용하나,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프로젝트 추진에는 한계가 발생
- 경북은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며, 체계적인 조성 및 운용을 위한 제반 검토가 필요
 -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 펀드로서 필요성과 타당성 확보, 법·제도적 근거 마련, 정책목표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적절한 운용체계 확립이 필요

□ 연구목적

-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의 효과성, 한계점, 차별성을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자체적인 민간투자 펀드 조성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조성 논리를 마련
- 경상북도의 자체적인 민간투자 펀드 조성과 관련한 법·제도적 사항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
- 경북 민간투자 관련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하여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의 조성을 위한 추진 방향과 체계적인 운용 방안을 제안

2) 주요 연구내용

□ 이론 및 정책 동향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정책 펀드 조성과 관련한 쟁점을 도출하고 연구의 전반적인 토대를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과 관련한 법·제도를 분석하고, 주요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제도적인 쟁점 사항을 도출함

□ 경상북도 현황과 민간투자사업 특성

- 경상북도 현황과 중장기 발전과 관련한 주요 계획을 분석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의 투자와 관련한 거시적인 시사점을 도출
- 경상북도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의 지역 및 유형별 수익 특성과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투자 분야 설정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

□ 지역특화 펀드 조성 사례분석

- 지역 단위에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조성한 특화 펀드 사례를 선정하여 조성 측면, 운용 측면, 성과 및 청산 측면에서 특성을 분석
- 국내외 지역특화 펀드 조성 사례를 바탕으로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의 조성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 방안 제안**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목표 달성 및 전문적인 운용을 위한 전략을 제안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 및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

2.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 방안

1) 펀드 조성 필요성과 추진 방향

(1) 필요성

□ **'전략의 시대' 지역투자의 패러다임 전환**

- 지역발전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영역은 확대되고 추진 주체가 다변화면서 분권형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
- 민관협력을 통해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 정부 방향에 맞추어 지역에서도 민간자금을 활용해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 정책금융 수단 필요
- 시·도에서 소규모·단발적 재정투자 대신 민간자금의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도와 시너지 효과 창출**

-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수익형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기는 어려움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는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 추진하기 어려운 공공성 기반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시너지 창출 가능

□ **지역투자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지역소멸 방지**

- 지역활성화 펀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양호한 비수도권 일부 지역의 대규모 사업 위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 2024년 비수도권의 투자위축과 건설경기 악화의 상황에서 지역별 시장구조 특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민간을 유인할 수 있는 수단 필요

(2) 추진 방향

□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 4차 산업혁명과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민간자금의 레버리지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는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마중물을 마련
- 정부의 민간투자 및 지역 활성화 정책 방향에 맞추어 시·도 단위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지역 활성화의 공통 목표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펀드를 운용하여 공공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도모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도 보완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구조로 추진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모펀드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자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운용
- 경북 시장구조를 반영하여 시군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를 창출

□ 펀드의 안정적인 조성 및 운영 기반 마련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의 조성 및 운용 과정에 적절히 개입하기 위해 법적인 기반하에 구체적인 정책의 틀을 사전에 마련
- 민관협력 방식의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관리·평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
- 민간 부문의 펀드 출자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늘리기 위하여 각종 규제 개선과 절차 간소화, 적절한 인센티브 강화조치도 함께 마련

2) 펀드 조성 전략

(1) 민자유치 사전 준비와 민간투자 활성화 로드맵 수립

□ 시·군의 민자유치 사전 준비를 통한 불확실성 해소

- 토지 확보, 개발 추진을 위한 인·허가 등은 프로젝트 추진의 시간과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를 통해 행정 불확실성을 해소
- 프로젝트 발굴 단계에서는 행정 리스크를 고려하여 발굴하고, 발굴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관련 리스크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로드맵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운용 기반 마련

- 정책 및 시장환경이 지속해서 변경되는 상황에서 펀드 조성과 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법률과 조례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의 목표, 출자구조와 분야, 재정 출자 규모, 운용체계, 연차별 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 로드맵 수립 필요

(2)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자체펀드 운용구조 마련

□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발굴 및 포트폴리오 구성

- 경북 여건을 반영하여 투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융복합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세부적인 정책목표에 따라 투자 유형을 세분화
 - 투자유형은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효율화, 민자사업의 수익성 개선,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의 보완 등 3가지 측면에서 세분화를 검토
- 지역(시군)별, 투자유형 및 프로젝트별로 수익성과 공익성은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

□ 지방정부에 적합한 펀드 운용구조 및 자금 운용방안 마련

- 위험 분산과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자의 구성과 경상북도의 출자 규모, 펀드의 운용 형태를 결정

- 투자 방식으로 경북 재정이 투입되는 해당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투자금 회수 및 투자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

(3) 펀드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 전문성을 갖춘 운용사 선정 및 성과 보상 체계 마련

- 전문성 있는 운용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운용사의 역량, 펀드 운영 계획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평가 기준과 공모 절차를 마련
- 공모를 바탕으로 선정된 운용사의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운용을 위하여 명확한 성과 보상 및 관리 방안을 동시에 마련

□ 전문성에 기반한 펀드 운영을 위한 합의제 기구 운영

- 전문성이 요구되는 펀드 운영에 대해 행정이 자체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를 마련
- 합의제 조직은 투자 분야별로 금융, 분야, 지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합의제 기구 구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

(4) 추진체계 및 인재 양성

□ 민간투자 전담조직 신설

-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펀드는 기획과 운영 전반에 걸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행정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
- 경북도의 민간투자 펀드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민자 프로젝트 관련 전문가 영입과 민관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

□ 인재 양성 및 네트워킹 강화

- 펀드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금융·투자 관련 풍부한 업무 경험을 지닌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기획력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성공가능성을 제고

- 경북의 민간투자활성화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간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한 산업인재 양성을 도모

(5) 제도개선 방향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의 출자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해 자금을 출자할 수 있는 대상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7호에 규정되어 있으나,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관련 출자만 명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출자 근거는 부재한 상황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44조의2(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 제1항제2호에서 제1호와 유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하므로 시행령 개정보다는 행정안전부 고시 항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적근거 마련을 검토

□ 재정사업투자심사제도 개선

- 지방자치단체에서 펀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재정과 금융 관점에서 수행되는 여러 단계의 타당성 또는 수익성 검토 절차로 인해 행정력 부담과 사업 추진 지연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의 '재정사업'에 적용되는 행정절차와 금융 관점에서 여러 단계에 걸친 사업성 검증이 요구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관련 자금을 출자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어야 함에도 재정투자 심사를 거쳐야 함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역시 금융 관점의 수익성 검증과 함께 재정 관점의 타당성 검토가 요구되며, 행정력 부담과 적시 추진 등의 문제 발생 가능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를 통한 프로젝트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심사 제도 개선은 투자심사 제외사업 추가, 자체 심사 규정 적용의 검토 가능
 - (1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2 관련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펀드의 출자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가능
 - (2안) 시·도와 시·군·구가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심사를 추진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경우 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는 안도 검토 가능

□ 경북의 펀드운영위원회(가칭) 구성 및 표준조례 제정

- 경북이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북 내에 펀드 운영위원회 조직 또는 총괄심의 절차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
 - 경북도 출자사업의 방향 설정, 투자 가이드라인 수립, 펀드 운용사(GP)를 선정하고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
 - 행정안전부의 균형발전제도과를 중심으로 시·도 자체 펀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총괄심의 절차를 마련하여 2중 안전장치 마련도 검토 가능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표준조례를 제정하고, 시·군으로 확산을 도모
 -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운용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필요시 계획수립, 합의제 기구, 펀드 조성 및 운용, 거버넌스 관련 사항의 반영을 고려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5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의 내용	8

제 2 장 이론 및 정책 동향

제1절 개념적 논의	13
1. 민간투자 관련 논의	13
2. 정책펀드 관련 논의	17
제2절 정책 동향 및 법·제도 분석	23
1.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관련 정책 동향	23
2.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관련 법·제도 분석	30
제3절 펀드 조성 관련 시사점 도출	46
1.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의 필요성과 의의	46
2.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 시 고려사항	47
3.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 관련 법·제도적 쟁점	48

제 3 장 경상북도의 현황과 민간투자사업 특성

제1절 경상북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	53
1. 경상북도 현황	53
2. 경상북도 발전계획 검토	71
제2절 경상북도의 공공시설 운영 현황	77
1. 지역별 운영 현황	77
2. 유형별 운영 현황	82
제3절 경상북도의 민간투자사업 특성	89
1. 경상북도의 민간투자사업 현황	89
2. 경상북도 민간투자사업의 특성	92
제4절 투자 분야 관련 시사점 도출	100
1. 차별화된 정책목표 설정	100
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 유형 구분	101
3.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프로젝트 선정	102

제 4 장 지역특화 펀드 조성 사례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105
1. 분석 목적과 분석 틀	105
2. 사례 선정	106
제2절 지역특화 펀드 조성 사례 분석	107
1. 서울 Vision 2030 펀드 조성 사례	107
2.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사례	116
3. 런던 그린 펀드(London Green Fund) 조성 사례	128

제3절 펀드 운영 관련 시사점 도출 135

1. 조성 측면의 시사점 도출 135
2. 운용 측면의 시사점 도출 136
3. 성과 및 청산 측면의 시사점 도출 137

제 5 장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 방안

제1절 자체펀드 조성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141

1. 자체펀드 조성의 필요성 141
2.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추진 방향 148

제2절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 전략 153

1. 민자유치 사전 준비와 민간투자 활성화 로드맵 수립 153
2.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자체펀드 운용구조 마련 153
3. 펀드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154
4. 추진체계 구축 및 인재 양성 155

제3절 중앙정부와 경북의 제도개선 방안 157

1. 중앙정부 제도개선 방안 157
2. 경상북도 제도개선 방안 164

【참고문헌】 166

표 목차

표 2-1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의 범주	14
표 2-2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	14
표 2-3 주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인 BTO, BTL 방식의 구조	16
표 2-4 정책금융의 기능과 역할	17
표 2-5 지원 방식에 따른 정책금융의 유형	18
표 2-6 국내 주요 정책펀드 운용기관 개요	21
표 2-7 정책펀드의 적정 운용을 위한 단계별 고려요소	22
표 2-8 융자 및 대출 방식과 투자방식(펀드)의 비교	22
표 2-9 민자 대상시설 적정성 판단기준	26
표 2-10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의무와 대상에 관한 규정	30
표 2-11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사규칙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내용	31
표 2-12 지방재정법상의 투자심사 제외 대상	33
표 2-13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의 투자심사 제외 대상 사업	33
표 2-14 타당성조사 관련 법적 근거	35
표 2-15 지방재정법상의 타당성조사 제외 규정	36
표 2-16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상의 타당성조사 절차	37
표 2-17 지방자치단체의 SPC 설립을 위한 출자 조건	38
표 2-18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자 관련 법률	40
표 2-19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주요내용	42
표 2-20 농림수산물식품모태조합 및 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주요내용	44
표 3-1 경상북도 면적 및 도시계획 현황	53
표 3-2 경상북도 행정구역 현황	53
표 3-3 경상북도의 주민등록인구 추이	54
표 3-4 경상북도 시군별 주민등록인구 및 고령인구 현황	55

표 3-5 경상북도의 GRDP 및 1인당 GRDP 현황	57
표 3-6 시군별 GRDP 및 1인당 GRDP 현황	58
표 3-7 경상북도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59
표 3-8 경상북도 시군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60
표 3-9 경상북도의 산업별 총산출액 및 부가가치 구성	61
표 3-10 경상북도 산업단지 현황	61
표 3-11 경상북도 산업단지 생산 및 고용 추이	62
표 3-12 경상북도 산업단지 현황	63
표 3-13 경상북도 노후산업단지 유형별 현황	64
표 3-14 경상북도의 농가 및 농가인구 현황	65
표 3-15 경상북도의 경지면적 현황	65
표 3-16 경상북도의 농가소득 현황	66
표 3-17 경상북도의 스마트팜 농가 현황	66
표 3-18 경상북도의 영농조합법인 운영 현황	67
표 3-19 경상북도의 농업회사법인 운영 현황	67
표 3-20 경상북도 병실 현황	68
표 3-21 경상북도 병상 현황	68
표 3-22 경상북도 의료장비 현황	68
표 3-23 경상북도 공공의료기관 현황	69
표 3-24 경상북도에 등록된 호텔 현황	70
표 3-25 경상북도 종합계획상의 2040 프로젝트 주요내용	72
표 3-26 민선 8기 경상북도 도정 방향과 주요 핵심 과제	73
표 3-27 시도별 운영 중인 공공시설 현황	77
표 3-28 시도별 공공시설의 관리인력 및 연간이용인원 현황	78
표 3-29 시도별 공공시설의 수익 발생 현황	79
표 3-30 시도별 공공시설의 운영 및 수익 현황	80
표 3-31 경상북도 시군별 공공시설 운영 현황	81
표 3-32 경상북도의 유형별 공공시설 운영 현황	82
표 3-33 경상북도 시군 및 유형별 공공시설 운영 현황	83
표 3-34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유형별 관리인력 및 이용인원 현황	84

표 3-35 경상북도의 유형별 순수익 발생 시설 현황	85
표 3-36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유형별 운영비용 및 수익 현황	85
표 3-37 경상북도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 현황(문화시설)	86
표 3-38 경상북도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 현황(복지 및 체육시설)	87
표 3-39 경상북도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 현황(기타시설)	88
표 3-40 경상북도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89
표 3-41 경상북도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 현황	91
표 3-42 경상북도 분야별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92
표 3-43 경상북도 민간투자사업의 분야별 착공시기 현황	93
표 3-44 경상북도 민간투자사업의 분야별 소요기간 현황	94
표 3-45 경상북도 분야별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비 현황	95
표 3-46 경상북도 분야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 현황	96
표 3-47 경상북도 민간투자사업 현황(문화관광)	97
표 3-48 경상북도 민간투자사업 현황(복지)	98
표 3-49 경상북도 민간투자사업 현황(유통·항만)	99
표 4-1 사례 분석의 틀	105
표 4-2 사례 선정 기준	106
표 4-3 서울 비전 2030 펀드 조성 현황	108
표 4-4 서울 비전 2030 펀드의 법적 근거	108
표 4-5 서울 비전 2030 펀드의 투자 분야	110
표 4-6 서울 비전 2030 펀드 출자금 조정	111
표 4-7 서울 비전 2030 펀드 출자 약정액	112
표 4-8 서울 Vision 2030 펀드 분야별 출자 조건	115
표 4-9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현황	117
표 4-10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의 법적 근거	118
표 4-11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의 투자 분야	121
표 4-12 2024년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분야별 투자 대상	122
표 4-13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펀드 전라북도 조성 계획	123
표 4-14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펀드 전라북도 출자 약정액	123
표 4-15 운용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준	127

표 4-16 런던 그린 펀드의 조성 현황(2015년 기준)	129
표 4-17 런던 그린 펀드의 투자 분야	130
표 5-1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주체 다변화	142
표 5-2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펀드 출자 가능 여부	158
표 5-3 자체펀드 출자근거 마련(안)	159
표 5-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2 별표 개정(안)	161
표 5-5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163
표 5-6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기관의 역할	164
표 5-7 (가칭)경북 민간투자활성화 펀드운영위원회 구성(안)	165

그림 목차

그림 2-1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별 역할	16
그림 2-2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 주요 내용	27
그림 2-3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운용구조	29
그림 3-1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56
그림 3-2	경상북도의 산업단지 분포	63
그림 3-3	경상북도 종합계획(2021~2040)의 비전	71
그림 3-4	민선8기 경상북도 비전과 도정 방향	74
그림 3-5	경상북도 민간투자 활성화 전략의 기본방향	76
그림 3-6	경상북도 민간투자사업의 착공시기 추이	90
그림 3-7	경상북도 문화관광 분야 주요 민간투자사업	97
그림 3-8	경상북도 복지 분야 주요 민간투자사업	98
그림 3-9	경상북도 유통 및 항만 분야 주요 민간투자사업	99
그림 4-1	서울 Vision 2030 운용구조	114
그림 4-2	전북 혁신성장 벤처펀드 조성 목표 및 추진전략	120
그림 4-3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출자자 구성	124
그림 4-4	전북 벤처투자위원회 구성도	125
그림 4-5	런던 그린 펀드 운용 체계	132
그림 5-1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다층적 사업성 검증 단계	145
그림 5-2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 필요성 및 추진방향	147
그림 5-3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사업 영역	150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01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수도권 집중 심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지속가능성 위협
 -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의 성장거점 중심의 개발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와 자본의 유출로 지속가능성이 위협
 - 지난 60년간 우리나라는 효율성에 입각한 경제성장 정책을 통해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수도권 집중과 불균형 성장은 심화
 - 2015년에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생산액은 비수도권을 추월하였고, 수도권의 인구는 2019년 비수도권을 추월(지방시대위원회, 2023)
 -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심화할 가능성이 크고, 인구감소 시대 지역은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투자의 한계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범
 -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와 중앙재원 이전이 이루어졌으나, 관 주도의 단발적·소규모 투자로 인해 지역 활성화 한계
 - 최근 5년(2018~2022) 동안 지역 재정투자는 239조 원에서 330조 원으로 연평균 8.4% 증가하였고, 국고보조는 50조 원에서 82조 원으로 연평균 13.2% 증가(관계부처합동, 2024)
 - 지역에 대한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관 주도의 단발적·소규모 사업 빈발과 사업성과 불확실성 부족에 따른 민간의 참여 한계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약한 수준으로 평가(관계부처합동, 2024)

- 정부는 재정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지역 투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4년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도입
 - 민간자금 및 금융기법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실정에 맞고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충족된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설계
 -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 지원, 수요 확약 등 투자 불확실성 해소를 지원하고, 중앙정부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 간소화를 담당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지역투자의 효율화 가능하나 지역의 여건 반영에는 한계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사각지대였던 공익성과 수익성이 공존하는 영역에 대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투자의 효과성 확보에 기여 가능
 - 펀드 조성과 PF 대출, 모펀드의 후순위 출자, 특례보증 등 금융기법과 인센티브를 통해 금융의 관점에서는 성공가능성이 높음
 - 네거티브 방식으로 투자 분야의 제한은 적지만, 금융 중심의 추진 체계로 인해 철저하게 수익성에 기반하여 자펀드가 결성될 가능성이 큼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자펀드 결성은 전국 차원에서 전담운영기관인 한국성장금융과 금융전문가 TF인 투자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역자원과 잠재력에 의해 성공가능성이 있더라도 금융의 관점에서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펀드 결성이 어렵다는 한계
 - 민간 PF 과정에서 담보물 확보, 보증 조건, 수익성 보장 방안 등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지역에서 필요한 프로젝트 추진에는 한계
 -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의 건설경기 악화, 지방자치단체 출자 비중 제약 등으로 비수도권의 PF 결성은 더욱 어려운 상황임
 - 즉, 지역활성화 투자펀드가 금융 논리에서 전국 단위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유용하나,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프로젝트 추진에는 한계가 발생

□ 경상북도의 여건을 반영한 자체적인 민간투자 펀드 도입의 필요성

- 경상북도는 민선 8기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 중심의 발전 전략을 추진 중이며,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

- 경북의 인구 비중은 2015년 5.2%에서 2023년 5.0%로 감소하였고, 22개 시군 중 17개(77.3%)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으로 지정
- 민선 8기 도정 목표를 ‘기업이 키워가는 성공경제’로 설정하고, 민간 역량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전략’을 발표
- 경북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효과성과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체 펀드인 ‘경상북도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한 법·제도적 사항 및 운용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경북은 정부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역투자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을 추진 중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을 위해서는 필요성과 타당성, 중복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와 관련한 법·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함
 -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정책 펀드로서 명확한 정책목표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적절한 투자분야 및 운용체계 확립이 필요

2. 연구목적

□ 지역 차원의 민간투자 펀드 조성 필요성 검토 및 조성 논리 마련

-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의 효과성, 한계점, 차별성을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자체적인 민간투자 펀드 조성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조성 논리를 마련함
 - 경북의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는 정부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중복성으로 인해 재정투자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음
 -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의 지역 프로젝트 추진 한계점, 경북 펀드의 차별성, 2가지 펀드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중심으로 조성 논리 마련

□ 지역 민간투자 펀드 조성을 위한 법·제도 분석과 개선 방향 도출

- 경상북도의 자체적인 민간투자 펀드 조성과 관련한 법·제도적 사항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함
 - 지방자치단체의 펀드 출자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법·제도를 분석하여 경상북도의 민간투자 펀드 조성 관련 제도적 쟁점과 개선 방향을 제안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행정안전부의 고시(2024-7호) 등 검토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운용 방안이 포함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 후속조치」 등 검토

□ 경북 민간투자 특성 및 사례분석을 통한 펀드의 조성 및 운용방안 제안

- 경북의 민간투자 관련 현황과 지역 주도 정책펀드 조성 사례를 분석하여 경북 민간투자 펀드의 조성 및 운용의 시사점을 도출
 - 경북 민간투자 및 공공시설과 관련된 주요 현황을 조사하여 펀드의 투자 분야 설정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함
 - 지역이 주도적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한 국내의 사례를 분석하여 경북 펀드 조성 및 운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의 조성과 관련된 법·제도, 현황, 사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펀드의 조성 및 운용 방안을 제안
 -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의 조성 논리(필요성)을 마련하고, 펀드의 추진 방향을 제안함
 - 공공성과 수익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 분야를 제안하고, 펀드의 정책목표 달성 및 전문적인 운용을 위한 전략 및 법·제도 개선방향 제안
 - 경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보의 비대칭, 외부효과로 전국 펀드 추진은 어렵지만 지역 활성화의 효과가 큰 분야에 투자를 도모하는 역할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1. 연구의 범위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민간투자사업이 제도화된 1994년부터 경상북도 민간 투자 활성화 펀드가 청산되는 지점까지로 설정
 - 분석의 범위는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1994년부터 민간 투자사업 관련 데이터의 가장 최근 시점에 해당하는 2022년이 됨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상북도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의 조성 및 운용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목적에 맞추어 경상북도 및 관할 시·군으로 설정
 - 민간투자사업 특성 및 정책펀드 조성 사례 등 경상북도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의 조성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일부 분석은 국내외 타 지역을 포함
- 민간투자의 범위는 경상북도의 활성화의 목적과 공익성을 저해하는 부적합 분야를 제외한 다양한 창의적인 수익 프로젝트를 포괄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수도권 소재, 사행성 도박, 유흥주점,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등 포함, 상업용 부동산 개발 등 단순한 분양수익 추구 사업을 제외한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관계부처 합동, 2023b)
 - 민간투자의 범위는 경북지역의 활성화와 관련된 프로젝트 중에서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등의 부적절한 프로젝트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넓게 설정
 - 지역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비대칭, 외부효과 등으로 인해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에 초점을 둠

2. 연구의 방법

□ 정량적 측면

- 경상북도 민간투자 관련 현황 및 민자사업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
 - 경상북도 민간투자 관련 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사업 통계, 행정안전부의 공공시설 운영 현황, 지역의 분야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

□ 정성적 측면

- 이론적 토대 마련을 위한 문헌조사, 지역 여건을 바탕으로 특화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용한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를 수행
 - 정책펀드의 개념과 특성, 신설 및 운용에 관한 법·제도, 정책 동향에 관한 학술자료(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를 활용하여 문헌조사를 수행
 - 금융, 민간투자, 지역개발 관련 전문가 자문과 지역 주도 정책펀드 조성 사례의 성공요인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인터뷰 수행

3. 연구의 내용

□ 이론 및 정책 동향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법·제도 분석, 정책 동향을 검토하여 연구의 전반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관련 쟁점을 도출
 - 민간투자와 정책펀드와 관련한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의 전반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펀드의 구성과 관련한 주요 쟁점 사항을 도출함
 - 경상북도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구성과 관련된 법·제도를 분석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2022), 지역활성화 투자펀드(2023) 등 관련 정책 동향 및 주요 내용을 조사

□ 경상북도 현황과 민간투자사업 특성

- 경상북도의 전반적인 현황 및 발전 방향과 공공시설 운영 현황,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을 파악하여 투자 분야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
 - 경상북도 현황과 중장기 발전과 관련한 주요 계획을 분석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의 투자 측면에서 거시적인 시사점을 도출
 - 경북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의 지역별, 유형별 현황 및 수익 특성을 분석하여 지방비 투자사업의 효율화 측면의 시사점을 도출

- 경상북도의 민간투자 사업의 현황과 전국 또는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사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투자 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함

□ 지역특화 펀드 조성 사례분석

- 지역 단위에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 사례를 분석하여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의 조성, 운용, 청산 측면의 시사점 도출
 - 지역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조성한 특화 펀드 사례를 선정하여 조성 측면, 운용 측면, 성과 및 청산 측면의 특성을 분석
 - 국내외 지역특화 펀드 조성 사례를 바탕으로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의 조성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함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 방안 제안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의 필요성의 논리와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펀드의 조성과 전문적인 운용을 위한 전략 및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의 조성 논리와 추진 방향, 조성 및 전문적인 운용을 위한 추진체계, 투자분야, 전담운용기관, 출자 특성 등을 제안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 및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함

제 2 장

이론 및 정책 동향

제1절 개념적 논의

제2절 정책 동향 및 법·제도 분석

제3절 펀드 조성 관련 시사점 도출

02 이론 및 정책 동향

제1절 개념적 논의

1. 민간투자 관련 논의

1) 민간투자사업의 개념과 특성

□ 민간투자사업의 개념과 대상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부문이 제안하거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의미함
 - KDI(2022)는 전통적으로 정부부문의 범주에 속했던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부문이 담당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정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민간이 투자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
- 민간투자 방식은 1994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으며, 이후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변화
 -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외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이 도입되어 확대

□ 민간투자사업의 대상

- 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 증진 또는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 편의 증진 시설로 정의
 - 기존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회기반시설은 12개 분야, 53개 유형으로 한정하였으나, 2020년 법률 개정 이후 제외시설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변경
 - 현행 법률에서는 경제활동의 기반, 사회서비스 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한 공용시설,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한 공공시설에 해당하면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제외시설은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취급,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상 군사작전 필요시설, 외교정보통신망 등으로 규정

표 2-1 |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의 범주

구분	주요시설
경제활동 기반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분뇨·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사회서비스 제공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국가 또는 지자체 업무수행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한 공공용 시설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출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 민간투자사업 지정 시에는 주무관청은 수익자부담능력, 수익성, 사업편익, 효율성 등 4가지 일반원칙을 고려하여야 함(기획재정부, 2024)
 - 효율성 원칙은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하여 재정사업 대비 편익 증진 및 비용 절감, 서비스 질 제고 등이 기대되는 사업을 의미함

표 2-2 |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

구분	주요시설
수익자부담 능력원칙	기존 저부담의 이용시설에 대비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이용자가 고편익에 상응하여 고부담 사용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수익성원칙	정부가 허용 가능하고 이용자가 지불 가능한 사용료 및 정부 지원가능 건설보조금 내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사업편익의 원칙	정부 재정사업 추진시 예산제약 등으로 조기에 시설건설/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나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목표 연도내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편익 조기 창출 기대 사업
효율성 원칙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사업 추진과 비교하여 사업편익 증진 및 사업비용 경감, 정부재정시설과 경쟁으로 서비스질 제고 등이 기대되는 사업

출처: 기획재정부(2024)

2) 민간투자사업의 유형

□ 추진절차에 따른 분류

- 민간투자사업은 추진절차에 따라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형별로 특성이 상이함
 - 정부고시사업은 정부가 선정하여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재정투자 사업 중에서 사업성이 우수하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선정하게 됨
 -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민간사업자가 공공투자사업 중에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게 됨

□ 추진방식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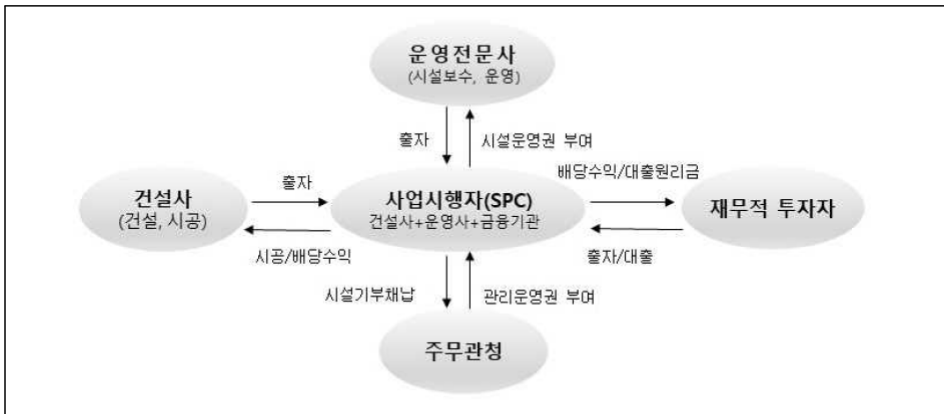
-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크게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구분할 수 있음(KDI, 2023)
 -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은 모두 사업시행자가 준공과 동시에 해당시설의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투자비용을 회수
 - BTO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최종이용자의 사용료를 받아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BTL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으로 시설을 주무관청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고 최종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주무관청에서 담당하게 방식임
 - 이외 BOT(Build-Operate-Transfer), BOO(Build-Own-Operate), BLT(Build-Lease-Transfer), 혼합형(방식의 결합), 결합형(물리적 구분), 개량운영형 등이 있고, 민간에서 제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주무관청이 제시하는 방식으로도 추진 가능

표 2-3 | 주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인 BTO, BTL 방식의 구조

구분	BTO 방식(수익형)	BTL 방식(임대형)
대상시설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수익형)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서비스구입형)
주요 시설	도로, 철도, 항만 등	학교, 군관사, 하수관거,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투자비 회수	최종사용자의 사용료(수익자부담원칙)	정부의 시설임대료(정부재정)
사업 리스크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수요에 따라 수익률 변동)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수익률	상대적으로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세부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BTO(Build-Transfer-Operate) BTO-rs(BTO-risk sharing: 위험분담) BTO-a(BTO-adjusted: 손익공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BTL(Build-Transfer-Lease)
비고		

출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23a)

그림 2-1 |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별 역할



출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23a)

2. 정책펀드 관련 논의

1) 정책펀드의 개념

□ 정책금융의 개념과 특성

- 정책금융은 시·공간상의 금융시장 실패로 인해 시장원리로 해소하지 못하는 금융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성격의 금융을 의미(서호준, 2015)
 -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효과, 시장의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 급변에 의해 발생하는 시장실패로 상업금융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금융 수요가 발생
 - 정책금융은 상업금융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시장실패 영역에 재정을 투입하여 자원배분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며, 적정 규모 도입 필요¹⁾
 - 급격한 기술 및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금융시장과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시장실패 영역은 광범위되는 경향을 나타냄
- 정책금융의 역할은 소극적 차원에서 시장기능의 보완이며, 적극적 차원에서 경제발전 지원, 경기 대응을 위한 시장안전판 등을 포함(손상호, 2013)
 - 시장기능 보완은 시장실패 보정, 경제개발 지원은 국가 경제발전에 필요한 분야에 자금 공급, 시장안전판은 금융위기 시 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

표 2-4 | 정책금융의 기능과 역할

구분	역할	주요 기능
시장기능 보완	시장실패의 보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비대칭으로 불확실성 발생 계층에 금융서비스(중소기업, 서민, 농업) • 외부경제효과가 크나 상업금융 유인 힘든 경우(기술개발, 모험자본) • 만기가 장기로 불확실성 발생 분야(중장기설비·수출, 주택, 인프라·환경) • 지역주민, 중소기업에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공공저축, 우체국)
경제개발 지원	국가 중장기 경제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경제발전에 필요한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고 구조적 취약성 보완 • 낙후된 금융시장 기능 개선 및 시장기능 정상화 등의 기능 수행
시장 안전판	경기급변 총 격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불안정성 또는 금융위기에 대응한 단기적 측면의 시장안정화 • 상업금융의 만기연장거부, 신용한도 축소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 대응

출처: 손상호(2013) 참고

1) 정책금융이 시장기능 대비 과다하면 시장 구축(驅逐), 정치적 개입 등 정부실패 부작용이 발생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어 사회·경제적 이득과 비용에 따라 적정 수준 도입 필요

- 정책금융은 지원 방식에 따라 용자(대출), 보증(보험), 투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효과와 문제점은 차이를 나타냄(안옥진, 2022)
 - 용자 또는 대출은 정책금융 대상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이 자금을 직접 융통하는 방식으로 목표 고객이 명확하고 정책적 의지가 큰 경우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비중이 큰 특성
 - 보증 또는 보험은 정책금융 대상이 차입자금 지급이 불가한 사고 시 정책금융기관이 대신 지급하도록 담보하며, 상업금융을 통해 자금을 공급
 - 투자는 정책금융 대상의 회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부의 재정을 지분 참여하는 형태로 자금의 공급을 촉진하는 방식임
 - 2021년 금융공공기관을 통한 정책금융 공급액은 1,647.2조 원이며, 보증(보험) 54.7%, 용자(대출) 40.4%, 투자 5.0% 수준임(안옥진, 2022)

【표 2-5】 지원 방식에 따른 정책금융의 유형

구분	특징	비고
용자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정책금융 대상에 정책금융기관이 자금을 용자 • 목표 고객이 명확하고 정책 의지가 큰 경우에 활용 	창업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중진공) 등
보증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입금 지급 불능 시 보증(보험)기관이 대지급 담보 • 상업금융 통해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시장 친화성 • 과도한 확대 시 부실화 가능(레버리지/리스크관리 필요) 	청년창업특례보증(신보), 신 성장특별보증(기보) 등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과 달리 회수 관련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 재정을 지분 참여의 형태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성장사다리펀드(성장금융), 한국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

출처: 안옥진(2022), 이상엽·이창민(2014) 참고

- 국내 정책금융의 과제는 경제변화 대응, 과잉공급 해소, 지원 방식의 다양화, 리스크관리, 시장기능 활성화 등을 들 수 있음(손상호, 2013)
 - 정책금융은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변화되는 시장기능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 규모, 내용, 방식 등이 변화될 필요
 - 정부에 따라 또는 부처별, 정책금융기관별로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정책금융이 공급되면서 과잉 공급과 중복성 등 비효율성 발생
 - 정책금융을 통해 시장기능이 확대된 이후 발생하는 상업금융과 마찰에 대해 적기에 조정되지 못할 때 청산 또는 민영화가 지연될 소지

- 정책금융 대상은 고위험 고객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적인 리스크관리가 없으면 부실화되거나 우량고객 중심 취급으로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
- 정책금융 대상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형성된 비재무적, 정성적 신용정보가 상업금융에 작동하지 않으면서 시장기능 활성화에 어려움이 발생

□ 정책펀드의 개념과 유형

- 펀드는 집합투자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의 집합체로서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금융감독원, 20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펀드는 ‘집합투자’를 의미하며,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의됨
 - 펀드는 투자자 측면에서 다양한 투자 대상에 적은 돈으로 쉽게 투자할 수 있고,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와 전문적인 운용을 통해 투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피투자는 국가, 기업, 일반대중의 자금을 동원하여 대규모 자금 확보가 가능
- 정책펀드는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 가능성이 큰 분야에 정부 재정을 지분투자하여 자금공급을 촉진하는 투자방식 정책금융(남재우, 2022)
 - 정책펀드는 정부 재정을 민간 기업 또는 민간 참여 사업에 투자하여 자본 공급을 촉진하고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위한 정책금융 수단
 - 정책펀드는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정부의 재정을 지분 투자하여 자금공급 촉진을 도모하는 펀드를 의미함
- 정책펀드는 모험자본 공급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직접 투자보다 재간접펀드의 형태로 운용되는 경향이 있음(남재우, 2022)
 - 정책펀드는 정부가 펀드를 조성하여 직접 지분투자하는 직접지원 방식과 공공모태펀드를 조성하고 전문운용사를 통해 운용하는 간접지원방식으로

구분되며, 간접지원 방식은 민관합동펀드(hybrid private public fund)와 재간접펀드(fund of funds)로 구분

- 간접방식 중 민관합동펀드는 민간 펀드에 정부가 단순 재무 투자자(LP)로 매칭 투자하는 방식으로 시장주도성이 강하고, 재간접펀드는 정부가 모태 펀드를 설정하여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정부 주도성이 강한 특성
- 정책펀드는 모험자본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일반적으로 간접지원 방식으로 운용되며²⁾,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재간접펀드가 주로 활용

□ 정책펀드의 운용

- 운용주체는 시장성이 떨어지는 특수한 정책목표를 견지하기 위해 주로 공공 기관의 형태로 정부가 설립한 전담운용기관에 의해 운용되는 특성
 - 국내 정책펀드 운용기관은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KVIC)가 대표적이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세계로선박금융(주) 등이 있음
 - 한국벤처투자(중기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국토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식품부), 한국자산관리공사(금융위)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개별 부처에서 설립한 공공기관임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세계로 선박금융(주)의 경우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각각 금융위원회와 해양수산부의 정책펀드를 운용기관으로 지정
 - 정책펀드 운용은 주로 부처별 전담운용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부처별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함임

2) 정부가 정책펀드 조성/직접 지분투자하는 직접공공펀드는 민간시장 구축(驅逐), 이해관계자 그룹의 시장 왜곡, 공공부문의 비효율적 지배구조, 공공펀드 운용역의 낮은 보상체계로 비효율성 소지

| 표 2-6 | 국내 주요 정책펀드 운용기관 개요

(단위: 억 원)

구분	기관명	자본금	설립	설립목적	주요 운용 정책펀드	비고
공공	한국벤처투자 (KVIC)	500	2005	창업·중소·벤처기업 성장·발전 위한 투자 등의 효율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모태펀드 해외VC글로벌펀드 지역혁신벤처펀드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 공사(KIND)	4,436	2018	정부 차원의 투자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사업 전문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인프라펀드 글로벌플랫폼건설 스마트시티펀드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 2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12.5	2015	농업 정책자금 운용·관리·감독 업무의 효율적 추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 2
	한국자산 관리공사 (캠코)	27,119	1962	부실자산정리, 개인 채무자·기업 정상화 지원, 공공자산 관리·처분·개발 통한 금융 산업/경제발전	기업구조혁신펀드	한국자산관리 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민간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 (K-Growth)	152	2016	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 (성장사다리펀드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사다리펀드 소·부·장혁신펀드 기업구조혁신펀드 	-
	세계로 선박금융(주)	110	2005	선박 분야 펀드 운용 등 금융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원양어선 안전펀드 	-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s://alio.go.kr/>) 및 각 회사 홈페이지 참고하여 정리(2022년 기준)

□ 정책펀드의 조성과 운용

- 정책펀드는 정책금융 수단으로서 정책목표 달성과 시장구축 문제 해소 등 적절한 운용을 위해 단계별로 고려할 요소들이 있음(남재우, 2022)
 - 신규 설정 단계에서 정책펀드의 타당성 판별을 위해 정부 개입 타당성, 민간 시장 구축 가능성, 유사 정책 펀드 중복의 비효율성 검토 필요
 - 운용 단계에서는 정책목표 달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갖추도록 운용체계와 방식의 적절성과 특히 전담운용기관의 전문성이 필요
 - 청산 단계에서는 투자 분야 민간의 투자시장 활성화의 정책목표 달성에 따른 존속기간과 청산 절차, 재정 환수 절차와 성과평가가 필요

표 2-7 | 정책펀드의 적정 운용을 위한 단계별 고려요소

구분	고려요소	내용	세부내용
신규 설정	정부 개입의 타당성	시장실패 여부 및 정책을 통한 보정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 자본공급 미달 여부/목적투자 정의 정보비대칭 및 외부효과 발생 여부 펀드(지분투자) 방식 적절성(대출/보증 비교) 향후 민간주도 투자시장 형성(청산) 가능성
	민간 시장의 구축(驅逐)	정책펀드로 인한 민간투자의 위축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 투자 분야 민간투자 시장 구축 여부 GVC와 PVC의 경쟁구도 발생 여부 적정 민간출자 인센티브/민간 매칭비율 설정
	정책 펀드의 중복성	정책펀드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발생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 정책펀드 운용 여부(투자시장/대상 비교) 기존 펀드의 자금공급 불충분성/증액 불가
운용	운용체계의 적절성	정책펀드 운용 방식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간접펀드 적정성(직접투자/민관합동펀드 대비) 정책목표 달성과 수익성 간 균형 유지 가능성
	전담운용기관 전문성	전문적 전담운용기관 확보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적인 전담운용기관 확보 가능성 체계적인 자펀드 구성과 관리체계 확보 가능성
청산	정책펀드의 성과평가	정책펀드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펀드 결성 활성화 여부(투자 집행 실적) 정책펀드를 통한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
	정책펀드의 청산	정책펀드의 청산과 재정 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정 수준의 펀드 존속기간 설정 조기 달성시 청산 기준/만기 이후 재정 환수 절차

출처: 남재우(2022) 참고하여 연구자 정리

표 2-8 | 융자 및 대출 방식과 투자방식(펀드)의 비교

구분	융자 및 대출	투자
주체	금융기관(은행)	투자조합(투자회사)
사업성 평가	신용도 또는 담보능력	성장성과 수익성 등의 사업성
채권자의 경영 참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경영참여가 제한됨 (채권자-채무자 관계)	투자자는 주주/파트너로 경영체의 경영에 간접 참여 (주주 또는 파트너의 관계)
회수 방법	채무자의 원금과 이자 상환/ 채무자는 위험 홀로 부담	지분매각 또는 수익 배분/ 경영체와 투자자가 공동으로 위험부담

출처: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보험금융원(2022)

제2절 정책 동향 및 법·제도 분석

1.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관련 정책 동향

1) 민간투자 관련 정책 동향

- 우리나라는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사회기반시설에의 민간투자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
 - 해당 법률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민간투자사업이 제도화 이후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대상사업과 투자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음
 - 1998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법률명을 변경하고, 기부채납방식을 추가하는 등 유인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 2005년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하고, 경제기반 중심의 대상시설을 교육·복지 등으로 확대하고 추진 방식을 다양화
 - 투자금 회수 리스크로 인해 민간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대 방식(BTL)의 민간투자사업을 추가함
 - 2020년에는 사회기반시설의 종류를 열거하는 방식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향후 필요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 2008년에는 민간투자사업의 평가와 통제 기반을 구축하여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방지하는 한편 보증 기반을 강화하여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이 적기에 완공되도록 지원함
 -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프라펀드의 유형을 신탁형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편되고 있음
- 윤석열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설정하고, 민간과 정부의 협력을 통한 성장을 도모(대통령실 홈페이지)

-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이며, 경제 분야의 목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설정
 -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고 개발하여 지역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도모
- 2022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3년에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출범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투자 촉진 전략이 추진 중
- 2022년 6월 발표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민간투자사업 대상 시설을 교통 중심에서 산업·생활·노후 시설 등으로 다양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사업모델 개선 및 절차와 비용 부담을 완화, 재정·민자간 연계 강화 등의 관리체계 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
 - 2023년에는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하여 대규모 민자 프로젝트 발굴, 조기 착공, 투자 집행관리 등을 통해 대규모 민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단계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2024년 3월에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임

2)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1)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2023)

□ 도입 배경과 목적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은 경기흐름 변화에 대응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2022년 발표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정책」의 내용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2023년에 발표되었음
- 2022년 6월 발표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일부 과제 지연, 신규 도입된 사업 유형의 구체화 미흡의 문제 발생
- 경기흐름에 대응하며 민자 역할을 강화하고자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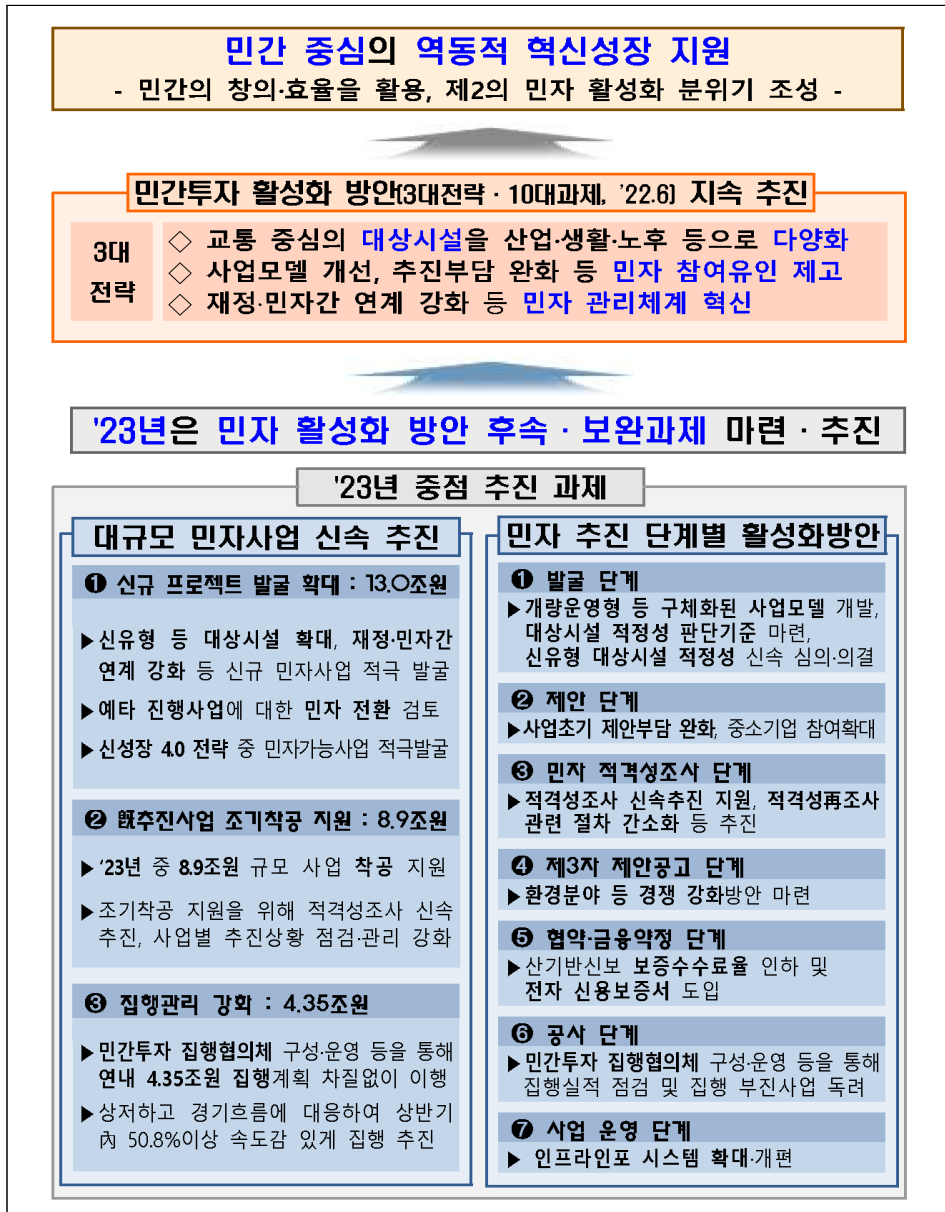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에서는 대규모 민자사업의 신속 추진과 민자 추진 단계별 활성화 방안 등 두 개 영역으로 분류된 추진 과제가 제안
- 대규모 민자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 발굴 확대,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 착공, 집행관리를 강화에 관한 과제가 포함
 - 민자 추진의 단계는 발굴 → 제안 → 민자 적격성 조사 → 제3자 제안공고 → 협약·금융약정 → 공사 → 사업운영 등 7단계를 거침
 - 발굴 단계에서 신유형을 제시하되 구체적인 사업모델 제시가 필요하므로 적정성 관련된 판단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민간투자사업기본 계획」에 민자 대상시설 적정성 판단기준을 신설
 - 제안 단계에서 민간제안서 작성 수준을 간소화하여 사업 초기 제안 부담을 낮추고, 국가사업에 중소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적격성 조사 단계에서는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실익 없는 재조사 제도를 개선하여 사업 기간에 대한 부담을 낮춤
 - 제3자 제안공고 단계에서 경쟁이 약화된 환경 분야 시장에 대해 최초 제안자 우대가점 체계 개편, 단독 입찰시 재공고 방안 등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자 함
 - 협약·금융약정 단계에서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전자 신용보증서를 도입함으로써 민자 사업을 활성화하고, 운영리스크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공사 단계에서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신속 집행하고, 민간투자 집행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 집행을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
 - 사업 운영 단계에서는 현재 개별사업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인프라 인포를 종합 민자포털로 확대하고자 함

| 표 2-9 | 민자 대상시설 적정성 판단기준

1 법적 부합성
① 법령상 국가나 지자체가 해당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②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③ 민간투자법 제2조 제2호 각 목의 시설로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을 것
2 공공성 확보 여부
④ 공용시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지 여부 - 다만, 보충적으로 유휴시 일반공중에 대한 시설 개방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 검토 필요
⑤ 공공용시설의 경우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 가능성이 보장되는지 여부
3 사업방식의 적정성
⑥ 내구연한이 지나치게 짧은지 여부
⑦ 사업규모가 지나치게 작지 않은지 여부
⑧ 사업비, 운영비, 수익률, 사용료 등 사업조건을 사전 확정가능한지 여부
⑨ (기부채납이 전제된 경우) 대상시설이 행정재산으로 귀속 가능한 시설인지 여부
4 민간의 창의·효율 활용 가능성
⑩ 사업단계별로 타 사업방식(재정사업, 민간위탁 등)과 비교하여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가능한지 검토

출처: 기획재정부(2024)

| 그림 2-2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 주요 내용



출처: 관계부처합동(2023c)

(2)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 도입 배경과 목적

- 지역활성화펀드는 지역투자의 단발적·소규모의 한계에 대응해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지역개발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2024년에 출범
 - 지역이 발굴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여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4년에 조성

□ 운용체계 및 거버넌스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간접재펀드 방식으로 모펀드는 후순위 정부재정(1천억)과 지방소멸기금(1천억), 선순위 산업은행(1천억) 출자로 조성
 - 모펀드(후순위)는 민간투자자(선순위)와 지방자치단체(선택)과 공동 출자하여 자펀드를 결성하여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구조
 - 모펀드의 자펀드 출자는 광역시 30%, 도 50%로 제한되며, 모펀드는 민간투자자 출자액의 20%까지 후순위 보강하여 손실에 대해 우선 부담
- 자치단체는 시행사·투자자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자펀드는 SPC 자본금에 우선주 출자(PF 후순위 대출 혼합 가능)
 - 지역개발프로젝트 자금은 사업시행자의 출자(보통주), 자펀드 출자(우선주), 자펀드 대출(후순위: 위험부담), PF 대주단 대출을 통해 조달하게 됨
 - 사업참여자의 책임성과 사업성 및 PF대출 조달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역개발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10% 이상은 SPC의 자본금을 통해 조달
 - 공익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자펀드에 SPC의 이사 추천권 등 경영권 통제 권한이 부여되며, SPC에 정기보고 등의 자금관리 의무가 부여
 -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수익성이 검증된 프로젝트에 선순위 대출 일부는 신용보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특례 보증 가능

□ 투자 대상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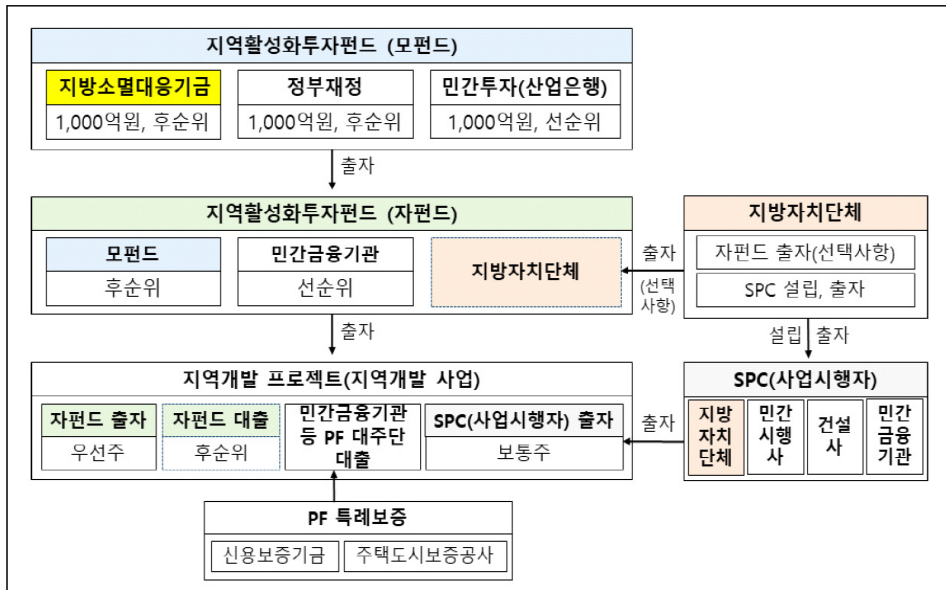
- 투자 대상은 광역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선정하나, 펀드 취지와 공익성을 저해하는 수도권 소재, 향락시설 또는 단순 분양을 위한 사업 등은 제외됨

- 제외사업은 수도권 소재 사업, 향락시설 사업, 법률분쟁 중인 사업, 분양, 매각 등의 분양수익이 총사업비의 50% 이상인 사업, 이미 준공된 사업 중에서 운영이익과 이자비용에 따라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등임

□ 인센티브 체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심사, SPC 설립, 펀드 출자와 관련한 절차 간소화 및 규제개선을 통해 시의성 있게 지역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지원
 -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의 타당성 검증이 있으므로 중앙재정투자심사와 관련한 투자심사 면제 또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전용 패스트트랙 운영
 - SPC 설립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타당성검토, 행안부 설립 협의에 대하여 신속심사 패키지를 지원

| 그림 2-3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운용구조



출처: 국회입법조사처(2024)

2.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관련 법·제도 분석

1)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활용 측면

□ 재정투자심사와 관련한 법·제도 분석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정책금융 수단 중에서 투자 영역에 해당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자 영역에 해당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자 역시 재정지출의 관점에서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음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 의회 동의, 예산 편성 등 4단계에 걸쳐 추진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자펀드) 또는 SPC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투자 심사가 필요함
 - 「지방재정법」 제37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시·도 투자사업은 행안부장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함
 -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 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정기 심사는 약 2달, 수시 심사는 4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

| 표 2-10 |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의무와 대상에 관한 규정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 12., 2023. 4. 11.>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 가. 채무부담행위
 -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1.>

...

⑥ 투자심사의 기준 및 절차,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투자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4. 11.>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실시 주체별 시·도의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투자사업 또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투자사업. 다만,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행정안전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 다.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과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라.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시설·체육시설 신축사업
 - 마.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
 -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사업
[전문개정 2024.1.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표 2-11 |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사규칙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내용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직전 투자심사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4. 3. 11.>

② 투자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6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9월 30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15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의뢰받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영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1차 심사는 1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 3. 1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지방재정법」 제37조 3항에 따라 재해복구, 국가유산수리, 지방공단 설립, 보건소 및 소방기관 건축과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업은 심사에서 제외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재난예방·안전,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임
 -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은 시행령 별표에 명시되어 26개 사업에 명시되어 있음
-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근거로 사업성이 월등하고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의결된 경우 예비검토를 거쳐 면제 가능
 -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의결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금액이 적어도 총사업비 기준으로 재정투자 심사가 필요함
 - 모펀드 규모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향하는 제도 특성상 지역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장관급 협의회를 통한 면제 트랙으로 추진하기 한계
 - 투자심사를 받는 경우에는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모펀드 투자심의회 심사와 재정투자심사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프로젝트 추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비용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표 2-12 | 지방재정법상의 투자심사 제외 대상

*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8. 8.>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5. 그 밖에 재난예방·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표 2-13 |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의 투자심사 제외 대상 사업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2(투자심사 제외 사업) 법 제37조제3항제5호에서 “재난예방·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다만, 별표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업 중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4. 1. 9.]

* 지방재정법 시행령 별표 [투자심사 제외 사업(법 41조의 2) 관련]

1.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규금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나. 「방조제 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 및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를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하는 사업
 - 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사업
 - 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반영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마.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사업
2.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3.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용자 사업 등과 같이 투자심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대상사업

5.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사업
6.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원 사업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사업
8.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9.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6조에 따른 건널목 개량 사업
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1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발기반정리 사업
1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경지 정리 사업
1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배수(排水) 개선 사업
1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16.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 사업
17.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1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다만,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20.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21. 「어촌·어항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2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23.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24.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건축 사업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25. 총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26.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 가.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업
 - 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타당성 조사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함
 - 총사업비 기준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중앙투자심사 전에 행정안전부이 정하여 고시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증이 요구됨

【표 2-14】 타당성조사 관련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타당성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조사를 위한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 ③ 타당성조사의 절차·방법과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1.][종전 제37조의2는 제37조의3으로 이동 <2023. 4. 1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재정투자사업에 면제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등 유사한 타당성 검토를 받은 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되거나 받은 것으로 봄
 -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민간투자법」의 적격성 조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은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봄

표 2-15 | 지방재정법상의 타당성조사 제외 규정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타당성조사)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2.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
 - 나.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검토와 유사한 절차를 이미 거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3(타당성조사의 제외) ① 법 제3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받은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검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검토를 받은 경우
3.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초·중등 교육 시설의 신·증축 사업[본조신설 2024. 1. 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타당성조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 수시로 조사 가능
 - 지방자치단체에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연중 실시되는 시기 (1월, 4월, 7월, 10월)에 맞추어 별도의 용역 추진이 필요
 - 조사 기간은 약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다른 법령에 따라 타당성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은 기간 단축이 가능함

| 표 2-16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상의 타당성조사 절차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 제11조(타당성조사 절차) ① 타당성조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1.>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1차 의뢰는 1월 31일까지, 2차 의뢰는 4월 30일까지, 3차 의뢰는 7월 31일까지, 4차 의뢰는 10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조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3. 11.>
- ③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장은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1.> 본조신설 2014. 11. 28.] [제목개정 2024. 3. 11.]
- 제12조(타당성조사 계약 등) ① 타당성조사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추진한다. <개정 2024. 3. 11.>
- ② 타당성조사 기간은 약정일부터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수행기간을 단축하여 약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1.>
1.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 2의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 대응,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타당성조사 수행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납부하며, 비용에 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 7. 26., 2024. 3. 11.>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계약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지급 등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1.> [전문개정 2015. 12. 24.] [제목개정 2024. 3. 1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지방자치단체는 SPC 자본금의 최소 8% 출자가 필요하나, 10% 이상 취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작용
 - 지방자치단체의 SPC 출자에는 산하기관의 지분도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라 설립방침 결정,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설립 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의견수렴, 행정안전부 설립협의, 조례제정 및 임원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표 2-17 | 지방자치단체의 SPC 설립을 위한 출자 조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설립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검토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경우 타당성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정투자심사의 수시 개최와 모펀드 투자심의회 심사자료 공유를 통해 기간 단축이 가능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의한 프로젝트지만 재정투자심사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정투자 수시심사 개최, 모펀드 투자심의회 심사 자료 공유를 통해 4~5개월 수준으로 소요 기간 단축이 가능함
 - 지역활성화 펀드의 모펀드 규모, 대규모 프로젝트 지향, 면제 기준인 장관급 회의 안건 등을 고려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큼

2) 경북의 민간투자 활성화 자체 펀드 조성 측면

□ 법·제도 현황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을 통해 관련 지활 펀드 관련 근거를 마련

- 2024년 1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관련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44조의2가 신설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펀드 출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출자가 가능한 대상을 규정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펀드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에서 정부 또는 내부자금을 출자한 대상이거나,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사업에 해당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산업은행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정부 지원 자금 또는 내부 자금을 직접 출자한 대상에 출자가 가능하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가 해당됨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대상에 대해 출자가 가능함
- 행정안전부는 2024년 1월 19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였음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통해 펀드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수익성, 공공성,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함
 - 출자 대상은 산업은행 등이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는 집합투자기구, 이를 통해 투자받은 집합투자기구, 자치단체 등이 공동 출자한 주식회사임
 - 즉,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자펀드와 SPC에 관한 출자만 명시하고 있어 해당 제도를 바탕으로 자체 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는 어려운 상황임

【표 2-18】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자 관련 법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정부 지원 자금 또는 내부 자금을 직접적으로 출자한 대상
2. 제1호와 유사한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출자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16.]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

...

제2조(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 등은 영 제44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수익성, 공공성,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의 범위) ① 영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뜻한다.

② 영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의 투자를 받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2.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는 「상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주식회사...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3) 중앙부처 정책펀드의 전문적인 운용을 위한 규정 검토

□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70조에 벤처투자 모태조합의 전문적인 운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법 제67조에 따라 한국벤처투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감독 하에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진행, 벤처투자조합 결성과 업무의 진행 등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전문적인 운용을 담당
- 법 제70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과 관리규정」에서는 한국벤처투자의 벤처투자모태조합에 대한 전문적이고 투명한 운용·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침 제9조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의 모태조합자산 운용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
- 해당 지침 제2조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의 조직, 예산, 인력의 운용은 모태조합의 운용 및 관리에 부합하여야 하며, 제3조~8조에 세부 사항을 제시
 - 한국벤처투자는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정관, 모태조합 출자관리규정 등의 개정 또는 폐지 시 승인, 연간사업계획, 감사의견서 제출 의무가 부여
-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의 자산의 투명성, 전문성, 투자 효율성을 위해 부서장급 2인 및 외부전문가 포함 7인 이내의 출자심의회를 구성
 - 출자심의회는 한국벤처투자가 모태조합을 통해 출자한 자조합 운영기관 선정, 투자 및 관리,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심의·의결
- 한국벤처투자는 중기부장관에 운영실적 제출, 출자자 협의를 통한 모태조합 규약 작성(중기붓아관 사전협의), 외부기관으로부터 모태조합 운영 성과평가, 투명한 운용내역 공시의 의무가 부여됨

【표 2-19】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주요내용

구분	구분	주요 내용
한국 벤처 투자 운영	제2조 관리원칙	• 한국벤처투자 조직과 예산, 인력운용은 모태조합의 운용 및 관리에 부합하여야 함
	제3조 규정변경 승인	• 한국벤처투자 정관, 모태조합 출자관리규정/지침, 운용 중인 모태조합 출자 조합/회사의 규정/지침 개정/폐지시 중기부장관 승인
	제4조~5조 사업계획/결산서	• 연간사업계획/예산편성안 작성/이사회 승인 후 중기부장관 제출 • 사업연도 종료 4개월 내 감사의견서 첨부 중기부장관 제출
	제6조 회계장부 열람	• 중기부장관은 필요시 벤처투자 회계장부/기록 열람 요구하거나 업무 집행상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제7조 감독	• 중기부장관은 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거나 내부 규정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필요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제8조 출자심의회 설치	• 모태조합자산 투명성/전문성/투자효율성 위한 출자심의회 설치운영 (한국벤처투자 부서장급 2인, 외부전문가 포함 7인 이내) • 자조합 운영기관 선정, 투자 및 관리, 위원장 필요사항 심의·의결
모태 조합의 운용· 관리	제9조 모태조합 관리·운용 원칙	•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 자산을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 • 모태조합 관리·운영시 위험 정확하게 인식·측정 및 관리·통제 • 모태조합 자산을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관리·운용, 기록
	제10조 모태조합 운용계획	• 해당연도 모태조합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1/31까지 중기부장관 제출 • 모태조합운용지침에 따라 작성, 변경시 중기부장관 제출 • 계획 수립/변경의 협의 위해 출자기관 등 참여 운용협의회 설치
	제11조 운용실적	• 전년도 모태조합 운용실적을 중기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함(4/30)
	제12조 모태조합 규약	• 모태조합 출자자와 협의하여 모태조합 규약을 작성하여야 함 • 규약 작성 또는 변경시 중기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제13조 성과평가	• 한국벤처투자는 매년 외부기관으로부터 모태조합 운영 성과평가
	제14조 운용내역 공시	• 모태조합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용내역을 공시해야 함(단,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사항은 공개 제한 가능)
	제15조 수탁은행	• 모태조합 자산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해 수탁은행 선정/운영 • 한국벤처투자의 수탁은행 선정 시 ERP시스템 도입 우선 고려
제16조 재검토	• 2021년 10월 25일 기준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농림수산물식품모태조합 및 농림수산물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따라 농림수산물투자모태조합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을 2014년에 제정하였음
- 지침 제4조에 따라 투자전문관리기관(현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식품 투자모태조합 운용 시 공공성과 수익성의 고려, 리스크의 관리·통제, 자산의 구분 관리·운용 및 수탁은행 선정이 요구됨
- 투자전문관리기관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짐
 - 농림·해수부 장관과 농식품투자모태조합 규약 사전협의, 운용계획 변경 시 관련내용 제출 또는 승인, 투자실적, 매년 4월 30일까지 수익/비용 등을 포함한 운용실적 제출 등이 필요함
- 투자관리기관장은 자펀드 운용을 위해 사업공고를 해야하며, 운용사로 선정 받으려는 자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투자심의회 심사를 통해 선정
 - 투자관리전문기관장은 사업 추진개요, 출자분야, 규모, 조건, 선정절차 등을 포함하여 사업공고를 하여야 함
 - 자펀드 운용사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운용사 일반현황, 재무상태 및 투자실적, 운용계획, 운용인력 등을 포함하여 제안서를 제출
 - 운용사의 선정은 서류심사, 현장실사와 투자심의위원회의 구술심사를 통해 일관심사 방식으로 선정되며, 선정결과는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
- 투자심의위원회는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운용사 선정, 자펀드 출자 및 투자관리, 농식품분야 적합성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 기능을 지님
 - 투자심의위원회는 농식품모태펀드의 정책목표 달성도와 수익성 등 전문적인 운용을 위해 구성되어 운용사 선정을 포함하여 관련 내용 심의, 의결
- 농식품모태펀드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운용내역은 공개해야 하며, 지원 사업비 등은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함

- 농식품모태펀드의 전문적인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은 농림 축산식품 관련 투자업무 수행경력, 자금관리 전문성, 인력, 시설 등을 고려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현재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지정
- 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는 사업개요, 출자계획 등을 포함하여 조합 결성계획서를 보고해야하며, 매월 투자실적을 투자관리전문기관에 보고해야 함
 - 업무집행조합원에게는 출자금 납입 완료, 투자 의무 달성, 규약에서 정한 수익률 초과를 모두 고려하여 성과보수를 배분

【 표 2-20 】 농림수산식품모태조합 및 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2장 농식품 투자모태 조합의 관리 및 운용	제4조 농식품투자모태조합 관리·운용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전문관리기관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 • 투자전문관리기관은 위험이 관리·통제되도록 운용 • 농식품모태조합 자산 구분 관리·운용/수탁은행 선정
	제5조 규약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관리전문기관장과 출자자 협의 통한 규약 작성 • 규약 작성/변경시 농림·해수부 장관과 사전협의
	제6조 운용계획 변경 및 운용실적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계획 변경시 농림·해수부 장관 제출/승인 • 운용실적을 농림·해수부장관에 제출(매년 4/30) (자펀드 투자실적, 수익/비용 등 운용현황 등)
	제7조 사업의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관리전문기관장의 자펀드 운용 위한 사업공고 - 사업 추진개요, 출자분야 및 규모, 주요 출자조건, 선정절차 및 일정, 지원방법 및 접수 마감시한 등
	제8조 제안서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펀드 운용사로 선정받으려는 자의 제안서 제출 - 운용사 일반현황, 재무상태 및 투자실적, 자펀드 투자 및 회수 계획 등 운용계획, 자펀드 운용인력 및 관련 지원계획 등
	제9조 자펀드의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자펀드 운용사 선정은 일괄심사 방식 • 서류심사/현장실사/구술심사(투자심의위원회)에 따른 운용사 선정 • 선정결과 인터넷공개(자펀드 최소 결성액, 출자상한액, 결성시한 등)
	제10조 자펀드의 선정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사의 규정위반, 불성실한 업무수행, 사업 포기 및 능력 부족 •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외부압력/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동 등 자펀드 운용에 중대한 영향 발생 등
	제12조 자펀드의 해산 및 존속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펀드는 규약에서 정한 존속기간 만료시 해산 원칙 • 규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 운용지침에서 정함

구분	주요 내용
제13조 투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분야 학식/경험 풍부한 산학연 등 전문가 위촉(임기 3년/연임) - 투자관리전문기관 임직원 2인, 심의위원 인력풀 3인, 공무원 2인 • 운용사 선정기준, 운용사 평가/선정, 자펀드 출자 및 투자관리, 문제가 있는 운용사 출자제한, 농식품분야 적합성 등 출자심의 의결
제14조 실태조사/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펀드 운용사에 대한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 문제 시 제재조치 - 자펀드의 운용 및 관리, 운용사의 투자실적 등
제15조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관리전문기관 장은 매년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영 성과평가
제16조 운용내역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관리전문기관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용내역 공시해야함(단, 부정적인 영향은 사전협의로 제한)
제1조7~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수수료 등 지원사업비는 다른 용도 자금과 분리 관리(제17조) • 지원사업비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 투자관리규정의 제정/시행
제3장 투자관리 전문 기관의 지정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0조 투자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10일 이상 공모, 30일 이내 지정 및 공고 - 농림축산식품 관련 분야 투자업무 수행경력, 자금관리 전문성, 전문인력, 운용계획 충실성 및 이행가능성, 시설 적정성 등 제21조 심사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포함 7명 이내 심사위원회 구성(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제22조 조직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관리전문기관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투자운용, 투자지원, 리스크관리 담당부서를 각각 설치 제23조 운용전문인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태조합 자산 3천억 이하 5명 이상, 매 1천억 증가마다 1명 추가 • 운용전문인력은 관련 분야 투자심사/자금관리 경력 5년 이상 제24조 현금보유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관리전문기관장은 최소자본금외 운영경비 3개월이상 현금보유 • 투자관리전문기관장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에 1천만원 이상 출자 기타(제25~3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전문인력 기준변경 보고, 임직원 겸직 금지/준수의무 등
제4장 농식품 투자 조합의 결성 및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1조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계획서에 포함될 세부내용과 변경 보고 의무 • 사업개요, 출자계획, 조합의 자산운용계획, 조합재산 배분계획, 업무 집행조합원 개요, 조합규약(안), 대표 펀드매니저의 개요 제32조 성과보수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기간 경과 후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성과보수 지급 조건(출자금 납입 완료, 투자의무 달성, 규약에서 정한 수익률 초과) 제33조 투자실적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집행조합원은 매월 투자실적을 투자관리전문기관에 보고 • 투자관리전문기관은 투자실적을 농림·해수부장관에게 보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제3절 펀드 조성 관련 시사점 도출

1.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의 필요성과 의의

□ 민간투자를 둘러싼 지역의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

-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는 정보의 비대칭, 외부효과가 가치에 포함되지 않아 시장실패 가능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에 대한 투자는 정보의 비대칭, 외부효과 발생의 문제가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건설경기 위축의 영향은 지방에서 더욱 강하게 발생 가능
- 민간투자와 관련하여 지역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시장실패 요인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금융 수단 필요
 -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공급의 효율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재정의존도가 높고 단발적·소규모로 추진되던 지역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출범
 -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서 고려되지 못하는 지역 내부에서 파악이 가능한 시장구조를 고려할 수 있는 정책금융 수단을 마련하여 지역의 투자와 관련한 정부와 지역의 시너지 창출이 필요

□ 지역자원과 특성에 기반한 상향식 지역균형발전 도모

-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상향식, 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 중
 - 정부는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 수단 필요
 -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국가 차원에서의 지역 간 격차에 초점을 두면서

지역의 고유한 자원, 시장구조, 발전 방향 등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민간투자 관련 이슈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음

□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한 지방재정 투자의 합리성 제고

- 지역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프로젝트 중의 일부는 재정의존도가 높고 지속가능성 확보가 어려워 지방 재정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 발생
 -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의 재정부담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재정사업에 대한 합리성 제고가 필요함
- 정책 펀드 방식을 통해 경상북도의 정책 목적과 수익성의 균형을 갖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인구감소시대 지방 재정투자의 합리성 제고
 -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지방 재정을 마중물로 민간의 창의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추진하여 효과를 제고함

2.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 시 고려사항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의 차별성 확보 및 연계 구조 마련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중복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책 펀드의 중복성은 재정투자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역 활성화의 관점에서 해당 펀드는 유사성을 지니므로 차별성 확보가 필요

□ 공공성 확보 및 수익 사업화 방지, 투명한 운용을 위한 방안 필요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는 정책펀드로 지역활성화와 관련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운용되어야 하며, 공공의 재정을 통해 민간의 수익 사업을 지원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운용 방안이 필요
- 농림수산물식품모태펀드, 벤처모태펀드 등 중앙정부의 정책펀드는 부처의 정책 목표 달성과 공공성 확보의 측면에서 펀드 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수립하여 전문운용기관에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수익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관리·운용 원칙, 운용계획 제출 및 심의, 운용실적 제출, 출자자와 협의를 통한 규약 작성, 투명한 운용을 위한 운용내역 공시, 수탁은행 지정 및 회계 분리 등의 의무가 부과됨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의 정책 목표 달성, 공공성 확보, 민간에 대한 특혜 방지 및 투명한 운용을 위한 펀드 운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

□ 수익성 및 리스크 관리 등 전문적인 운용을 위한 체계 및 거버넌스 확립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 펀드는 수익성이 고려되어야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운용을 위한 체계 및 거버넌스가 필요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가 수익성, 리스크 관리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체계 및 거버넌스가 필요함
- 중앙부처의 정책펀드는 전문적인 운용을 위한 전담운용기관의 지정, 조직 및 전문인력 구성, 자펀드 운용사 선정 및 취소, 심의위원회 구성, 성과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지침에 규정하고 있음
 - 펀드 운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투자 관련 사항은 전담운용기관과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율성을 확보하나 동시에 체계적인 관리 장치를 마련

3.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 관련 법·제도적 쟁점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활용 측면의 쟁점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지역개발 프로젝트(자펀드)에 출자는 가능하지만, 금융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운용체제로 인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는 한계
 - 프로젝트의 선정은 전담운용기관(한국성장금융)에 의해 금융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 실정을 반영하기 어렵고 수익성이 큰 대규모 사업 위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큼
-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투자 비중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및 투자심사로 인한 행정력, 비용, 시간 부담으로 적시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

- 지방의 출자 규모와 관계없이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며, 모펀드 투자심의회도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시간, 비용, 행정력 부담 발생
 - 투자심사 면제와 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이 마련되었지만,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에서 필요한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이 어렵고, 투자심의 관련 부담 가중으로 프로젝트의 적시 추진에 한계 발생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자체 펀드) 조성 측면의 쟁점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펀드 출자 근거는 마련하였음
 -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대상은 한국산업은행이 직접 출자한 대상과 행정안전부에서 정하여 고시한 대상임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대상으로 선정된 자펀드와 SPC에 한정되어 자치단체에서 직접 출자하여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제 3 장

경상북도의 현황과 민간투자사업 특성

제1절 경상북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

제2절 경상북도 공공시설 운영 현황

제3절 경상북도 민간투자사업 특성

제4절 투자 분야 관련 시사점 도출

03 경상북도의 현황과 민간투자사업 특성

제1절 경상북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

1. 경상북도 현황

□ 행정구역 현황

- 경상북도는 22개 시·군(10개 시, 12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18,422km²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8.3%를 차지함
 - 경상북도는 용도지역 기준 도시지역이 18.6%, 비도시지역이 81.4%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도시지역 26.3%) 대비 도시지역 비중이 작음

【표 3-1】 경상북도 면적 및 도시계획 현황

(단위: km², %)

구분	행정구역 면적(km ²)		도시·비도시지역 비중	
	면적	비중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경북	18,422	18.3%	18.6	81.4
전국	100,444	100.0%	26.3	73.7

주: 군위군은 제외하고 산출하였음
출처: 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계획현황(2022)」

【표 3-2】 경상북도 행정구역 현황

(단위: 개, km²)

구분	시 지역	군 지역	경상북도 합계
개수	10 (45.5%)	12 (54.5%)	22 (100.0%)
면적	9,771 (53.0%)	8,651 (47.0%)	18,422 (100.0%)

주: 군위군은 제외하고 산출하였음
출처: 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계획현황(2022)」

□ 인구 현황

- 2023년 기준 경상북도의 주민등록인구는 255.4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5.0%를 차지하며, 2014년 대비 연평균 0.5% 감소 추이를 보임
 - 최근 10년(2014~2023년) 동안 경상북도의 주민등록인구는 12.2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감소율은 0.5% 수준을 나타냄
 - 같은 시기 국내 인구감소는 2.6천 명에 불과하나, 경상북도는 12.2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전국 비중은 5.2%에서 5.0%로 감소

【표 3-3】 경상북도의 주민등록인구 추이

(단위: 천 명, %)

구분	주민등록인구수(천명)		주민등록인구 변화	
	2014년	2023년	변화량	연평균변화율
경북	2,676.6 (5.2%)	2,554.3 (5.0%)	-122.3	-0.5
전국	51,327.9 (100.0%)	51,325.3 (100.0%)	-2.6	0.0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2014~2023)」

- 경상북도 시 지역의 주민등록인구는 206.5만 명으로 80.9%를 차지하며, 시·군 별로는 포항시가 49.3만 명(19.3%)으로 인구 규모가 가장 큼
 - 경북 주민등록인구 비중은 시 지역이 80.9%, 군 지역이 19.1%를 차지하며, 포항시(19.3%), 구미시(15.9%), 경산시(10.4%) 순서를 나타냄
- 경북 고령인구는 63만 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4.7% 수준이며, 고령인구 비율은 의성군(45.4%)이 가장 높고, 구미시(11.9%)가 가장 낮음
 - 경상북도의 고령인구 비율은 시 지역이 22.5%, 군 지역이 33.8%로 군 지역이 11.3% 높은 수치를 나타냄
 - 고령인구 비율은 의성군(45.4%), 청도군(42.0%), 청송군(41.8%) 순서로 높고, 구미시(11.9%), 칠곡군(18.8%), 경산시(19.5%) 순서로 낮음

| 표 3-4 | 경상북도 시군별 주민등록인구 및 고령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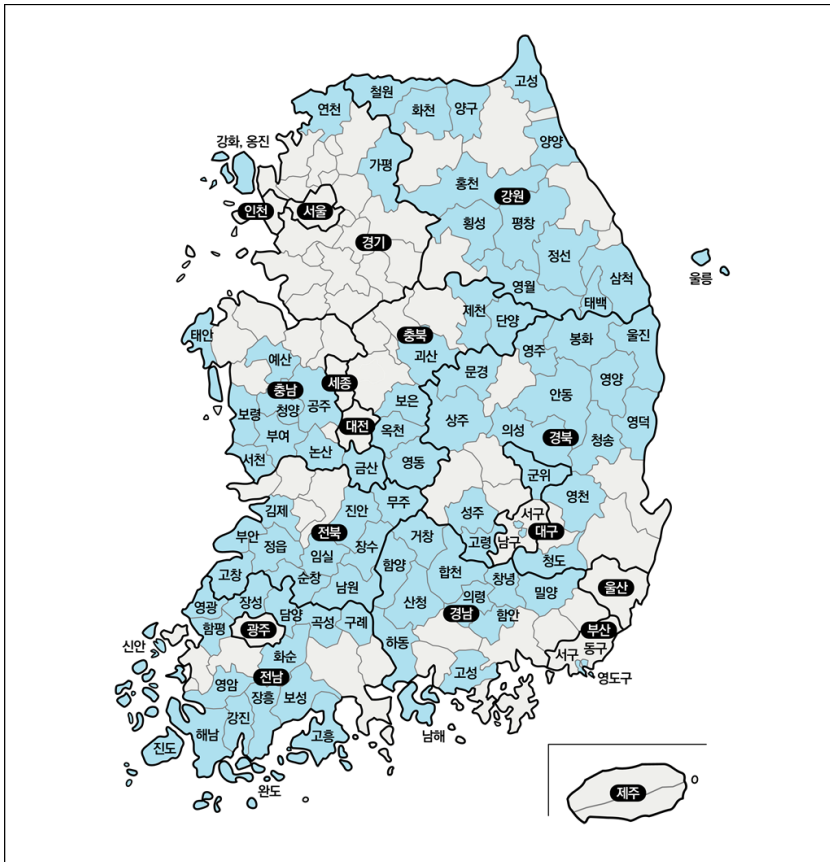
구분	주민등록인구(천명)		고령인구수(천명)		고령인구비율 (B/A*100)	
	인구(A)	비중	고령인구(B)	비중		
시 지역	포항시	493,033	19.3	104,052	16.5	21.1
	경주시	247,489	9.7	64,296	10.2	26.0
	김천시	137,515	5.4	35,830	5.7	26.1
	안동시	152,935	6.0	42,408	6.7	27.7
	구미시	405,506	15.9	48,298	7.7	11.9
	영주시	100,199	3.9	30,454	4.8	30.4
	영천시	100,212	3.9	31,782	5.0	31.7
	상주시	93,858	3.7	32,749	5.2	34.9
	문경시	68,755	2.7	23,386	3.7	34.0
	경산시	266,205	10.4	51,977	8.2	19.5
	소계	2,065,707	80.9	465,232	73.8	22.5
군 지역	의성군	50,086	2.0	22,723	3.6	45.4
	청송군	24,019	0.9	10,043	1.6	41.8
	영양군	15,661	0.6	6,486	1.0	41.4
	영덕군	34,055	1.3	14,211	2.3	41.7
	청도군	41,316	1.6	17,342	2.8	42.0
	고령군	30,139	1.2	10,862	1.7	36.0
	성주군	42,086	1.6	15,405	2.4	36.6
	칠곡군	110,581	4.3	20,840	3.3	18.8
	예천군	55,325	2.2	17,898	2.8	32.4
	봉화군	29,603	1.2	12,232	1.9	41.3
	울진군	46,669	1.8	14,583	2.3	31.2
	울릉군	9,077	0.4	2,629	0.4	29.0
	소계	488,617	19.1	165,254	26.2	33.8
	경북 합계	2,554,324	100.0	630,486	100.0	24.7

주: 고령인구는 65세 이상 인구를 의미함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23)」, 「고령인구비율(2023)」

- 경북 22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북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등 15개 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 경주시, 김천시 등 2개 시·군은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어 경북 내 17개 시·군 (77.3%)이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었음

| 그림 3-1 |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 지역경제 현황

- 2022년 기준 경북의 GRDP는 115조 원으로 전국 5.3% 수준을 나타내며, 1인당 GRDP는 4,389만 원 수준으로 전국 대비 높은 수준임
 - 2022년을 기준으로 경상북도의 1인당 GRDP는 4,389만 원 수준을 나타내며, 이는 전국(4,195만 원)의 104.6% 수준을 나타냄

[표 3-5] 경상북도의 GRDP 및 1인당 GRDP 현황

(단위: 조 원, 천 원)

구분	GRDP(조 원)		1인당 GRDP	
	GRDP	비중	1인당 GRDP	전국 비교
경북	115	5.3%	43,886	104.6
전국	2,166	100.0%	41,948	100.0

출처: 통계청, 「지역소득(2022)」

- 2021년 기준 경상북도 시 지역의 GRDP는 93.8조 원으로 83.6%를 차지하며, 군 지역의 GRDP는 18.5조 원으로 16.4%를 차지함
 - 시·군별로 GRDP는 구미시가 26.4조 원(23.5%)으로 가장 많고, 포항시 23.8조 원(21.2%), 경주시(10.2%) 순서로 높게 나타남
 - 울릉군의 GRDP는 3,634억 원(0.3%)으로 가장 적으며, 영양군 4,959억 원(0.4%), 청송군 7,601억 원(0.7%)의 순서로 적게 나타남
- 2021년 경북의 1인당 GRDP는 시 지역이 4,458만 원(경상북도의 104.3% 수준), 군 지역이 3,699만 원(경상북도의 86.5% 수준)을 보임
 - 1인당 GRDP는 구미시가 6,394만 원(경북의 149.6%), 성주군 5,725만 원(경북의 133.9%), 고령군 5,632만 원(경북의 131.7%) 순서로 높음
 - 시 지역 중에서 경상북도보다 1인당 GRDP가 높은 지역은 구미시(149.6%), 포항시(110.5%), 경주시(106.2%)임
 - 군 지역 중에서는 성주군(133.9%), 고령군(131.7%), 울진군(101.9%) 등 3개 지역이 경상북도보다 1인당 GRDP 수준이 높게 나타남

【표 3-6】 시군별 GRDP 및 1인당 GRDP 현황

(단위: 백만 원, 천 원)

구분	GRDP(백만원)		1인당 GRDP		
	GRDP	비중	1인당 GRDP	경북 대비	
시 지역	포항시	23,796,214	21.2%	47,229	110.5
	경주시	11,434,250	10.2%	45,394	106.2
	김천시	5,812,964	5.2%	41,450	97.0
	안동시	5,810,226	5.2%	37,014	86.6
	구미시	26,380,995	23.5%	63,941	149.6
	영주시	3,395,389	3.0%	33,307	77.9
	영천시	4,272,694	3.8%	41,935	98.1
	상주시	2,746,818	2.4%	28,743	67.2
	문경시	1,858,161	1.7%	26,115	61.1
	경산시	8,312,918	7.4%	30,976	72.5
	소계	93,820,629	83.6%	44,582	104.3
군 지역	의성군	1,481,328	1.3%	29,257	68.4
	청송군	760,103	0.7%	30,975	72.5
	영양군	495,945	0.4%	30,389	71.1
	영덕군	918,724	0.8%	26,016	60.9
	청도군	1,222,943	1.1%	29,193	68.3
	고령군	1,724,830	1.5%	56,319	131.7
	성주군	2,452,578	2.2%	57,247	133.9
	칠곡군	4,285,319	3.8%	37,649	88.1
	예천군	1,369,671	1.2%	24,573	57.5
	봉화군	1,305,950	1.2%	42,453	99.3
	울진군	2,085,437	1.9%	43,576	101.9
	울릉군	363,351	0.3%	40,978	95.9
	소계	18,466,179	16.4%	36,991	86.5
경북 합계	112,286,808	100.0%	42,750	100.0	

주: 1인당 GRDP는 주민등록인구(2021)을 활용하여 산출한 결과임
출처: 통계청, 「GRDP(시/군/구)(2021)」

□ 산업 현황

- 2022년 경북의 사업체는 33.3만 개(전국 5.4%), 종사자는 125.6만 명(전국 5.0%)이며, 2020년 대비 전국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최근 3년(2020~2022년)간 경상북도의 사업체는 32.1만 개에서 33.3만 개로 연평균 1.9% 증가하여 전국(0.9%)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임
 - 최근 3년(2020~2022년)간 경상북도의 종사자는 122.6만 명에서 125.6만 명으로 연평균 1.2% 증가하였으며, 전국(0.8%)보다 높은 수준임

【표 3-7】 경상북도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20년	2022년	CAGR	2020년	2022년	CAGR
경북	321,061 (5.3%)	333,276 (5.4%)	1.9%	1,225,829 (4.9%)	1,255,587 (5.0%)	1.2%
전국	6,032,022 (100.0%)	6,139,899 (100.0%)	0.9%	24,813,449 (100.0%)	25,217,123 (100.0%)	0.8%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2014~2023)」

- 업종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의 사업체는 도매 및 소매업(72,987개)이 가장 많고, 종사자는 제조업(32.6만 명)이 가장 많음
 - 경상북도의 업종별 사업체는 도매 및 소매업(72,987개), 숙박 및 음식점업(54,907개), 제조업(38,816개) 순서로 많음
 - 경상북도의 업종별 종사자는 제조업(32.6만 명), 도매 및 소매업(14.5만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3.0만 명) 순서를 나타냄
- 경북 산업의 전국 비중은 경우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이 사업체 기준 14.5%, 종사자 기준 13.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경상북도 사업체의 전국 비중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4.5%), 공공행정(10.1%), 광업(10.1%) 순서를 나타냄
 - 경상북도 종사자의 전국 비중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3.0%), 농업, 임업 및 어업(11.0%), 광업(9.0%) 순서를 나타냄

【표 3-8】 경상북도 시군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구분	사업체수(개)			종사자수(천 명)		
	경북(A)	전국(B)	비중(A/B)	경북(A)	전국(B)	비중(A/B)
A	1,277	13,102	9.7%	7.4	66.6	11.1%
B	196	1,936	10.1%	1.3	14.4	9.0%
C	38,816	586,532	6.6%	325.9	4253.9	7.7%
D	13,224	91,286	14.5%	21.0	160.7	13.0%
E	1,293	13,756	9.4%	10.8	134.3	8.0%
F	33,498	494,228	6.8%	100.5	1955.6	5.1%
G	72,987	1,519,505	4.8%	144.5	3577.4	4.0%
H	32,852	644,407	5.1%	59.9	1383.5	4.3%
I	54,907	858,593	6.4%	115.0	2215.2	5.2%
J	2,295	127,974	1.8%	10.3	872.9	1.2%
K	2,696	65,050	4.1%	24.3	731.2	3.3%
L	8,715	290,074	3.0%	21.2	692.0	3.1%
M	6,272	226,570	2.8%	34.7	1436.8	2.4%
N	5,950	138,183	4.3%	33.8	1300.1	2.6%
O	1,275	12,642	10.1%	61.1	889.0	6.9%
P	12,126	256,060	4.7%	85.0	1723.1	4.9%
Q	8,593	167,062	5.1%	130.1	2457.5	5.3%
R	6,874	144,915	4.7%	20.7	444.3	4.7%
S	29,430	488,024	6.0%	48.0	908.6	5.3%
전 산업	333,276	6,139,899	5.4%	1255.6	25217.1	5.0%

주: A(농업, 임업 및 어업), B(광업), C(제조업), D(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F(건설업), G(도매 및 소매업), H(운수 및 창고업), I(숙박 및 음식점업), J(정보통신업), K(금융 및 보험업), L(부동산업),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교육 서비스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22)」

- 경상북도의 산업별 총산출액 및 부가가치 비중은 공산품, 서비스, 건설업의 순서를 나타내며, 전국 대비 공산품, 농림수산물, 전기·가스 비중이 큼
 - 경북의 총산출액 비중은 공산품(62.9%), 서비스(23.0%), 건설(6.1%) 순서이며, 전국 대비 공산품, 농림수산의 비중이 크고 서비스 비중이 작음

- 경북 부가가치 비중은 공산품(45.0%), 서비스(36.4%), 건설(6.9%) 순이며, 전국 대비 공산품(45.0%), 농림수산 비중이 크고 서비스 비중이 작음

| 표 3-9 | 경상북도의 산업별 총산출액 및 부가가치 구성

(단위: %)

구분	농림수산	광산품	공산품	전·가·수	건설	서비스	합계	
총 산출액	경북	3.5	0.1	62.9	4.3	6.1	23.0	100.0
	전국	1.6	0.1	44.5	2.9	5.8	45.0	100.0
부가 가치	경북	5.2	0.2	45.0	6.2	6.9	36.4	100.0
	전국	2.0	0.1	29.5	2.7	5.7	59.9	100.0

출처: 한국은행(2020),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 산업단지 현황

- 2023년 기준, 경상북도의 산업단지는 총 154개(전국 11.8%)이며, 지정 면적 합계는 140.9km²(전국 9.7%)에 달함
 - 경북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6,119개(전국 4.9%), 고용은 17만 명(전국 7.3%), 연간생산액(2023)은 96조 원(전국 7.6%) 수준을 나타냄

| 표 3-10 | 경상북도 산업단지 현황

(단위: 개, km², 개, 천 명, 조 원, 백만 불)

구분	단지수	지정면적	업체수	고용자수	연간생산액	연간수출액
경북	154	140.9	6,119	170	96	31,637
	(11.8%)	(9.7%)	(4.9%)	(7.3%)	(7.6%)	(7.5%)
전국	1,306	1,450.3	124,133	2,337	1,263	419,95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2024),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3.4분기)」

- 최근 5년(2019~2023) 동안 경북 산업단지의 입주업체, 고용, 생산, 수출 증가율은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을 나타냄
 - 최근 5년 동안 경북 산업단지의 연평균 변화율은 입주업체 2.7%, 고용 -0.1%, 생산 3.7%, 수출 2.6% 수준으로 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함

【표 3-11】 경상북도 산업단지 생산 및 고용 추이

(단위: 개, km², 개, 천 명, 조 원, 백만 불)

구분	경북			전국		
	2019년	2023년	CAGR	2019년	2022년	CAGR
업체	5,504	6,119	2.7%	102,934	124,133	4.8%
고용	171	170	-0.1%	2,223	2,337	1.3%
생산	83	96	3.7%	991	1,263	6.3%
수출	28,543	31,637	2.6%	354,790	419,957	4.3%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2020, 2024).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해당연도 4분기 자료)」

- 산업단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의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가 79개(51.3%)로 가장 많지만, 생산 규모는 국가산업단지가 69.7%로 가장 큼
 - 경상북도의 산업단지 수는 일반 79개(51.3%), 농공 67개(43.5%), 국가 7개(4.5%), 도시첨단산업단지 1개(0.6%) 순서를 나타냄
 - 지정 면적은 국가산업단지가 총 77.3km²(54.9%)로 가장 크고, 일반산업단지 52.1km²(37.0%), 농공단지 11.4km²(8.1%) 순서를 나타냄
 - 입주업체는 국가산업단지가 2,884개(47.1%)로 가장 많으며, 일반산업단지 2,153개(35.2%), 농공단지 1,082개(17.7%) 순서를 나타냄
 - 고용자는 국가산업단지가 96,810명(57.0%)으로 가장 많고, 일반산업단지 53,063명(31.2%), 농공단지 19,936명(11.7%) 수준을 나타냄
 - 연간생산액은 국가산업단지가 66.9조 원(69.7%), 일반산업단지 18.8조 원(19.6%), 농공단지 10.2조 원(10.7%) 수준을 나타냄
 - 연간수출액은 국가산업단지가 245.8억 불(77.7%)로 가장 많고, 일반산업단지가 48.3억 불(15.3%), 농공단지가 22.2억 불(7.0%) 순서로 많음
- 경상북도의 산업단지는 남부지역과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주요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는 구미와 포항을 중심으로 분포

| 표 3-12 | 경상북도 산업단지 현황

(단위: 개, 천 m², 개, 명, 십억 원, 백만 불)

구분	단지수	지정면적	업체수	고용자수	연간생산액	연간수출액
국가	7 (4.5%)	77,372 (54.9%)	2,884 (47.1%)	96,810 (57.0%)	66,916 (69.7%)	24,584 (77.7%)
일반	79 (51.3%)	52,095 (37.0%)	2,153 (35.2%)	53,063 (31.2%)	18,844 (19.6%)	4,831 (15.3%)
도첨	1 (0.6%)	39 (0.0%)	- (0.0%)	- (0.0%)	- (0.0%)	- (0.0%)
농공	67 (43.5%)	11,401 (8.1%)	1,082 (17.7%)	19,936 (11.7%)	10,233 (10.7%)	2,222 (7.0%)
합계	154 (100.0%)	140,907 (100.0%)	6,119 (100.0%)	169,809 (100.0%)	95,993 (100.0%)	31,637 (100.0%)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2024)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3.4분기)」

| 그림 3-2 | 경상북도의 산업단지 분포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2023)

- 경상북도에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업단지는 69개(44.8%)를 차지하며, 지정면적 합계는 79.7천km²(56.6%)에 달함
 -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7개 산업단지 중 4개(57.1%)가 노후산업단지에 해당하며, 면적은 60.8km²(78.6%)에 달함
 -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15개 산업단지 중 노후산업단지는 15개(19.0%)이며, 면적은 8.2km²(15.8%)로 비교적 노후 수준은 양호한 편임
 - 농공단지의 경우 67개 산업단지 중 50개(74.6%)가 노후산업단지에 해당하며, 지정면적은 총 10.7km²(93.6%)로 노후화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남
- 노후산업단지는 물리적인 노후화뿐 아니라 각종 기반·지원시설 부족으로 인한 업체 이탈과 인력수급 문제 등 단지 전반에 걸친 문제 발생 가능
 - 노후산업단지는 전통적인 생산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공급되면서 기반시설과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표 3-13 | 경상북도 노후산업단지 유형별 현황

(단위: 개, 천 m²)

구분	단지수 기준			지정면적 기준		
	합계	노후	비노후	합계	노후	비노후
국가	7 (100.0%)	4 (57.1%)	3 (42.9%)	77,372 (100.0%)	60,780 (78.6%)	16,592 (21.4%)
일반	79 (100.0%)	15 (19.0%)	64 (81.0%)	52,095 (100.0%)	8,247 (15.8%)	43,848 (84.2%)
도점	1 (100.0%)	0 (0.0%)	1 (100.0%)	39 (100.0%)	0 (0.0%)	39 (100.0%)
농공	67 (100.0%)	50 (74.6%)	17 (25.4%)	11,401 (100.0%)	10,676 (93.6%)	725 (6.4%)
합계	154 (100.0%)	69 (44.8%)	85 (55.2%)	140,907 (100.0%)	79,703 (56.6%)	61,204 (43.4%)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2024)

□ 농업 현황

- 경상북도의 농가는 전국 16.0%, 농가인구는 15.2%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경지면적 비중은 전국 16.1%를 차지함
 - 경북의 농가는 165,754가구(16.0%), 농가인구는 351,375명(15.2%)으로 가장 많고, 경지면적은 243,936ha(16.1%)에 달함
 - 경북의 경지는 밭이 143,350ha로 논이 100,587ha로 58.8%를 차지하며, 밭은 143,350ha로 41.2%를 차지함

【표 3-14】 경상북도의 농가 및 농가인구 현황

구분	농가		농가인구		
	농가수(가구)	비중	농가인구(명)	비중	
도 지역	경북	165,754	16.0%	351,375	15.2%
	경기	120,979	11.7%	308,677	13.3%
	강원	67,436	6.5%	151,326	6.5%
	충북	66,425	6.4%	147,904	6.4%
	충남	122,142	11.8%	266,509	11.5%
	전북	93,305	9.0%	199,157	8.6%
	전남	136,972	13.2%	280,060	12.1%
	경남	120,768	11.7%	259,829	11.2%
	제주	30,365	2.9%	79,797	3.4%
특별·광역시	111,047	10.7%	269,430	11.6%	
전국	1,035,193	100.0%	2,314,064	100.0%	

출처: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2020)」

【표 3-15】 경상북도의 경지면적 현황

(단위: ha)

구분	합계		논		밭	
	경북	전국	경북	전국	경북	전국
경지면적	243,936	1,512,145	100,587	763,989	143,350	748,156
비중	16.1%	100.0%	13.2%	100.0%	19.2%	100.0%

출처: 통계청, 「농업면적조사(2023)」

- 경상북도의 농가소득은 4,567만 원, 농가순소득은 2,871만 원 수준을 보이며, 전국 평균보다 소폭 낮은 상황임
 - 경상북도의 농가소득(4,567만 원)은 9개 도 지역 중에서 제주(5,824만 원), 경기(5,273만 원), 강원(5,038만 원)에 이어 네 번째를 나타냄
 - 경상북도의 농가순소득(2,871만 원)은 9개 도 지역 중에서 제주(4,128만 원), 경기(3,768만 원), 강원(3,084만 원)에 이어 네 번째를 나타냄

표 3-16 | 경상북도의 농가소득 현황

(단위: 만 원)

구분	경북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평균
농가소득	4,567	5,273	5,038	4,157	4,549	4,291	4,557	4,101	5,824	4,706
농가순소득	2,871	3,768	3,084	2,692	2,843	2,332	2,574	2,346	4,128	2,960

출처: 통계청, 「농가경제조사(2022)」

- 경상북도의 스마트팜 참여 농가는 147가구로 전국 7.8%로 농가의 전국 비중 (16.0%)과 비교하면 스마트팜 농가 비중은 낮은 편임
 - 경북 스마트팜 농가는 147가구(전국 7.8%)이며, 시설원예는 96가구(전국 10.8%), 축산은 2가구(전국 0.4%), 노지작물은 49가구(10.0%) 수준

표 3-17 | 경상북도의 스마트팜 농가 현황

(단위: ha)

구분	합계		시설원예		축산		노지작물	
	농가수	비중	농가수	비중	농가수	비중	농가수	비중
경북	147	7.8%	96	10.8%	2	0.4%	49	10.0%
전국	1,895	100.0%	893	100.0%	510	100.0%	492	100.0%

주: 스마트팜코리아 회원 중 데이터 수집활용에 동의한 농가수

출처: 스마트팜코리아(<https://www.smartfarmkorea.net/>), 「지역별 농가 현황(2024.5.8. 기준)」

- 경북 내 영농조합법인은 1,348개(전국 11.9%), 농업회사법인은 1,461개 (전국 10.2%) 수준으로 농가의 전국 비중 대비 조직화 수준은 낮은 상황
 - 영농조합법인은 생산 442개(전국 9.4%), 가공 264개(전국 13.0%), 유통 396개(14.5%), 서비스 18개(6.8%), 기타 229개(전국 14.1%)로 구성

- 농업회사법인은 생산 423개(전국 9.4%), 가공 388개(전국 11.0%), 유통 480개(10.4%), 서비스 11개(5.6%), 기타 160개(전국 11.1%)로 구성

| 표 3-18 | 경상북도의 영농조합법인 운영 현황

(단위: 개소)

구분	합계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		기타	
	법인	비중	법인	비중	법인	비중	법인	비중	법인	비중	법인	비중
경북	1,348	11.9	442	9.4	264	13.0	396	14.5	18	6.8	229	14.1
전국	11,337	100.0	4,680	100.0	2,038	100.0	2,727	100.0	265	100.0	1,625	100.0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23).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 2023」

| 표 3-19 | 경상북도의 농업회사법인 운영 현황

(단위: 개소)

구분	합계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		기타	
	법인	비중	법인	비중	법인	비중	법인	비중	법인	비중	법인	비중
경북	1,461	10.2	423	9.4	388	11.0	480	10.4	11	5.6	160	11.0
전국	14,268	100.0	4,494	100.0	3,514	100.0	4,609	100.0	197	100.0	1,454	100.0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23).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 2023」

□ 의료시설 현황

- 경상북도의 병실은 총 10,698개로 전국의 5.5% 수준을 나타내며, 인구의 전국 비중(약 5.0%) 대비 소폭 높은 비중을 나타냄
 - 입원실의 경우 9,196개(전국 5.2%), 중환자실은 49개(전국 4.5%), 기타 병실은 1,453개(전국 9.0%)로 나타남
- 경상북도의 병상은 총 43,561개로 전국의 6.0% 수준을 나타내며, 인구의 전국 비중(약 5.0%) 대비 소폭 높은 비중을 나타냄
 - 입원실 병상은 35,350개(전국 5.5%), 중환자실 병상은 501개(전국 4.4%), 기타 병상은 7,710개(10.3%) 수준을 나타냄

| 표 3-20 | 경상북도 병실 현황

(단위: 개)

구분	병실 합계		입원실		중환자실		기타 병실	
	병실수	비중	병실수	비중	병실수	비중	병실수	비중
경북	10,698	5.5%	9,196	5.2%	49	4.5%	1,453	9.0%
전국	195,441	100.0%	178,127	100.0%	1,094	100.0%	16,220	100.0%

주: 기타 병실은 정신과병동,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내 병실을 의미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2023), 「2022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 표 3-21 | 경상북도 병상 현황

(단위: 개)

구분	병상 합계		입원실		중환자실		기타 병상	
	병상수	비중	병상수	비중	병상수	비중	병상수	비중
경북	43,561	6.0%	35,350	5.5%	501	4.4%	7,710	10.3%
전국	724,212	100.0%	638,105	100.0%	11,441	100.0%	74,666	100.0%

주: 기타 병상은 정신과병동,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내 병상을 의미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2023), 「2022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 경상북도의 의료 장비는 총 1,917대로 전국의 3.8% 수준을 나타내며, 인구 비중 대비 연구 장비가 적은 특성을 나타냄
 - 경상북도의 의료 장비는 1,917대(전국 3.8%)이며, 자기공명영상기는 65대(전국 3.4%), 양전자방사단층촬영기는 2대(전국 1.1%)에 불과함
 - 경상북도는 병실 또는 병상수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의료 장비 부족 문제가 나타나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발생할 가능성

| 표 3-22 | 경상북도 의료장비 현황

(단위: 대)

구분	의료장비 합계		자기공명영상기		양전자방사단층촬영		기타 의료장비	
	대수	비중	대수	비중	대수	비중	대수	비중
경북	1,917	3.8%	65	3.4%	2	1.1%	1,850	3.9%
전국	50,075	100.0%	1,934	100.0%	174	100.0%	47,967	100.0%

주: 기타 장비는 체외충격파쇄석기, 초음파영상진단기, 혈관조영장치, CT, 유방촬영용장치 등을 의미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2023), 「2022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 경상북도 내에 공공의료기관은 26개로 전국 11.3%를 차지하나, 광역 단위의 일반진료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경상북도 내 광역 단위 일반진료 기관은 없으며, 기초 단위 일반진료기관은 7개(전국 13.0%), 기타 의료기관은 19개(전국 11.9%)로 나타남

| 표 3-23 | 경상북도 공공의료기관 현황

(단위: 대)

구분	공공의료기관 합계		일반진료(광역)		일반진료(기초)		기타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경북	26	11.3%	0	0.0%	7	13.0%	19	11.9%
전국	231	100.0%	18	100.0%	54	100.0%	159	100.0%

주: 기타 공공의료기관은 특수대상중심, 특수질환중심, 노인병원을 합산한 것임
출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기관현황(2022)」

□ 문화·관광 현황

- 경상북도에 등록된 호텔은 37개로 전국 3.5%를 차지하며, 5성 호텔은 2개(3.0%), 4성 호텔은 4개(4.3%), 3성 호텔은 7개(3.8%)로 나타남
 - 경상북도에 등록된 호텔은 경주(15개), 안동(7개), 포항(5개), 김천·성주(각 2개), 구미·군위·울릉·울진·청송·칠곡(각 1개)로 나타남
 - 5성 호텔은 경주에만 2개 위치하며, 4성 호텔은 경주(3개), 구미(1개), 3성 호텔은 경주(3개), 안동(2개), 울진·포항(각 1개)에 위치
- 경상북도 내 등록된 호텔은 인구 비중 대비 낮은 비중을 나타내며, 3성 이상의 호텔은 경주, 안동, 구미, 포항 등 일부 시군에만 위치하고 있음
 - 4성 이상의 호텔은 경주(5개)와 구미(1개) 등 2개 시군에만 위치하여 관광객을 위한 시·군 대부분의 숙박시설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표 3-24 | 경상북도에 등록된 호텔 현황

(단위: 개)

구분	합계		5성		4성		3성		기타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업체수	비중
경북	37	3.5%	2	3.0%	4	4.3%	7	3.8%	24	3.3%
경주	15	1.4%	2	3.0%	3	3.2%	3	1.6%	7	1.0%
구미	1	0.1%	0	0.0%	1	1.1%	0	0.0%	0	0.0%
군위	1	0.1%	0	0.0%	0	0.0%	0	0.0%	1	0.1%
김천	2	0.2%	0	0.0%	0	0.0%	0	0.0%	2	0.3%
성주	2	0.2%	0	0.0%	0	0.0%	0	0.0%	2	0.3%
안동	7	0.7%	0	0.0%	0	0.0%	2	1.1%	5	0.7%
울릉	1	0.1%	0	0.0%	0	0.0%	0	0.0%	1	0.1%
울진	1	0.1%	0	0.0%	0	0.0%	1	0.5%	0	0.0%
청송	1	0.1%	0	0.0%	0	0.0%	0	0.0%	1	0.1%
칠곡	1	0.1%	0	0.0%	0	0.0%	0	0.0%	1	0.1%
포항	5	0.5%	0	0.0%	0	0.0%	1	0.5%	4	0.6%
국내	1,059	100%	66	100%	93	100%	182	100%	718	100%

주: 기타는 2성 이하 및 미분류 호텔과 호스텔을 합산한 것임
출처: 한국호텔업협회(2023), 「2022 호텔업운영현황」.

2. 경상북도 발전계획 검토

1) 경상북도 종합계획

- 경상북도 종합계획(2021~2040)은 더 큰 희망, 더 큰 경북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미래로 세계로 뻗어 가는 경북을 슬로건으로 제시
 - 계획 목표는 차별 없이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스마트 산업 선도지역, 품격있는 글로벌 문화관광 중심지역, 세계로 통하는 교통 물류망 거점지역으로 설정
 - 슬로건인 ‘미래로 세계로 뻗어가는 경북’은 새로운 통합 신공항 시대를 맞이 하여 세계로 뻗어가는 열린 경북을 추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음
- 경상북도 종합계획(2021~2040)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프로젝트를 포함한 총 9개의 프로젝트를 제시
 - 통합신공항 프로젝트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 여객·물류 다변화, 공항 연계 첨단서비스 융합화, 인프라 구축 관련 17개 핵심사업으로 구성

[그림 3-3] 경상북도 종합계획(2021~2040)의 비전



출처: 경상북도(2021)

표 3-25 | 경상북도 종합계획상의 2040 프로젝트 주요내용

구분	목표년도	위치	내용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프로젝트	2030년	의성·군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 여객·물류 다변화 공항 연계 첨단서비스 융합화 공항 연계 SOC·인프라 구축
경북 신기술혁명 프로젝트	2030년	경북 전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먼테크 플랫폼화 하이퍼테크 착근화 혁신적 소재 산업화 뉴 모빌리티 기술 상용화
기후위기극복 그린경북 프로젝트	2030년	경북 전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탄소체계 완벽 전환 기후변화체계 고도화 기후기술 상용화 선도
경북 All-Life 행복 프로젝트	2040년	경북 전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인재양성 통합지원체계 조성 스마트그린테크 육성 시스템 구축 글로벌 시민교육 중심도시 조성
제5절 세계로 열린 문화관광 프로젝트	2040년	경북/ 인근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산해 관광콘텐츠 산업화 관광거점형 도시브랜드화 관광인프라 네트워크화
감염병 대응 안전경북 프로젝트	2030년	경북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메모리얼 사업 감염병 특화 바이오산업 육성 민생경제 안정화 사업 사후 관리체계 강화 사업
북극항로 프론티어 프로젝트	2040년	영일만 신항 및 교류협력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일만 국제종합항만 조성 환동해 공동 자원개발 동해안 자원 기반 신산업 육성
2040 한반도 통합·통일 프로젝트	2040년	경북 및 북한교류/환동해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류협력 역량 강화 남북 신뢰 구축 남북 상생 발전
경북 신공간혁명 프로젝트	2030년	경북 전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도 수송체계의 경쟁력 강화 도로 수송체계의 안전성 강화 초광역연결체계의 다변화

출처: 경상북도(2021)

2) 민선 8기 경상북도 도정방향

- 민선 8기 경상북도는 보통, 행복, 혁신의 가치로 슬로건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의 비전을 설정
- 정책목표는 기업이 키워가는 성공경제, 보통이 성공하는 행복사회, 세계와 함께하는 문화관광, 모두가 안심하는 책임복지로 구성
 - 4대 목표와 관련하여 추진전략과 주요 핵심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첫 번째 핵심과제는 기업 주도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표 3-26】 민선 8기 경상북도 도정 방향과 주요 핵심 과제

구분	추진전략	주요 핵심과제
기업이 키워가는 성공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타버스 수도! 디지털 경제 대전환 • 미래성장엔진 BBC+E • 미래 모빌리티 산업벨트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성공시대 • 기업주도 산업 생태계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남권 제조업 인공지능 확산 • 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산단대개조 • 이차전지 제조혁신 허브 구축 • 동해안 청정에너지 산업벨트 • 미래차 전환 실증 지원 플랫폼 • 경북 미래융합 벤처타운 조성
보통이 성공하는 행복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이 일하고 살기 좋은 경북 • ‘인구정책 대전환’을 통한 활력 회복 • 기술주도형 녹색수산업 대전환 • 어디서든, 누구든 일할 기회 제공 • 미래교육, 미래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경력 은퇴과학자 연구단지 •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 축분소재 산업화 • 자동차산업 대전환 수퍼클러스터 • 나노반도체 융합연구원 구축
세계와 함께하는 문화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 문화 콘텐츠의 세계화 기반 강화 • 디지털 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 • 세계 속의 관광경북으로 대전환 •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확충 • 국제 이벤트 유치로 경북 브랜드 세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 세계문화유산센터 건립 •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 프로젝트 • 메타버스 가상서원 •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 국립산지생태원 조성
모두가 안심하는 책임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형 재난안전체계 구현과 소방서비스 향상 • 경북형 아이돌본체계 구축 • 맞춤형 복지설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질 높은 의료 서비스와 외식산업 대전환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모델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대응 역량 강화 • 돌봄종사자 경북형 임금체계 개편 • 심리적 약자를 위한 케어시스템 •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위탁 • 푸드테크 기반 외식산업 대전환 •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

출처: 경상북도(2023)

| 그림 3-4 | 민선8기 경상북도 비전과 도정 방향



출처: 경상북도(2023)

3) 경상북도 민간투자 활성화 전략

- 경상북도는 민선 8기 도정 방향에 따라 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에 경상북도 민간투자 활성화 전략을 발표
 - 경상북도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향과 경상북도 도정 방향에 따라 2024년 경상북도 민간투자 활성화 전략 발표
- 경상북도 민간투자 활성화 전략은 ‘지역의 미래를 재창조하는 투자회사 경상북도’를 비전으로 2026년까지 민간투자 1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
 - 세부목표는 4대 중점과제 활성화 위한 5대 전략과제 본격 추진으로 설정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선도 사업으로 구미1단지에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현대식 근로자 기숙사(506실)를 건립하는 ‘Again 1973 청년타워’(총사업비는 1,239억 원 규모)를 추진 중
- 지방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가 필요하나, 재정사업 또는 민간사업만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운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과제를 도출
 - 4대 분야는 의료복지, 문화관광, 농업, 산업인프라로 구성되며, 의료복지 부문에서는 중입자 치료기 도입, 공공의료원 신축·현대화의 과제를 제시
 - 문화관광에서는 1시군 1호텔, 전통주 산업 클러스터 등 2개, 농업에서는 스마트팜 단지 조성, 농식품유통물류센터 등 2개 과제를 제시
 - 산업인프라 부문에서는 산업단지 근로자기숙사, 에너지인프라 조성, K-바이오 사이언스파크 등 3개 과제를 제시하였음
- 중점과제 실현을 위한 5대 전략과제로 자금, 조직, 인력, 제도, 거버넌스를 제시 하였으며, 첫 번째 과제로 ‘경북 민간투자활성화 펀드 조성’을 제시
 - 자금 측면에서 경북 민간투자활성화 펀드는 재정과 민간금융이 각각 50%씩 출자하는 방식으로 올해 말까지 1천억 원의 자금 확보를 추진 중
 - 조직 측면에서 민간투자 기획·운영 기능이 강화된 전담 조직(민간투자 활성화과)을 신설하고, 인력 측면에서는 금융전문가를 채용하고 투자설명회, 투자분야별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상시 컨설팅 체계를 확립
 - 제도 측면에서는 지방정부의 펀드 출자 근거 및 자체적인 펀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거버넌스 측면에서 민간투자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대학과 연계한 산업 인재 양성을 추진

| 그림 3-5 | 경상북도 민간투자 활성화 전략의 기본방향

비 전	지역의 미래를 재창조하는 투자회사 경상북도
목 표	2026년까지 지역활성화 민간투자 10조원 달성
세부목표	4대 분야 중점과제 활성화를 위한 5대 전략과제 본격 추진

4대 분야 중점과제		5대 전략과제	
분 야	추진과제	구분	전략과제
의료 복지	① 중입자 치료기 도입 ② 공공의료원 신축·현대화	자금	민간투자활성화 펀드 조성
문화 관광	① 1시군 1호텔 ② 전통주 산업클러스터	조직	민간투자 전담조직 신설
농업	① 스마트팜 단지 조성 ② 농식품유통물류센터	인력	민간투자 전문가 영입, 네트워크 강화
산업 인프라	① 산업단지 근로자기숙사 ② 에너지인프라 조성 ③ K-바이오 사이언스파크	제도	민간투자 특별법 입법화, 표준조례 제정
		거버 넌스	프로젝트 인재 양성, 공공의 수익성 보강

출처: 경상북도(2024)

제2절 경상북도의 공공시설 운영 현황

1. 지역별 운영 현황

- 2020년 기준, 경북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은 총 88개로 전국 9.9%를 차지하며, 토지 면적은 총 5.1㎢로 전국 11.5% 수준을 나타냄
 - 국내 운영 중인 공공시설은 893개(특별·광역시 28.9%, 도 지역 71.1%)이며, 경북은 서울(94개), 경남(92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음

【표 3-27】 시도별 운영 중인 공공시설 현황

(단위: 개, 천㎡)

구분	공공시설 수		토지면적 합계		
	개수	비중	면적	비중	
특별·광역시	서울	94	10.5%	1,346	3.0%
	부산	38	4.3%	1,191	2.7%
	대구	28	3.1%	1,279	2.9%
	인천	32	3.6%	2,635	5.9%
	광주	11	1.2%	852	1.9%
	대전	15	1.7%	633	1.4%
	울산	27	3.0%	952	2.1%
	세종	13	1.5%	143	0.3%
	소계	258	28.9%	9,032	20.3%
도 지역	경기	223	25.0%	8,535	19.1%
	강원	56	6.3%	4,488	10.1%
	충북	34	3.8%	1,646	3.7%
	충남	53	5.9%	4,119	9.2%
	전북	36	4.0%	2,732	6.1%
	전남	41	4.6%	2,670	6.0%
	경북	88	9.9%	5,130	11.5%
	경남	92	10.3%	4,191	9.4%
	제주	12	1.3%	2,057	4.6%
	소계	635	71.1%	35,569	79.7%
총합계	893	100.0%	44,601	100.0%	

주: 2023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군위군 자료는 대구시로 편입하여 산출하였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시설 운영현황(2020)」

□ 관리 및 이용인원 현황

- 경북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의 관리 인력은 총 1,274명이며, 시설당 관리 인력은 14.5명으로 전국(22.8명)보다 적은 수준
 - 경상북도의 공공시설 관리 인력은 경기(6,105명), 서울(3,480명), 경남(1,656명), 부산(1,450명)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음
- 경북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의 연간 이용 인원은 총 457만 명, 시설당 이용 인원은 31.5만 명 수준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 수준을 나타냄

| 표 3-28 | 시도별 공공시설의 관리인력 및 연간이용인원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관리인력 수	시설당 관리인력	이용인원 수	시설당 이용인원	
특별·광역시	서울	3,480	37.0	24,216,099	654,113
	부산	1,450	38.2	4,165,988	109,178
	대구	702	25.1	2,998,950	119,616
	인천	1,032	32.3	2,016,977	62,542
	광주	207	18.8	833,881	44,313
	대전	442	29.5	1,268,435	43,046
	울산	675	25.0	2,173,921	86,957
	세종	248	19.1	14,059,025	736,965
	소계	8,236	31.9	51,733,276	1,620,591
도 지역	경기	6,105	27.4	23,254,586	849,430
	강원	653	11.7	3,310,861	283,933
	충북	484	14.2	2,288,813	160,784
	충남	795	15.0	3,753,524	250,235
	전북	523	14.5	1,679,688	115,619
	전남	452	11.0	2,259,093	204,918
	경북	1,274	14.5	4,569,619	315,641
	경남	1,656	18.0	8,477,390	470,966
	제주	199	16.6	427,726	25,793
	소계	12,141	19.1	50,021,300	2,616,220
전국 합계	20,377	22.8	101,754,576	4,459,284	

주: 2023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군위군 자료는 대구시로 편입하여 산출하였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시설 운영현황(2020)」

□ 수익 현황

-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 중에서 수익이 비용보다 많은 시설은 80개 (9.0%)이며, 경상북도의 경우 3개 시설(3.4%)에 불과함
-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 중에서 수익이 비용보다 많은 시설은 80개 (9.0%)이며, 특별·광역시는 38개(14.7%), 도 지역은 80개(9.0%) 수준임
 - 순수익 발생 사업의 비중은 광주 45.5%, 서울 22.3%, 경기 13.5%, 부산 13.2% 순이며, 경북의 경우 3개(3.4%)에 불과함

| 표 3-29 | 시도별 공공시설의 수익 발생 현황

(단위: 개, %)

구분	순수익 미발생	순수익 발생	합계	
특별·광역시	서울	73 (77.7%)	21 (22.3%)	94 (100.0%)
	부산	33 (86.8%)	5 (13.2%)	38 (100.0%)
	대구	26 (92.9%)	2 (7.1%)	28 (100.0%)
	인천	31 (96.9%)	1 (3.1%)	32 (100.0%)
	광주	6 (54.5%)	5 (45.5%)	11 (100.0%)
	대전	13 (86.7%)	2 (13.3%)	15 (100.0%)
	울산	25 (92.6%)	2 (7.4%)	27 (100.0%)
	세종	13 (100.0%)	0 (0.0%)	13 (100.0%)
	소계	220 (85.3%)	38 (14.7%)	258 (100.0%)
	도 지역	경기	193 (86.5%)	30 (13.5%)
강원		56 (100.0%)	0 (0.0%)	56 (100.0%)
충북		34 (100.0%)	0 (0.0%)	34 (100.0%)
충남		53 (100.0%)	0 (0.0%)	53 (100.0%)
전북		33 (91.7%)	3 (8.3%)	36 (100.0%)
전남		39 (95.1%)	2 (4.9%)	41 (100.0%)
경북		85 (96.6%)	3 (3.4%)	88 (100.0%)
경남		88 (95.7%)	4 (4.3%)	92 (100.0%)
제주		12 (100.0%)	0 (0.0%)	12 (100.0%)
소계		593 (93.4%)	42 (6.6%)	635 (100.0%)
전국	813 (91.0%)	80 (9.0%)	893 (100.0%)	

주: 2023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군위군 자료는 대구시로 편입하여 산출하였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시설 운영현황(2020)」

- 경상북도의 공공시설당 연간 운영비용(10.4억 원), 시설당 수익(1.7억 원), 시설당 순수익(-8.7억 원)은 전국 수준보다 적은 수준을 나타냄
 - 우리나라 공공시설의 연간 시설당 운영비용은 20억 원, 시설당 수익은 7억 원, 시설당 순수익은 -13억 원 수준을 나타냄

| 표 3-30 | 시도별 공공시설의 운영 및 수익 현황

(단위: 개, %, 백만 원)

구분	시설당 운영비용	시설당 수익	시설당 순수익	
특별·광역시	서울	3,273	1,762	-1,512
	부산	3,645	1,840	-1,805
	대구	2,782	726	-2,056
	인천	2,347	542	-1,805
	광주	4,150	1,284	-2,866
	대전	2,370	779	-1,591
	울산	2,585	543	-2,041
	세종	505	34	-471
	소계	2,933	1,217	-1,716
도 지역	경기	2,360	936	-1,424
	강원	1,149	159	-991
	충북	1,709	98	-1,611
	충남	1,262	122	-1,140
	전북	1,065	322	-743
	전남	818	273	-545
	경북	1,043	171	-871
	경남	1,476	458	-1,018
	제주	1,047	86	-961
	소계	1,618	486	-1,133
총합계	1,998	697	-1,301	

주: 2023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군위군 자료는 대구시로 편입하여 산출하였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시설운영현황(2020)」

□ 시군별 현황

- 경북의 공공시설은 시 지역이 57개(64.8%), 군 지역이 27개(30.7%), 본청이 4개(4.5%)이며, 구미시는 공공시설이 11개로 가장 많음
 - 시설당 순수익은 문경시(5.5천만 원)가 유일하게 수익이 비용보다 많으며, 포항시는 시설당 연간 순수익이 -20억 원에 달함

| 표 3-31 | 경상북도 시군별 공공시설 운영 현황

(단위: 개, %, 백만 원)

구분	공공시설 수		운영 현황			
	시설수	비중	시설당 운영비용	시설당 수익	시설당 순수익	
본청	4	4.5%	3,576	2,285	-1,291	
시 지 역	포항시	9	10.2%	2,068	41	-2,027
	경주시	3	3.4%	928	80	-848
	김천시	7	8.0%	976	75	-901
	안동시	4	4.5%	1,373	178	-1,195
	구미시	11	12.5%	948	92	-856
	영주시	7	8.0%	406	51	-355
	영천시	3	3.4%	1,007	70	-937
	상주시	6	6.8%	839	48	-791
	문경시	3	3.4%	281	335	55
	경산시	4	4.5%	1,090	14	-1,075
	소계	57	64.8%	1,057	84	-973
군 지 역	의성군	2	2.3%	647	16	-631
	청송군	1	1.1%	525	0	-525
	영양군	0	0.0%	-	-	-
	영덕군	3	3.4%	1,116	218	-898
	청도군	1	1.1%	366	28	-339
	고령군	2	2.3%	994	11	-983
	성주군	3	3.4%	627	17	-610
	칠곡군	6	6.8%	526	20	-506
	예천군	3	3.4%	671	67	-604
	봉화군	1	1.1%	1,056	15	-1,041
	울진군	2	2.3%	384	29	-356
	울릉군	3	3.4%	276	0	-276
	소계	27	30.7%	638	44	-594
경북 합계	88	100.0%	1,043	171	-871	

주: 2023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군위군 자료는 대구시로 편입하여 산출하였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시설 운영현황(2020)」

2. 유형별 운영 현황

□ 유형별 시설 현황

- 경북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은 문화시설이 37개(42.0%), 체육시설 32개(36.4%), 기타 18개(20.5%), 복지시설 1개(1.10%) 순서로 많음
 - 경북의 공공시설은 전국 대비 문화시설과 기타시설 비중이 소폭 높고,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의 비중이 소폭 낮은 특성을 보임

【표 3-32】 경상북도의 유형별 공공시설 운영 현황

(단위: 개)

구분	경북		전국	
	공공시설 수	비중	공공시설 수	비중
문화시설	37	42.0%	370	41.4%
복지시설	1	1.1%	33	3.7%
체육시설	32	36.4%	345	38.6%
기타시설	18	20.5%	145	16.2%
합계	88	100.0%	893	100.0%

주: 2023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군위군 자료는 대구시로 편입하여 산출하였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시설 운영현황(2020)」

- 경북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은 유형과 관계 없이 시 지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본청에서는 문화시설 2개가 운영되고 있음
 - 문화시설의 경우 시 지역 24개(64.9%), 군 지역 12개(29.7%), 본청이 2개(5.4%)이며, 포항과 구미가 각각 5개로 가장 많음
 - 복지시설의 경우 포항에만 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기타시설은 구미시·상주시(각 3개), 칠곡군·예천군(각 2개) 순서를 나타냄
 - 체육시설은 시 지역이 22개(68.8%), 군 지역이 10개(31.3%)이며, 영주시(4개), 김천·구미·상주시(각 3개)의 순서로 많음

| 표 3-33 | 경상북도 시군 및 유형별 공공시설 운영 현황

(단위: 개, %)

구분	유형별 공공시설 수					
	문화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기타시설	합계	
본청	2 (5.4%)	0 (0.0%)	0 (0.0%)	2 (11.1%)	4 (4.5%)	
시 지 역	포항시	5	1	2	1	9
	경주시	1	0	2	0	3
	김천시	3	0	3	1	7
	안동시	1	0	2	1	4
	구미시	5	0	3	3	11
	영주시	3	0	4	0	7
	영천시	1	0	1	1	3
	상주시	0	0	3	3	6
	문경시	3	0	0	0	3
	경산시	2	0	2	0	4
	소계	24 (64.9%)	1 (100.0%)	22 (68.8%)	10 (55.6%)	57 (64.8%)
군 지 역	의성군	1	0	1	0	2
	청송군	1	0	0	0	1
	영양군	0	0	0	0	0
	영덕군	1	0	1	1	3
	청도군	0	0	1	0	1
	고령군	1	0	0	1	2
	성주군	3	0	0	0	3
	칠곡군	2	0	2	2	6
	예천군	0	0	1	2	3
	봉화군	0	0	1	0	1
	울진군	0	0	2	0	2
	울릉군	2	0	1	0	3
	소계	12 (29.7%)	0 (0.0%)	10 (31.3%)	6 (33.3%)	28 (30.7%)
경북 합계	37 (100.0%)	1 (100.0%)	32 (100.0%)	18 (100.0%)	88 (100.0%)	

주: 2023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군위군 자료는 대구시로 편입하여 산출하였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시설 운영현황(2020)」

□ 관리인력 및 이용인원 현황

- 경북 공공시설의 시설당 관리인력은 문화시설(643명)이 가장 많고, 시설당 관리 인력수는 복지시설(28.0명)이 가장 많음
 - 경북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의 관리 인력 수는 문화시설(643명), 체육시설(371명), 기타시설(232명), 복지시설(28명) 순서로 많음
 - 시설당 관리 인력은 복지시설(28.0명), 문화시설(17.4명), 기타(12.9명), 체육시설(11.6명) 순서로 많음
- 경북 공공시설의 연간 이용 인원은 문화시설(257만 명)이 가장 많고, 시설당 이용 인원 역시 문화시설(7만 명)이 가장 많음
 - 연간 이용인원은 문화시설(257만 명), 기타시설(106만 명), 체육시설(92만 명), 복지시설(1.6만 명) 순서를 나타냄
 - 시설당 연간 이용인원은 문화시설(약 7.0만 명), 기타시설(약 5.9만 명), 체육시설(약 2.9만 명), 복지시설(1.6만 명) 순서로 많음

【 표 3-34 】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유형별 관리인력 및 이용인원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관리인력 현황		연간이용인원 현황	
	관리인력 수	시설당 관리인력	이용인원 수	시설당 이용인원
문화시설	643	17.4	2,574,016	69,568
복지시설	28	28.0	15,600	15,600
체육시설	371	11.6	916,305	28,635
기타시설	232	12.9	1,063,698	59,094
합계	1,274	14.5	4,569,619	51,927

주: 2023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군위군 자료는 대구시로 편입하여 산출하였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시설 운영현황(2020)」

□ 수익 현황

- 경북 공공시설 중 순수익 발생시설은 문화시설, 체육시설, 기타 시설에서 각각 1개이며, 복지시설은 순수익이 발생한 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5】 경상북도의 유형별 순수익 발생 시설 현황

(단위: 개)

구분	순수익 미발생		순수익 발생		합계	
문화시설	36	(97.3%)	1	(2.7%)	37	(100.0%)
복지시설	1	(100.0%)	0	(0.0%)	1	(100.0%)
체육시설	31	(96.9%)	1	(3.1%)	32	(100.0%)
기타시설	17	(94.4%)	1	(5.6%)	18	(100.0%)
합계	85	(96.6%)	3	(3.4%)	88	(100.0%)

주: 2023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군위군 자료는 대구시로 편입하여 산출하였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시설 운영현황(2020)」

- 경북 공공시설 중 시설당 운영비용은 복지시설(20.9억 원), 시설당 수익은 기타 시설(5.9억 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시설당 운영비용은 복지시설(20.9억 원), 문화시설(12.7억 원), 기타시설(10.9억 원), 체육시설(7.2억 원) 수준을 나타냄
 - 시설당 수익은 기타시설(5.9억 원)이 가장 많고, 체육시설(0.7억 원), 문화시설(0.6억 원), 복지시설(백만 원) 수준을 나타냄

【표 3-36】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유형별 운영비용 및 수익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시설당 운영비용	시설당 수익	시설당 순수익
문화시설	1,269	61	-1,208
복지시설	2,086	1	-2,085
체육시설	723	69	-654
기타시설	1,089	590	-499
합계	1,043	171	-871

주: 2023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군위군 자료는 대구시로 편입하여 산출하였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시설 운영현황(2020)」

【 표 3-37 】 경상북도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 현황(문화시설)

(단위: 백만 원)

구분	시설명	비용	수익	순수익	비고	
문화 시설	본청	경북도서관	4,591	0	-4,591	직영
		경북산림과학박물관	441	0	-441	직영
		귀비고	428	3	-425	위탁
	포항	새천년기념관	506	29	-477	직영
		포항문화예술회관	1,244	24	-1,221	위탁
		포항시립미술관	2,980	6	-2,975	직영
		시립포은중앙도서관	8,930	53	-8,877	직영
	경주	경주예술의전당	1,833	64	-1,769	BTL
	김천	김천녹색미래과학관	885	46	-840	BTL
		김천시립도서관	2,046	2	-2,045	직영
		김천시문화예술회관	370	222	-148	직영
	안동	안동문화예술의전당	3,087	147	-2,940	BTL
		강동문화복지회관	1,109	25	-1,084	직영
	구미	구미성리학역사관	239	0	-239	직영
		구미시립양포도서관	148	0	-148	직영
		구미시문화예술회관	1,728	230	-1,497	직영
		선산청소년수련관	1,938	108	-1,830	위탁
	영주	소수박물관	462	113	-349	직영
		영주문화예술회관	318	12	-306	직영
		인삼박물관	340	0	-340	직영
	영천	영천시립도서관	1,025	12	-1,013	직영
		문경자연생태박물관	545	22	-522	위탁
	문경	석탄박물관	26	0	-26	위탁/에코랄라 이용시 무료
		에코랄라	271	983	712	BTL
		경산	삼성현문화박물관	2,447	7	-2,440
	경산	경산시립박물관	348	0	-348	직영
		의성	의성조문국박물관	760	3	-757
	청송	청송문화예술회관	525	0	-525	직영
	영덕	예주문화예술회관	1,406	1	-1,405	직영
	고령	문화누리관	1,739	23	-1,716	직영
가야산역사신화공원		262	12	-249	직영	
성주	성산동 고분군전시관	501	0	-501	직영	
	성주문화예술회관	1,120	40	-1,080	직영	
	칠곡	교육문화회관	278	38	-240	직영
칠곡	호국평화기념관	1,793	33	-1,760	직영	
	울릉	울릉수도역사전시관	100	0	-100	직영
울릉	울릉한마음회관	181	0	-181	직영	
	문화시설 계	46,949	2,258	-44,692	BTL 3, 위탁 5, 직영 29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시설 운영현황(2020)」

| 표 3-38 | 경상북도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 현황(복지 및 체육시설)

(단위: 백만 원)

구분	시설명	비용	수익	순수익	비고	
복지	포항	벧머리 평생교육관	2,086	1	-2,085	직영
		복지시설 소계 1	2,086	1	-2,085	직영 1
체육	포항	장량국민체육센터	1,376	95	-1,281	위탁
		포항야구장	713	98	-615	위탁
	경주	실내체육관	345	2	-343	위탁
		축구공원	606	175	-431	위탁
	김천	김천시종합운동장	369	2	-367	직영
		김천실내수영장	2,223	155	-2,068	직영
		김천실내체육관	860	92	-768	직영
	안동	안동시민운동장	751	41	-710	직영
		안동체육관	319	426	107	위탁
	구미	구미시장애인체육관	871	58	-813	위탁
		금오테니스장	535	57	-478	위탁
		보조경기장	303	11	-292	직영
	영주	대한복싱훈련장	151	2	-150	직영
		영주국민체육센터	84	4	-80	직영
		영주시민운동장	278	9	-269	직영
		영주실내수영장	1,210	215	-995	직영
	영천	종합스포츠허브	1,706	155	-1,550	직영
	상주	국민체육센터	1,583	108	-1,474	직영
		상주국제승마장	1,536	167	-1,369	직영
		상주시실내체육관(신관)	368	2	-366	직영
	경산	경산시민운동장	521	11	-511	직영
		경산실내체육관	1,042	40	-1,003	직영
	의성	의성국민체육센터	533	29	-504	직영
	영덕	영덕문화체육센터	1,335	148	-1,187	직영
	청도	청도국민체육센터	366	28	-339	직영
	칠곡	수영장	14	0	-14	위탁
		칠곡종합운동장	678	6	-672	직영
	예천	예천국민체육센터	81	0	-81	직영
	봉화	봉화국민체육센터	1,056	15	-1,041	직영
	울진	울진국민체육센터	596	55	-542	직영
		울진종합운동장	172	2	-170	직영
	울릉	울릉공설운동장	546	0	-546	직영
	체육시설 소계 32개	24,667	2,209	-22,461	위탁 8, 직영 28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시설 운영현황(2020)」

【표 3-39】 경상북도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 현황(기타시설)

(단위: 백만 원)

구분	시설명	비용	수익	순수익	비고
본청	경북여성가족플라자	1,386	2	-1,384	위탁
	경주타워	7,885	9,137	1,252	위탁
포항	포항구룡포과메기문화관	347	58	-289	직영
김천	김천시립문화회관	76	6	-69	직영
안동	유교랜드	1,334	96	-1,238	위탁
구미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	1,981	306	-1,675	위탁
	구미에코랜드	942	142	-800	직영
	신라불교초전지	632	73	-559	위탁
영천	평생학습관	291	43	-248	직영
상주	낙동강역사이야기촌(관)	402	0	-402	직영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142	10	-132	직영
	한복진흥원	1,000	0	-1,000	위탁
영덕	영덕군 고래불국민야영장	606	506	-100	직영
고령	다산행정복합타운	249	0	-249	직영
칠곡	꿀벌나라테마공원	306	39	-267	직영
	칠곡향사아트센터	86	1	-86	직영
예천	곤충생태원	1,000	162	-838	직영
	삼강문화단지 강문화전시관	931	39	-892	직영
소계	기타시설 소계 18개	19,596	10,620	-8,976	위탁 6, 직영 1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시설 운영현황(2020)」

제3절 경상북도의 민간투자사업 특성

1. 경상북도의 민간투자사업 현황

□ 추진 현황

- 경상북도에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62개(7.6%)이며, 총투자비는 약 4.7조 원(3.8%)으로 사업 수 대비 투자 규모는 적은 편
 - 2022년을 기준으로 경상북도에서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53개로 전국의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약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기준 경북에서 시공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1개로 전국의 2.9%를 차지하며, 시공 준비 중인 사업은 3개로 전국의 7.0% 수준을 나타냄

| 표 3-40 | 경상북도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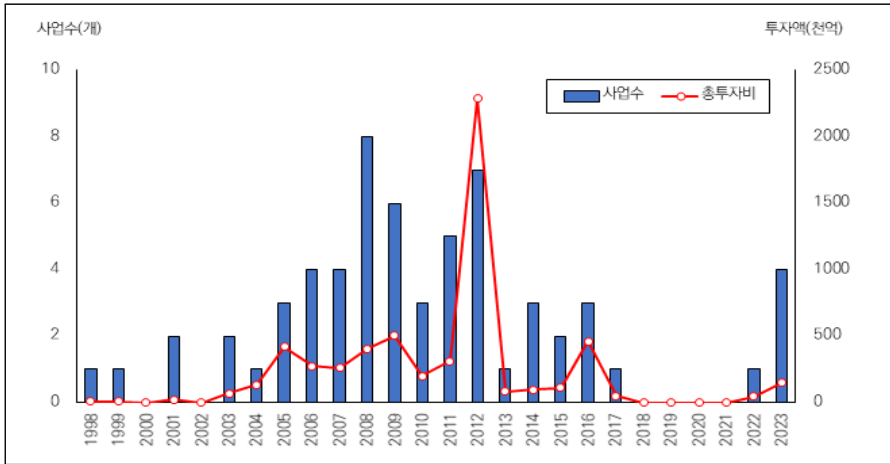
구분	사업수(개)		투자비(억 원)	
	경북	전국	경북	전국
시공 준비	3 (7.0%)	43 (100.0%)	0.9 (2.0%)	45.8 (100.0%)
시공 중	1 (2.9%)	35 (100.0%)	0.4 (0.2%)	205.7 (100.0%)
운영 중	53 (7.7%)	686 (100.0%)	43.9 (4.5%)	982 (100.0%)
운영 종료	5 (9.3%)	54 (100.0%)	1.9 (8.1%)	23.6 (100.0%)
합계	62 (7.6%)	818 (100.0%)	47.2 (3.8%)	1257 (100.0%)

출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https://infrainfo.kdi.re.kr/pv/main.do>

- 경북 민자사업의 착공은 2005년~2012년에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2013년 이후 크게 감소하였고, 2023년에 다시 증가 추이를 보임
 - 1998~2004년에 경상북도에서 착공된 민간투자사업의 건수는 연간 2건 이하의 수준을 나타내며, 임대형 방식이 도입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민간투자사업의 착공이 활발히 이루어졌음
 - 2013년 경상북도의 민간투자사업 착공이 1건으로 감소한 이후 2022년까지 착공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2023년에 4건으로 증가

- 2012년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액은 약 228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상주-영천고속도로 착공과 관련이 있음

〈그림 3-6〉 경상북도 민간투자사업의 착공시기 추이



출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23a) 수정

□ 주무관청별 현황

- 경북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경상북도 및 시·군이 43개(69.4%)로 가장 많고, 대학·교육청 13개(21.0%), 중앙부처 6개(9.7%) 순서를 보임
 -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주무관청은 포항시가 9개(14.5%)로 가장 많고, 경주시가 8개(12.9%)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대학 및 교육청 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이 경상북도 교육청인 사업이 12개(19.4%)이며, 경북대학교는 1개(1.6%)로 나타남
 - 부처에서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개(3.2%),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환경부가 각각 1개(1.6%)로 나타남
- 주무관청별 사업비는 경북 및 시·군이 약 291조 원(49.4%), 중앙부처는 약 255조 원(43.2%), 대학 및 교육청 사업은 44조 원(7.4%)으로 나타남
 - 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은 포항시가 총 97조 원(16.4%)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부처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206조 원(34.9%)으로 가장 큼

| 표 3-41 | 경상북도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 현황

(단위: 개, 억 원)

구분	사업수		투자비		
	사업수	비중	투자비	비중	
경북/ 시군	경상북도	1	(1.6%)	194,917	(3.3%)
	경산시	3	(4.8%)	124,664	(2.1%)
	경주시	8	(12.9%)	492,939	(8.4%)
	고령군	1	(1.6%)	32,754	(0.6%)
	구미시	2	(3.2%)	133,672	(2.3%)
	김천시	3	(4.8%)	155,107	(2.6%)
	문경시	3	(4.8%)	131,263	(2.2%)
	상주시	3	(4.8%)	155,744	(2.6%)
	안동시	1	(1.6%)	49,565	(0.8%)
	영덕군	1	(1.6%)	41,140	(0.7%)
	영주시	2	(3.2%)	128,888	(2.2%)
	영천시	1	(1.6%)	42,702	(0.7%)
	예천군	1	(1.6%)	48,900	(0.8%)
	울진군	1	(1.6%)	62,163	(1.1%)
	의성군	1	(1.6%)	12,851	(0.2%)
	칠곡군	2	(3.2%)	138,198	(2.3%)
	포항시	9	(14.5%)	968,884	(16.4%)
	소계	43	(69.4%)	2,914,351	(49.4%)
대학/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12	(19.4%)	389,714	(6.6%)
	경북대학교	1	(1.6%)	48,059	(0.8%)
	소계	13	(21.0%)	437,773	(7.4%)
부처	국토교통부	2	(3.2%)	2,056,635	(34.9%)
	보건복지부	1	(1.6%)	45,295	(0.8%)
	여성가족부	1	(1.6%)	63,793	(1.1%)
	해양수산부	1	(1.6%)	331,601	(5.6%)
	환경부	1	(1.6%)	49,314	(0.8%)
	소계	6	(9.7%)	2,546,638	(43.2%)
합계	62	(100.0%)	5,898,762	(100.0%)	

출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통계 <https://infrainfo.kdi.re.kr/>

2. 경상북도 민간투자사업의 특성

1) 분야별 특성

□ 추진 현황

- 경북의 민자사업은 경제기반시설이 43개(69.4%)로 전국(46.0%)보다 비중이 크고, 사회서비스가 19개(30.6%)로 전국(30.6%) 대비 비중이 작음
- 환경 분야가 38개(61.3%)로 전국(27.0%) 대비 매우 높은 비중을 나타내며, 교육의 경우 13개(21.0%)로 전국(34.0%)보다 낮은 비중을 보임

【표 3-42】 경상북도 분야별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구분	경북		전국		
	사업수	비중	사업수	비중	
경제 기반	공항	0	0.0%	14	1.7%
	도로	1	1.6%	66	8.1%
	도로(주차장)	2	3.2%	31	3.8%
	도로(휴게소)	0	0.0%	3	0.4%
	유통	1	1.6%	6	0.7%
	철도	0	0.0%	18	2.2%
	항만	1	1.6%	17	2.1%
	환경	38	61.3%	221	27.0%
	소계	43	69.4%	376	46.0%
사회 서비스	교육	13	21.0%	278	34.0%
	문화관광	4	6.5%	42	5.1%
	복지	2	3.2%	20	2.4%
	소계	19	30.6%	340	41.6%
기타	정보통신	0	0.0%	8	1.0%
	주택	0	0.0%	1	0.1%
	국방	0	0.0%	93	11.4%
	소계	0	0.0%	102	12.5%
합계	합계	62	100.0%	818	100.0%

출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통계 <https://infrainfo.kdi.re.kr/>

□ 착공시기 특성

- 경상북도의 민간투자사업은 2000년대와 2010년대에 환경 분야가 가장 활발히 추진되었으며, 2020년대에는 교육 분야가 가장 활발히 추진 중
- 1990년대에는 경상북도에서 착공이 이루어진 민간투자사업은 주차장 분야가 1건(50.0%), 환경 분야가 1건(50.0%)이 추진되었음
 - 2000년대에는 환경 분야가 19건(63.3%), 교육 분야가 6건(20.0%), 문화·관광이 2건(6.7%), 주차장·유통·항만이 각 1건(각 3.3%) 추진
 - 2010년대에 착공된 민간투자사업은 환경 분야가 17건(68.0%), 교육이 3건(12.0%), 문화관광·복지가 각 2건(각 8.0%), 도로가 1건(4.0%)임
 - 2020년대에 착공이 이루어진 민간투자사업은 교육이 4건(80.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환경이 1건(20.0%)을 차지

| 표 3-43 | 경상북도 민간투자사업의 분야별 착공시기 현황

(단위: 개)

구분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합계
교육	(0.0%)	6 (20.0%)	3 (12.0%)	4 (80.0%)	13 (21.0%)
도로	(0.0%)	(0.0%)	1 (4.0%)	(0.0%)	1 (1.6%)
주차장	1 (50.0%)	1 (3.3%)	(0.0%)	(0.0%)	2 (3.2%)
문화관광	(0.0%)	2 (6.7%)	2 (8.0%)	(0.0%)	4 (6.5%)
복지	(0.0%)	(0.0%)	2 (8.0%)	(0.0%)	2 (3.2%)
유통	(0.0%)	1 (3.3%)	(0.0%)	(0.0%)	1 (1.6%)
항만	(0.0%)	1 (3.3%)	(0.0%)	(0.0%)	1 (1.6%)
환경	1 (50.0%)	19 (63.3%)	17 (68.0%)	1 (20.0%)	38 (61.3%)
합계	2 (100.0%)	30 (100.0%)	25 (100.0%)	5 (100.0%)	62 (100.0%)

출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통계 <https://infrainfo.kdi.re.kr/pv/stats/pvtinvstStats.do>

□ 건설 소요 기간

- 경북에서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의 건설 소요 기간은 3~4년 미만(39%)이 가장 많고, 2~3년 미만(23%), 1~2년 미만(16%) 순서를 나타냄
 -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 중에 건설 소요 기간이 4~5년 미만인 사업은 4건(7%)으로 나타남
- 교육, 주차장, 복지 분야의 경우에는 건설에 소요된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나, 도로, 향만의 경우 건설에 소요된 기간은 비교적 긴 편임
 - 교육 분야는 건설 소요기간이 1년 미만 7개(78%), 1~2년(22%)이며, 주차장은 1년 미만(100%), 복지는 1~2년 미만(100%)으로 나타남
 - 도로와 향만의 경우에는 건설 기간이 4~5년 미만 각각 1건(100%)으로 건설에 소요된 기간이 긴 편에 해당함
- 환경 분야 민간투자사업의 건설 기간은 3~4년 미만이 21건(57%)으로 가장 많고, 2~3년 미만 10건(27%), 1~2년 미만 4건(11%)으로 나타남

【표 3-44】 경상북도 민간투자사업의 분야별 소요기간 현황

(단위: 개)

구분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4년 미만	4~5년 미만	합계
교육	7 (78%)	2 (22%)	0 (0%)	0 (0%)	0 (0%)	9 (100%)
도로	0 (0%)	0 (0%)	0 (0%)	0 (0%)	1 (100%)	1 (100%)
주차장	2 (100%)	0 (0%)	0 (0%)	0 (0%)	0 (0%)	2 (100%)
문화관광	0 (0%)	1 (25%)	3 (75%)	0 (0%)	0 (0%)	4 (100%)
복지	0 (0%)	2 (100%)	0 (0%)	0 (0%)	0 (0%)	2 (100%)
유통	0 (0%)	0 (0%)	0 (0%)	1 (100%)	0 (0%)	1 (100%)
향만	0 (0%)	0 (0%)	0 (0%)	0 (0%)	1 (100%)	1 (100%)
환경	0 (0%)	4 (11%)	10 (27%)	21 (57%)	2 (5%)	37 (100%)
합계	9 (16%)	9 (16%)	13 (23%)	22 (39%)	4 (7%)	57 (100%)

주: 건설 소요기간이 미정인 사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출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통계 <https://infrainfo.kdi.re.kr/pv/stats/pvtinstvStats.do>

□ 사업 규모 특성

- 경상북도에서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살펴보면, 3백억~5백억 미만이 27개(43.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경상북도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는 3백억~5백억 미만이 27개, 3백억 미만과 5백억~1천억 미만이 각각 13개, 1천억 이상이 9개로 나타남
- 교육 분야는 3백억~5백억 미만이 69.2%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환경 분야는 3백억~5백억 미만이 36.8%, 5백억~1천억 미만이 31.6%를 차지
 - 경북의 도로, 유통, 항만 분야 각 1건의 민자 모두 총사업비가 1천억 이상을 나타내며, 도로(주차장) 2건은 모두 총사업비가 3백억 미만임
 - 문화관광은 3백억~5백억 미만 사업이 3건(75.0%)으로 가장 많고, 5백억~1천억 미만이 1건(25.0%)으로 나타남

표 3-45 | 경상북도 분야별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비 현황

(단위: 개)

구분	3백억 미만	3백억~5백억 미만	5백억~1천억 미만	1천억 이상	합계
교육	4 (30.8%)	9 (69.2%)	(0.0%)	(0.0%)	13 (100.0%)
도로	(0.0%)	(0.0%)	(0.0%)	1 (100.0%)	1 (100.0%)
주차장	2 (100.0%)	(0.0%)	(0.0%)	(0.0%)	2 (100.0%)
문화관광	(0.0%)	3 (75.0%)	1 (25.0%)	(0.0%)	4 (100.0%)
복지	1 (50.0%)	1 (50.0%)	(0.0%)	(0.0%)	2 (100.0%)
유통	(0.0%)	(0.0%)	(0.0%)	1 (100.0%)	1 (100.0%)
항만	(0.0%)	(0.0%)	(0.0%)	1 (100.0%)	1 (100.0%)
환경	6 (15.8%)	14 (36.8%)	12 (31.6%)	6 (15.8%)	38 (100.0%)
합계	13 (21.0%)	27 (43.5%)	13 (21.0%)	9 (14.5%)	62 (100.0%)

출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통계 <https://infrainfo.kdi.re.kr/pv/stats/pvtinvstStats.do>

□ 추진 방식별 대상사업 특성

- 경북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제안사업이 19개(30.6%)로 전국(20.4%)보다 비중이 높으나, 환경 분야가 17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경북의 민간제안사업은 환경 분야가 89.5%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환경, 도로, 주차장을 제외한 분야에서 추진된 민간제안사업은 없는 상황
 - 경북의 정부고시사업은 환경(48.8%), 교육(30.2%), 문화관광(9.3%) 순이며, 전국 대비 환경 비중이 높게 나타남

| 표 3-46 | 경상북도 분야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 현황

구분	경북				전국			
	민간제안		정부고시		민간제안		정부고시	
경제 기반	공항	0 (0.0%)	0 (0.0%)	1 (0.6%)	13 (2.0%)			
	도로	1 (5.3%)	0 (0.0%)	48 (28.7%)	18 (2.8%)			
	주차장	1 (5.3%)	1 (2.3%)	3 (1.8%)	28 (4.3%)			
	휴게소	0 (0.0%)	0 (0.0%)	3 (1.8%)	0 (0.0%)			
	유통	0 (0.0%)	1 (2.3%)	2 (1.2%)	4 (0.6%)			
	철도	0 (0.0%)	0 (0.0%)	6 (3.6%)	12 (1.8%)			
	항만	0 (0.0%)	1 (2.3%)	5 (3.0%)	12 (1.8%)			
	환경	17 (89.5%)	21 (48.8%)	89 (53.3%)	132 (20.3%)			
	소계	19 (100.0%)	24 (55.8%)	157 (94.0%)	219 (33.6%)			
사회 서비스	교육	0 (0.0%)	13 (30.2%)	1 (0.6%)	277 (42.5%)			
	문화관광	0 (0.0%)	4 (9.3%)	8 (4.8%)	34 (5.2%)			
	복지	0 (0.0%)	2 (4.7%)	0 (0.0%)	20 (3.1%)			
	소계	0 (0.0%)	19 (44.2%)	9 (5.4%)	331 (50.8%)			
기타	정보통신	0 (0.0%)	0 (0.0%)	1 (0.6%)	7 (1.1%)			
	주택	0 (0.0%)	0 (0.0%)	0 (0.0%)	1 (0.2%)			
	국방	0 (0.0%)	0 (0.0%)	0 (0.0%)	93 (14.3%)			
	소계	0 (0.0%)	0 (0.0%)	1 (0.6%)	101 (15.5%)			
합계	합계	19 (100.0%)	43 (100.0%)	167 (100.0%)	651 (100.0%)			

출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통계 <https://infrainfo.kdi.re.kr/>

2) 사회서비스 관련 민간투자사업 특성

□ 문화관광

- 경북에서 추진된 문화관광 분야 민간투자사업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경주 문화예술회관, 국립청소년수련원, 김천 녹색미래과학관 등 4건임
 - 4개 사업 모두 BTL 방식으로 추진된 정부고시사업으로 건축이 완료되어 운영 중이며, 김천 녹색미래과학관은 사모펀드가 주요 출자자로 참여

【표 3-47】 경상북도 민간투자사업 현황(문화관광)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유형	총사업비	건설기간	주요 출자자	시행자	비고
정부고 시	안동문화 예술의전당 건립	49,565	'08.1.~'10.8. (20년 운영)	(주)신한은행, 영진종합건설 등	(가칭)안동Art- Center운영(주)	BTL
	경주문화 예술회관 건립	64,280	'08.4.~'10.8 (20년 운영)	케이티엠(주), (주)하나은행 등	경주문화회관 운영(주)	BTL
	국립청소년수련원 (영덕·김제)	57,882	'11.5.~'13.5. (20년 운영)	신한금융투자(주), 벽산건설(주) 등	(가칭)푸른청소년 수련시설주식회사	BTL
	김천 녹색미래 과학관 건립	34,165	'12.5.~'14.5. (20년 운영)	KB한반도BTL 사모특별펀드1호 등	김천에코그린 주식회사	BTL

출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통계 <https://infrainfo.kdi.re.kr/pv/stats/pvtinvstStats.do>

【그림 3-7】 경상북도 문화관광 분야 주요 민간투자사업



출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https://infrainfo.kdi.re.kr/>)
 김천녹색미래과학관(<https://gcsn.gc.go.kr/>)

□ 복지

- 경북에서 추진된 복지 분야 민간투자사업은 의성군공립요양병원과 영주적십자병원 신축 등 2개 사업이며, 2개 모두 정부고시사업에 해당함
 - 의성군공립요양(치매)병원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총사업비 118.7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한국투자증권, 씨엔에스 등이 출자자로 참여
 - 영주적십자병원 신축사업은 정부고기사업으로 총사업비 408.4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한화손해보험(주), (주)두잉씨앤에스 등이 출자자로 참여

【 표 3-48 】 경상북도 민간투자사업 현황(복지)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유형	총사업비	건설기간	주요 출자자	시행자	비고
정부 고시	의성군공립요양 (치매)병원	11,874	'12.5.~'13.9. (20년 운영)	한국투자증권, 씨엔 에스(주) 등	(가칭)의성건강 (주)	BTL
	영주적십자병원 신축	40,839	'15.9.~'17.6. (20년 운영)	한화손해보험(주), (주)두잉씨앤에스	(가칭)헬스케어 (주)	BTL

출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통계 <https://infrainfo.kdi.re.kr/pv/stats/pvtinvstStats.do>

【 그림 3-8 】 경상북도 복지 분야 주요 민간투자사업



출처: 의성군공립요양병원(<http://www.uschp.kr/>)
 영주적십자병원(<https://www.rch.or.kr/web/rchyoungju/>)

□ 유통 및 항만

- 경북에서 추진된 유통 분야 민간투자사업은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 컨테이너기지 사업 1건이며, 총사업비 규모는 1,360억 원에 달함
 - 해당 사업은 세방기업(주), 한글과컴퓨터 등이 출자자로 참여하여 BOO방식으로 추진되었고, 건설은 2007년 2월부터 약 44개월이 소요되었으며,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음
- 경북에서 추진된 항만 분야 민간투자사업은 포항 영일만 신항개발(1-1) 사업이며, 총사업비 규모는 2,465억 원에 달함
 - 출자자는 경상북도지사, 포항시장, 대림산업이며, 건설은 2005년 8월부터 48개월이 소요되었고, BTO 방식으로 운영기간은 50년임

【표 3-49】 경상북도 민간투자사업 현황(유통·항만)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유형	총사업비	건설기간	주요 출자자	시행자	비고
정부 고시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136,032	'07.2.~'10.11. (20년 운영)	셋방기업(주), 한글과컴퓨터	(가칭)칠곡내륙화물 기지 주식회사	BOO
	포항 영일만 신항 개발 (1-1)	246,548	'05.8.~'09.8. (50년 운영)	경북지사, 포항시장, 대림산업	포항영일신항만 주식회사	BTO

출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통계 <https://infrainfo.kdi.re.kr/pv/stats/pvtinvstStats.do>

【그림 3-9】 경상북도 유통 및 항만 분야 주요 민간투자사업



출처: 손주락(202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23b)

제4절 투자 분야 관련 시사점 도출

1. 차별화된 정책목표 설정

□ 정책목표 설정의 필요성

- 펀드 방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수익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갖춘 전문적인 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이 필요
 - 정책펀드는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 가능성이 큰 분야에 정부 재정을 지분 투자하여 자금공급을 촉진하는 정책금융 수단임
 - 민간시장에 개입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와의 유사성 측면에서 경북 자체 펀드의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이 필요함

□ 지역투자의 효과성 제고에 초점을 둔 정책목표 설정 필요

- 경북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은 시설당 연간 8.7억 원의 적자가 발생 중이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의 재정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어 지방재정 투자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접근 필요
 - 경북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은 88개로 전국 9.9% 수준에 달하며, 관리 인력은 시설당 14.5명, 연간 적자 규모는 시설당 8.7억 원에 달함
- 지방의 민간투자 사업은 투자 규모가 작으며, 환경과 교육 분야에 한정되어 추진되고 있어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측면에서도 접근 필요
 - 경북에서 추진된 민간투자 사업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환경(61.3%)과 교육(21.0%)에 한정되어 지역발전의 효과는 미미한 상황임
- 경북과 시군의 특수성과 잠재력을 반영하여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역 내 균형발전 달성 측면에서의 목표 설정도 필요
 - 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차별성을 갖추면서 해당 제도의 사각지대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 필요

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 유형 구분

□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효율성 개선 측면

-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민간 자금을 통해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펀드 방식을 통해 효율성 개선을 도모할 필요
 - 에코랄라(문경), 안동체육관(안동), 경주타워(경주)의 경우에는 유사한 유형의 시설과 달리 수익이 창출되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펀드 방식의 이점을 활용하여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운영에 대한 재정 부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의 접근이 필요

□ 지역투자의 불확실성과 수익성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측면

- 지방재정을 마중물로 지역 민간투자의 불확실성과 수익성을 개선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중대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지역발전의 변곡점 창출 필요
 - 지방재정을 마중물로 지역의 민간투자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익성을 제고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중대형 프로젝트의 추진이 필요
 - 암묵지로서 현금흐름에 반영하기 어려운 지역의 고유한 잠재력과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투자 분야 설정이 필요함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시너지 창출 측면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공공성 또는 수익성을 보강하거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와 차별성을 갖춘 프로젝트에 투자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프로젝트의 공공성을 보강하여 지역투자의 효과를 높이거나, 부족한 수익성을 보강하여 지역 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추진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한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중복성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

3.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프로젝트 선정

□ 정책 펀드의 적합성 검토 및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마련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를 통해 투자되는 프로젝트는 재정사업이나 민간사업 대비 펀드 방식으로 추진했을 때 이점이 있는 프로젝트에 초점
 - 수익 창출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민간 자본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수익구조 개선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수익성 확보는 가능하지만, 정책목표의 달성이나 공공성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는 지역 또는 프로젝트 유형별로 수익성과 공공성은 차이를 나타내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작성 필요
 - 시군별, 프로젝트별 수익성 등의 특성은 차이를 보이므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위험 분산, 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

□ 시장 상황을 고려한 프로젝트 우선순위 설정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를 통한 프로젝트는 시기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지며, 투자금이 회수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다수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 하기에는 현재의 인력, 조직, 제도상에서 한계가 발생
 - 펀드를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제도와 조직, 전문적인 운용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
- 프로젝트별 지역 현황, 수익성, 정책 의지와 재정 투자 규모 등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의한 전략적인 추진 필요
 - 프로젝트별 시장구조, 재정투자 여건, 정책적 의지, 토지 확보 등 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의한 전략적인 프로젝트 추진

제 4 장

지역특화 펀드 조성 사례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지역특화 펀드 조성 사례 분석

제3절 펀드 운영 관련 시사점 도출

04 지역특화 펀드 조성 사례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1. 분석 목적과 분석 틀

- 지역 단위에서 특화펀드를 조성한 사례를 분석하여 경상북도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의 운용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분석 틀은 정책 펀드와 관련된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펀드의 조성, 운용, 청산의 단계로 구분하여 사례 펀드의 특성을 조사·분석
 - 조성 단계에서는 사례 펀드의 설립 개요, 정책 펀드의 타당성, 정책 펀드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관련 내용을 조사
 - 운용 단계에서는 펀드 운용구조의 적절성 측면에서 투자 분야의 타당성, 운용 체계의 적절성, 투자 결정의 전문성 측면에서 특성을 분석
 - 성과/청산 단계에서는 사례 펀드의 운용 성과와 청산에 초점을 두고 정책 목표 달성, 자펀드 결성, 지역 활성화 효과, 재정환수 등을 조사

표 4-1 | 사례 분석의 틀

구분	내용	세부내용
조성	펀드 목적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 설립의 개요(배경, 목적, 설립 근거 등) • 펀드 설립의 타당성(시장실패와 정책 개입의 타당성) • 정책 펀드의 효율성(중복성과 민간금융 경쟁 특성)
운용	펀드 운용구조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분야의 타당성(정책 목적과 수익성 측면) • 운용 체계의 적절성(출자구조, 거버넌스, 전담운용기관) • 투자 결정의 전문성/정책목표 달성(심의위원회, 출자 비중/조건 등)
성과/청산	운용 성과와 청산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 펀드의 운용 성과(정책목표 달성, 자펀드 결성, 투자 사례) • 사례 펀드의 청산 특성(존속기간, 환수구조, 모니터링 등)

2. 사례 선정

□ 사례 선정 기준

- 사례분석은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의 운용 측면에서 시사점 도출에 목적을 두고 지역 특성, 자료 공개, 성과 분석에 관한 3가지 기준을 설정
- 지역 특성 측면에서 국가 단위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달리 경상북도의 정책 목표와 시장실패 영역에 관한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사례를 선정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는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정책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지역의 시장구조 특수성을 반영한 투자 분야 설정이 필요함
- 성과 분석 측면에서 공공의 재정을 바탕으로 정책펀드가 조성된 이후 투자가 일정 수준 이루어져서 성과 분석이 가능한 사례를 선정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의 적절한 운용구조 설정을 위해서는 펀드의 운용이 일정 기간 진행되어 문제점과 성과 분석이 가능한 사례 선정 필요
- 자료 확보 측면에서 지역이 주도하여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한 사례가 적기 때문에 분석을 위한 자료 확보의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설정
 - 지역 단위에서 운용되는 펀드는 기금의 출자와 관련하여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벤처투자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이마저도 전문적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는 상황임

【표 4-2】 사례 선정 기준

구분	내용
지역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정책목표 및 지역 정책 펀드의 조성목표 특성을 반영된 사례 • 지역 여건과 시장구조 특성을 반영한 투자 분야를 설정한 사례
성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재정을 마중물로 목표한 규모로 정책 펀드를 조성한 사례 • 조성된 펀드가 투자 분야에 일정 수준 이상 투자가 진행된 사례
자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기관 선정, 투자 결정 등 펀드 운용과 관련 자료 확보가 가능한 사례 • 자펀드의 조성, 투자의 결정 등 관련 정보가 공개된 사례

제2절 지역특화 펀드 조성 사례 분석

1. 서울 Vision 2030 펀드 조성 사례

1) 조성 측면

□ 배경 및 목적

- 서울 비전 2030 펀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여 서울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벤처·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해 2023년에 조성
 - 서울시는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서울의 성장동력이 약화하면서 2018년 2월 「서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음
 - 해당 계획에 따라 공공 자금을 마중물로 서울 산업구조에 특화된 유망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유니콘기업 배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 비전 2030 펀드 조성이 추진되었음
 - 서울 비전 2030 펀드의 목표는 서울시의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로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을 실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음
 -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벤처·창업 기업에 대하여 서울시 산업구조와 정책 방향에 따라 차별화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음

□ 추진 근거

- 서울 비전 2030 펀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중소기업육성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조성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하여 기금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벤처투자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하면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기금의 운용 자금 중 10% 이내를 출자할 수 있음
 - 지방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역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조합과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 가능

[표 4-3] 서울 비전 2030 펀드 조성 현황

구분	세부 내용
조성목적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로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 실현
자금구성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 모태·성장금융펀드 + 운용사(GP)·일반조합원(LP)
조성규모	5조원
존속기간	8년(투자 4년 + 회수 4년)
회수방법	IPO(기업공개), M&A(인수합병), 세컨더리마켓, 투자기업 상환 등
투자분야	서울시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업종과 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6개 분야 구성 (디지털 대전환, 바이오, 첨단 제조, 창조산업, 첫걸음 동행, 스케일업)
비고	서울시 펀드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투자처 발굴/투자를 위한 운용사 선정

출처: 서울특별시(2022, 2023a, 2023b, 2024a, 2024b)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표 4-4] 서울 비전 2030 펀드의 법적 근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 등) ①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1의 기금을 말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별표 1에 따른 기금을 관리하는 자에게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퍼센트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용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4.>

1.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관련단체 등에 대한 용자
2. 금융기관의 저금리용자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
3. 기금 차입금·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4.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5. 특별신용보증지원으로 발생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결산상 기본재산 손실금에 대한 보전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4.>

1.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③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10.4.>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 운용 측면

□ 투자 분야

- 서울 비전 2030 펀드의 투자 분야는 서울시의 산업구조와 중장기 정책 방향,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서울 비전 2030 펀드는 민선 8기 공약사항 「5개 분야 일자리 공약」, 「서울 창업정책 2030 추진계획」, 「서울 창조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 서울시의 산업 및 일자리 관련 중장기 방향을 고려하여 선정
 - 2023년에는 디지털대전환, 창업지원, 바이오, 문화콘텐츠, 첫걸음동행, 스케일업 등 6개 투자 분야를 설정하였음
- 2024년에는 여건 변화와 분야별 수익성 등의 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 비전 2030 펀드 조성·운용 변경계획」을 통해 투자 분야 재구조화
 -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유동성 감소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투자조합의 결성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벤처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자금의 벤처투자 마중물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
 - 민간투자에서 소외된 첨단제조 산업을 육성하여 제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첨단제조 분야를 신설하고 목적투자 비율을 높여 민간 투자를 유도

- 지식기반산업의 종합적인 육성을 통해 서울의 문화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세계 창조산업 시장 선점을 위해 창조산업 분야 전 가치사슬에 투자하고자 기존의 문화콘텐츠 펀드를 창조산업 펀드로 확대함
- 창업지원 펀드는 타 펀드와의 투자 부문이 중복된 일반 분야의 운영을 종료하고, 재도약 분야는 성격이 유사한 첫걸음 동행 펀드와 통합

[표 4-5] 서울 비전 2030 펀드의 투자 분야

구분		대상	목표	
업종	디지털 대전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기업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바이오	성장 잠재력이 높은 바이오, 의료, 헬스케어 기업	바이오 분야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생태계 구축	
	첨단 제조	제조공정 혁신 또는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생산 기업	제조 솔루션 제공, 지식재산권 판매 등 사업모델 발굴로 제조업 고도화	
	창조산업	콘텐츠산업 중심 창조산업 관련 7년 이내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	지식재산의 생산, 유통, 활용, 기반 기술개발 등 전반적인 육성	
기업 성장 단계	첫걸음 동행	엔젤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창업기업	초기단계 모험자본 공급을 통한 자금난 해소 및 사업성공률 제고
		재도약	지원이 시급한 경영위기 창업기업과 재창업기업	창업경험이 있는 재창업기업 등의 사업 성공률 제고
	스케일업	오픈이노베이션	대·중견기업과 오픈이노베이션 협업을 진행(완료)하는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통한 유니콘 기업 육성 및 성공적인 시장 안착
		글로벌	현지 법인/합작법인 설립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의망하는 유망 기업	해외시장 진출 통한 유니콘 기업 육성 및 성공적인 시장 안착

주: 창업 후 기간은 창조산업 7년 이내, 첫걸음 동행은 3년 이내, 스케일업은 10년 이내를 적용
출처: 서울특별시(2024a)

□ 운용체계

- 서울 비전 2030 펀드는 중앙 및 지방정부 정책자금과 연기금 및 민간 출자 협력을 통해 5조 원 규모의 재원을 바탕으로 조성
 - 서울 비전 2030 펀드는 서울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사와 일반조합원의 민간 자금, 운용사가 조달한 정책펀드를 기반으로 조성

- 운용사가 조달한 주요 정책펀드는 한국모태펀드,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펀드 등이며, 이와 연계하여 펀드를 공동으로 조성
- 투자 분야별로 시장 활성화 정도, 정책목표와 의지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펀드 조성목표액과 서울시 출자금 비율을 설정 및 조정
 - 2023년의 펀드 조성 비율은 스케일업(28%), 창업지원(20%)과 디지털대 전환(20%)의 순서로 설정하고, 서울시의 출자금은 스케일업(31.4%), 디지털대 전환(17.1%), 창업지원(15.7%)으로 설정
 - 2024년에는 스케일업의 투자 활성화 정도를 고려하여 스케일업 분야의 조성 목표와 시 출자금 비중을 축소

| 표 4-6 | 서울 비전 2030 펀드 출자금 조정

(단위: 억 원)

구분	기존(2023년)			변경(2024년)			
	조성목표액	비율	시 출자금	조성목표액	비율	시 출자금	
합계	50,000	100%	100%	50,000	100%	100%	
업종	디지털대 전환	10,000	20%	17.1%	10,000	20%	17.1%
	바이오	7,500	15%	11.4%	7,500	15%	11.4%
	첨단제조	-	-	-	6,000	12%	17.1%
	창조산업	6,000	12%	10%	10,000	20%	17.1%
성장 단계	첫걸음동행	2,500	5%	14.3%	2,500	5%	10.0%
	스케일업	14,000	28%	31.4%	12,000	24%	24.3%
종료	창업지원	10,000	20%	15.7%	2,000	4%	2.9%

출처: 서울특별시(2024a)

- 서울시 출자 약정액은 2023년 560억 원에서 2024년 810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펀드 분야 재구조화로 펀드별 조성 목표와 출자 계획이 변경
 - 첫걸음동행 펀드에 포함된 뷰티·패션 산업이 창조산업 펀드로 이관되면서 창조산업 펀드 출자액을 증액하고, 첫걸음동행 펀드 출자액을 감액
 - 스케일업 펀드 출자액은 민간시장에서 민간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은 미래산업 지원 재원으로 활용

- 기존의 창업지원 펀드의 일반분야 재원은 새로 신설되는 첨단제조와 확대되는 창조산업 펀드 재원으로 활용

| 표 4-7 | 서울 비전 2030 펀드 출자 약정액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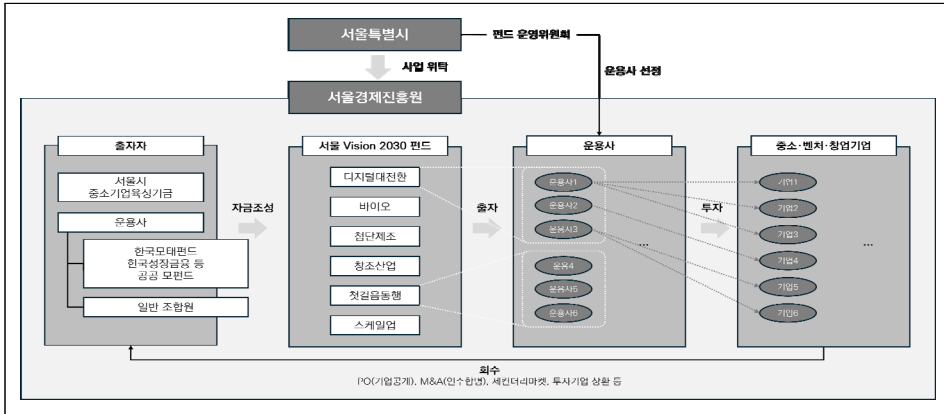
구분	기존(2023년)		변경(2024년)		
	출자 약정액	비율	출자 약정액	비율	
합계	560	100%	810	100%	
업종	디지털대전환	100	17.9%	150	18.5%
	바이오	100	17.9%	100	12.3%
	첨단제조	-	-	150	18.5%
	창조산업	100	17.9%	150	18.5%
성장 단계	첫걸음동행	100	17.9%	엔젤/재도약 각 30	3.7%
	스케일업	100	17.9%	오픈/글로벌 각 100	12.3%
종료	창업지원	60	10.7%	-	-

출처: 서울특별시(2023b, 2024d)

- 펀드의 전문적인 운용을 위하여 펀드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펀드운영위원회를 운영
 - 서울시는 「서울 Vision 2030 펀드 운영위원회 신규 구성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펀드의 전문적인 운용 및 안전장치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
 - 운영위원회는 펀드운영 기본방향 수립, 성과평가, 대행기관의 선정·해지 및 펀드 운용사(GP) 선정에 관한 사항, 신규 펀드 조성에 제언 및 아이디어 발굴 등 펀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와 자문을 담당함
- 「서울 Vision 2030 펀드 운영위원회 구성 개편 계획」에 따라 펀드 운영위원회는 6개 투자 분야, 총 72명 위원으로 구성
 - 서울 Vision 2030 펀드 운영위원회를 조직함으로써 소관부서별로 분산되어 운영 중인 펀드 운영위원회 풀의 통합관리를 도모
 - 정책펀드 출자기관(LP) 소속의 관리자 또는 실무자와 디지털 기술·바이오·첨단제조·문화콘텐츠 등 산업 전문가도 위촉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

- 2023년에 위촉된 펀드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2년이며, 2년의 연장 가능함
- 서울시는 서울 비전 2030 펀드가 정책 목표와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인 운용을 위해 체계적인 운용사 선정 기준을 마련
 - 운용사 선정은 펀드 운용사의 적격성 평가를 위한 1차 서면 심사와 펀드 운용 적격성 평가를 위한 2차 대면심사를 통해 선정됨
 - 1차 심사의 평가위원은 회계사를 포함한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되며, 2차 심사의 평가위원은 시 펀드 운영위원회를 통해 평가가 이루어짐
 - 1차 심사에서는 신청 자격과 펀드 운용계획의 적절성, 운용팀 구성 전문성, 운용사 안전성 등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짐
 - 한국모태펀드, 한국성장금융 등 공공 모펀드 출자 여부와 출자자 확약 비율, 서울시 창업 관련 정책사업 참여 이력, 서울시 주목적투자 초과달성 의지 등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
 - 2차 심사에서는 서울시 Vision 2030 펀드에 초점을 맞추어 펀드 운용 계획, 운용팀(조직) 구성, 펀드 운용사 개요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짐
 - 운용계획은 조합운용 전략 적합성과 정책목적 부합성, 운용프로세스 (투자/회수, 리스크 관리 시스템 등), 조합 결성 안전성 등을 심사
 - 운용팀 구성은 전문성, 경력 및 투자/회수 실적, 경쟁우위(운용전략, 팀워크, 글로벌 역량 등), 안정성(근속기간 등), 규모 적정성을 심사
 - 펀드 운용사 개요에서는 운용사의 강점과 차별적 요소와 재무적 안정성, 수익성 등에 대하여 평가
- 서울 Vision 2030 펀드는 서울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기획과 운영은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운용사 선정, 투자 결정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담당
 - 6개 분야별 펀드 운용기관은 서울시의 펀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선정된 운용사는 투자처를 선정하여 투자를 수행하는 구조를 지님

| 그림 4-1 | 서울 Vision 2030 운용구조



출처: 연구진 작성

□ 투자 결정

- 개별 펀드의 운용사로 선정된 기관은 서울 소재 기업 등의 투자 대상을 발굴하여 해당 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구조임
 - 투자된 자금은 기술개발 및 일반운영자금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며, 펀드는 8년 내외로 장기로 운용해야 함
- 출자 대상은 분야별 조건을 만족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 조합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임
 - 분야별 출자 조건이 있으며, 공통 조건은 서울 소재 기업으로서, 본사나 공장, 연구소, 주사무소, 지점 등이 서울에 소재하여야 한다는 점임

| 표 4-8 | 서울 Vision 2030 펀드 분야별 출자 조건

구분		출자 조건	
업종	디지털 대전환	① 서울 소재 디지털전환 비상장 중소·벤처·창업기업에 시 출자금의 200% 이상 투자 ②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입주(졸업)기업에 시 출자금의 30% 이상 출자	
	바이오	① 서울 소재 비상장 바이오·의료 관련 분야 중소·벤처·창업기업에 시 출자금의 300% 이상 투자 ② 서울시 바이오 관련 보육센터 입주(졸업)기업에 서울시 출자금의 30% 이상 투자	
	첨단 제조	① 서울 소재 비상장 중소·벤처·창업기업 중 첨단제조 또는 첨단제조 서비스 기업에 시 출자금의 300% 이상 투자	
	창조 산업	① 서울 소재 창조산업 관련 창업 7년 이내 비상장 중소·벤처·창업기업 및 프로젝트에 시 출자금의 200% 이상 투자 ②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내 창조산업 입주(졸업)기업에 시 출자금의 30% 이상 투자	
기업 성장 단계	첫걸음 동행	엔젤	① 서울 소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창업기업 중 업력 3년 이내 또는 설립 후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하인 창업기업에 시 출자금 200% 이상 투자 ②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입주(졸업)기업*에 시 출자금의 20% 이상 투자
		재도약	①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서울 소재 비상장 중소·벤처·창업기업에 시 출자금의 200% 이상 투자 가. 투자 직전연도 당시 매출액, 영업이익 중 하나 이상이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한 기업 나. 폐업사업주 또는 폐업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주요 주주였던 자가 재창업한 기업의 대표이사, 주요 주주 또는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기업
	스케일업	오픈이노베이션	① 아래 요건을 만족하면서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서울 소재 비상장 중소·벤처·창업기업에 시 출자액의 200% 이상 투자(기업당 평균 40억원 이상 투자) 가. 대기업 중견기업 등과 NDA, PoC, R&D 등의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진행(또는 완료) 중인 스타트업 나. 국내외 연구기관/대학으로부터 이전/양도 받은 특허기술 보유, 해외 실증 완료 스타트업 등 ②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입주(졸업)기업에 시 출자금의 30% 이상 투자
		글로벌	① 아래 요건을 만족하며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서울 소재 비상장 중소·벤처·창업기업에 시 출자액 200% 이상 투자해야 하며, 기업당 평균 40억원 이상 투자할 것 가. 해외에 현지법인 또는 합작법인을 설립했거나, 예정인 서울 소재 비상장 중소·벤처·창업 기업 나.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거나 제품 및 서비스 등 수출 예정인 기업 ② 서울시 창업지원시설 입주(졸업)기업에 시 출자금의 30% 이상 투자

출처: 서울특별시(2024c)

-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 정책사업 분야에 대해 조성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도록 주목적 투자 비율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서울시 출자금을 기준으로 해당 분야의 기업에 대한 최소 출자액을 정하여 정책 펀드의 목표 달성을 도모
 - 서울시 내 창업지원시설 내 입주기업에도 투자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 내 창업생태계 구축을 유도하고 있음

3) 성과 및 청산 측면

-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출자가 이루어지면서 안정적인 운용과 투자 후 회수 전략을 수립하여 회수된 재원이 재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
 - 투자된 금액이 회수되어 재투자되는 선순환 펀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회수 재원 예측·파악·관리 시스템을 운용사 선정 기준으로 적용
 - 출자금을 회수하여 재출자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IPO(기업공개), M&A(인수합병), 세컨더리마켓, 투자기업 상환 등을 활용
- 운용사에게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투자를 유도하지만, 투자기업의 정보와 투자 실적을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여 투자에 관한 관리를 진행
- 2023년 1조 2,632억 원이 조성되어 목표(1조 640억 원) 대비 118.6%가 달성되었으며, 서울시 중점 육성 분야에 대한 초기기업의 자금을 조달하여 벤처투자 및 창업생태계 성장에 일정 수준 기여하고 있음

2.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사례

1) 조성 측면

□ 배경 및 목적

-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는 전북 여건에 맞는 벤처투자생태계 활성화 및 첨단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에 기존 펀드를 확대하여 조성하였음
 - 세계 정세 변화로 벤처 투자시장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공의 마중물로 관련 민간 자본 조달 촉진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비수도권은 민간 벤처투자생태계가 취약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공공의 투자 마중물이 필요한 상황
-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는 전북 첨단산업 분야 벤처투자생태계 활성화와 전북형 첨단 미래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민선 7기 2,104억 원 규모에서 운용되던 펀드를 지역이 주도적으로 벤처투자 시장 상황 및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1조 원 규모로 확대·조정
- 민선 8기 전반에는 창업·벤처, 지역 모펀드 등에 집중하고, 후반에는 스케일업과 세컨더리 등 투자 생태계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에 집중

| 표 4-9 |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현황

구분	세부 내용
조성목적	전라북도 벤처투자생태계 활성화 및 첨단 미래산업 육성
자금구성	도 출자금 + 모태펀드 계열 + 민간 조합원(LP) + 운용사(GP)
조성규모	1조 원
존속기간	8년 이상
회수방법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투자분야	전북의 산업구조와 기업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6개 분야로 구성 (창업초기(주력산업, 신산업), 스케일업, 2차전지, 레드바이오(특화단지 연계, 도내 전반), 지역AC세컨더리, 지역발전 협력)
비고	전북 벤처투자위원회를 통해 운용사를 선정하고, 리스크에 대응함

출처: 전북특별자치도(2023b, 2024a)를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 추진 근거

-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을 제도적 근거로 하고 있음
 - 전북은 2022년 11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
 - 이전 조례에 따르면, 전북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자금, 시장정비사업 지원 자금, 지역특화산업지원 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벤처·창업 투자 지원 자금 등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었음

- 2022년 11월 11일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용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나누어서 운용할 수 있게 되었음
- 2023년 벤처투자조합·모태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와 도내 창업 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에 사용 가능한 투자 계정이 신설

【표 4-10】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의 법적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기금의 조성) ① 용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 11. 11., 2023. 12. 8., 2024. 5. 31.>

1.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의 전입금
2. 용자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용자금
4. 그 밖에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등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 등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 11. 11., 2024. 5. 31.>

1. 전북특별자치도의 일반회계 및 시·군의 전입금
2. 투자계정 출자금 회수금
3. 투자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에 보조금, 차입금, 예수금 등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자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2024. 5. 3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11. 11.>]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업유치지원실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업무 담당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하며, 업무 담당 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1.>

③ 용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22. 11. 11.>

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 자금
2. 시장정비사업 지원 자금
3. 지역산업 육성·지원
4.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자금
5. 벤처기업 육성자금
6. 삭제 <2022. 11. 11.>

④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신설 2022. 11. 11.>

1. 창업·벤처·중소기업 투자 지원자금
2. 그 밖에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및 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 지원 자금

⑤ 도지사는 제3항 각 호의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⑥ 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1., 2023. 12. 8.>
- ⑦ 도지사는 기금을 융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의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원활한 융자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융자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⑧ 제6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따르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의 용도)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융자계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기금 차입금 및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4. 삭제 <2022. 11. 11.>
5. 융자계정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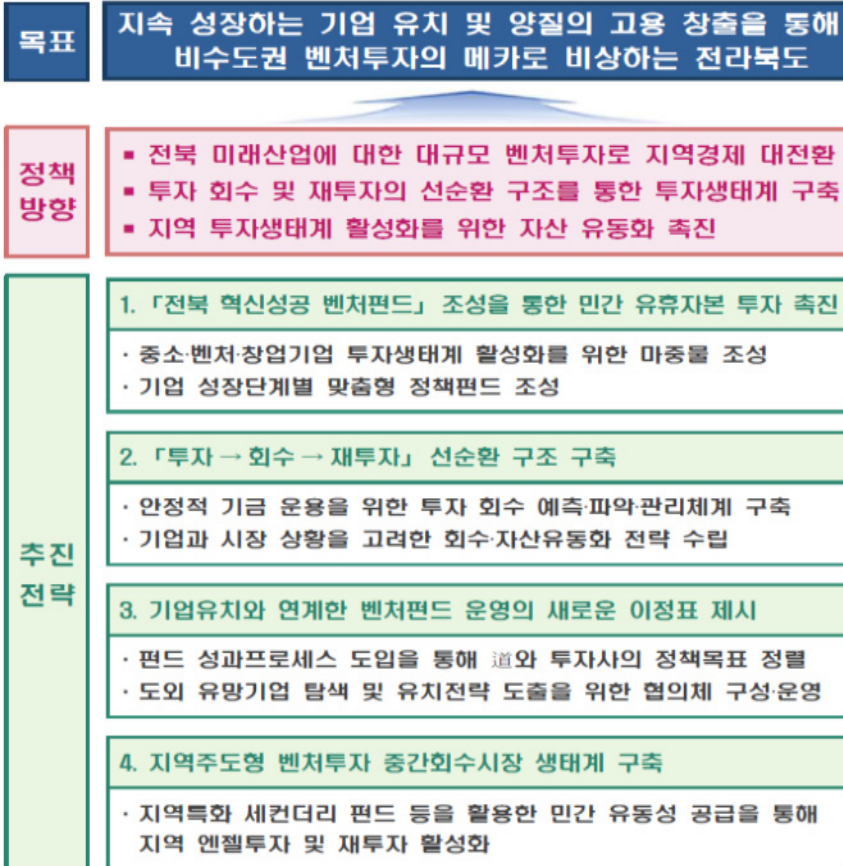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1.>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모태조합·신기술 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도내 소재 사업장을 둔 창업 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3.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4. 기금 차입금 및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5. 투자계정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투자 사업의 지원
-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2. 11. 1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2023년에는 ‘전라북도 출자 펀드 조성 및 투자계정 운용계획’과 ‘전북 혁신성공 처펀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
-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을 위해 전북은 2023년 6월 펀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2월 기본계획을 변경함
 - 신규 펀드의 목표는 ‘전북에 지속 성장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고용 창출을 통한 비수도권 벤처투자의 메카로의 비상’임
 - 이를 위해 전북 미래산업에 대한 대규모 벤처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투자 회수와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며, 지역 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산 유동화를 촉진하는 정책적 방향을 설정함

| 그림 4-2 | 전북 혁신성장 벤처펀드 조성 목표 및 추진전략



출처: 전북특별자치도(2023b)

2) 운용 측면

□ 투자 분야

-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는 지역의 시장구조, 산업정책 방향, 벤처투자 관련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투자 분야를 설정
 - 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기존 펀드를 확대하고, 지역발전 협력 펀드, 지역 모펀드, 세컨더리·유동화 펀드, 스케일업 펀드 등 새로운 펀드 분야 도입

| 표 4-11 |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의 투자 분야

구분	목적	투자 대상	조성규모	비고
지역 모펀드	지역 유희자원 활용으로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전북소재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벤처투자 조합	1,184억 + (도 출자 85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물산업,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엔젤투자자재간접펀드 분야
스케일업	전북 유망 스타트업 집중 육성/예비·아기유니콘 배출	창업 10년 내 전북 소재 미래산업 분야 성장기 중소·벤처기업	1,800억 + (도 출자 175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KDB-선배기업 벤처펀드 (비수도권 뉴딜/혁신성장) 지역 경제 스케일업 분야 (도내 자본지출 투자(계획) 기업)
세컨더리·유동화	위축된 벤처투자 및 중간회수시장 유동성 공급	전북 소재 중보·벤처기업이 기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의 지분	1,090억 + (도 출자 18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세컨더리 펀드 분야 (엔젤투자자 초기투자 구조 인수) LP지분유동화펀드 분야 (전북이 유한책임조합원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지분 인수)
지역발전 협력펀드	지속가능한 전북 특화 신산업 가치 사슬 구축	창업 10년 내 전북 소재 성장기 중소·벤처기업	1,200억 + (도 출자 6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견 모기업(출자)-CVC(운용) (M&A 가능성 높은 (이전)기업) 대중견기업(출자)-VC(운용) 분야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지원)
창업·벤처 지원	벤처투자 사각지대 창업기업 마중물	창업 7년 이내 전북 미래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3,606억 + (도 출자 24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산업 생태계 기반 및 신성장산업 활성화(레드바이오, 의료기기, ICT·SW·데이터, UAM·드론, 방산) 주력산업 대전환(모빌리티, 조선·농건설·탄소, 재생에너지, 농생명 등)
소재부품 장비 (2차전지)	소부장 산업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전북 소재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	1,120억 + (도 출자 100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KDB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2차전지 분야 중소·중견기업) 소재·부품·장비 R&D투자 촉진

출처: 전북특별자치도(2023b, 2024a)를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 2024년에는 출자자와 시장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창업초기와 2차전지, 레드바이오, 스케일업, 지역AC세컨더리, 지역발전협력 등으로 조정
 - 익산시(푸드테크)와 정읍시(바이오)의 간접 출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산업은행, 충남도 등의 2차전지 분야 공동 출자 등 출자자 구성 변화
 -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등 정책 여건과 시장구조 변화가 발생하면서 2024년 창업초기, 2차전지, 레드바이오, 스케일업, 지역AC 세컨더리, 지역발전협력 등 6개의 투자 분야별 투자 대상을 재설정

【표 4-12】 2024년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분야별 투자 대상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창업초기	전북 소재 중소·벤처기업 중 업력 7년 이내 기업(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주력산업	푸드테크 10대 핵심분야와 그린바이오 6대 분야 농식품 경영체
신산업	기후테크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2차전지	전북 소재 2차전지 4대 핵심분야* 중소·벤처기업 * 핵심광물가공, 고부가가치소재, 모듈·셀·팩 제조, 배터리재활용·재사용 등
레드바이오	전북 소재 레드바이오 분야* 중소·벤처기업 * 바이오·인공장기, 바이오신약·시밀러, 의료·바이오진단시스템, 동물용의약품
국가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소재 바이오헬스 전 분야, 백신 관련 혁신기술 및 공정 기술 개발 등 창업·중소·벤처기업 • 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연계, 그린바이오 정읍시 소재 중소·벤처기업
도내 전반	바이오헬스 전 분야, 백신 관련 혁신기술 및 공정 기술개발 등 창업·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	혁신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 중 창업·중소·벤처기업
지역AC 세컨더리	지역 소재 창업기획자 등이 1년 이상 보유한 전북 소재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발행 주식의 인수
지역발전협력	대기업 CVC에 해당하는 운용사가 전략적 투자 관점에서 모기업의 가치 사슬로 M&A 가능성이 높고,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에 용이한 전북 소재 중소·벤처기업

출처: 전북특별자치도(2024b)

| 표 4-13 |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펀드 전라북도 조성 계획

(단위: 억 원)

구분	규모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100,000	606	2,104	2,130	2,610	2,550
창업·벤처 펀드	3,606	606	120	750	1430	700
소재·부품·장비 펀드	1,120	-	-	500	-	620
지역발전 협력 펀드	1,200	-	-	400	400	400
지역 모펀드	1,184	-	1184	-	-	-
세컨더리·유동화 펀드	1,090	-	-	80	480	530
스케일업 펀드	1,800	-	800	400	300	300

자료: 전북특별자치도(2023b)

| 표 4-14 |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펀드 전라북도 출자 약정액

(단위: 억 원)

구분	약정액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840	20	200	210	100	210
창업·벤처 펀드	240	20	20	80	80	40
소재·부품·장비 펀드	100	-	-	50	-	50
지역발전 협력 펀드	60	-	-	20	20	20
지역 모펀드	85	-	85	-	-	-
세컨더리·유동화 펀드	180	-	-	30	70	80
스케일업 펀드	175	-	95	30	30	20

출처: 전북특별자치도(2024a)

□ 운용 체계

-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의 조성 목표는 1조 원이며, 출자자는 정책출자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민간투자자로 구성됨
 -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기본계획상의 목표액은 국비 4641억 원, 도비 840억 원, 기타 4519억 원 등 1조 원으로 구성
 - 전북자치도는 전북의 일반회계 및 시·군의 전입금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투자 계정을 활용하여 펀드에 출자

| 그림 4-3 |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출자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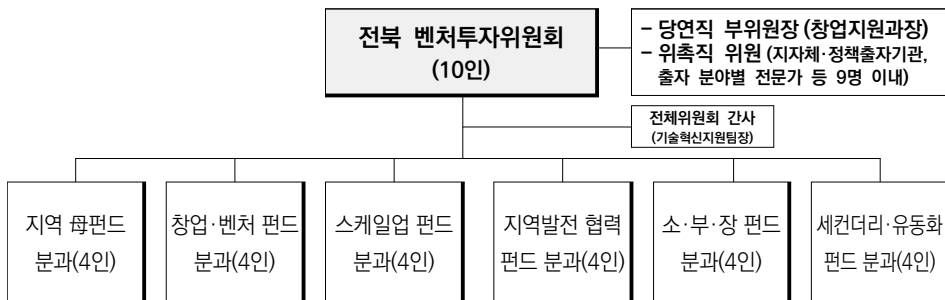


출처: 전북특별자치도(2024a)

- 전북 혁신성장 벤처펀드의 추진체계는 총괄부서(창업지원과)와 사업부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벤처투자위원회, 펀드 운용사로 구성
 - 총괄부서는 펀드 수요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기금운용계획 수립, 정부·정책 기관·민간 협력사업 기획, 운용사 선정 및 투자조합 운영(규약 및 의안 검토), 합의를 기구 운영, 출자금 편성, 성과평가 및 리스크관리 담당
 - 사업부서의 경우에는 펀드 관련 출자수요 분석, 기금전출금 편성, 조성계획 수립의 업무를 담당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을 심의 및 의결, 출자재원 배분, 예치금 관리 등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 기능을 담당
 - 벤처투자위원회는 펀드의 방향성에 대해 자문하고, 운용사 선정 및 심사 등, 성과평가 등의 심의와 자문 등 펀드의 운용 관련 심의·자문 역할 담당
 - 펀드 운용사(민간 벤처캐피탈)는 펀드의 조성과 운용, 관리, 청산 등 펀드의 운용 업무를 담당하며, 소관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혁신기업 발굴 및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함
- 총괄부서와 벤처투자위원회 등은 펀드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고 심의하는데, 이때 지역경제 공헌도를 평가하여 보상을 제공함. 그러나 투자 후 1년 이내 타 시도로 이전하거나 출자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도덕적 해이에 대응하기 위해 페널티도 부여됨
- 펀드 운용의 전문성 확보와 안전장치 측면에서 벤처투자위원회는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담당하고, 분야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을 차등화

- 창업지원과장인 당연직 1명과 지자체 및 정책출자기관과 출자 분야별 전문가 등 위촉직 9명 이내 등 10명 이내로 구성
- 위원회는 출자사업 공고(안)심의, 운용사 선정 심의, 운용사 성과 평가 등 의안별로 다르게 운영되며, 의안 성격에 따라 위촉직 의원 구성이 달라짐
- 출자사업 공고(안) 심의는 지자체 및 정책출자기관 실무급 3~8명, 출자 분야별 전문가로서 해당 분과 간사가 참여하며, 운용사 선정 심의에는 지자체 및 정책출자기관 실무급 또는 관리자급 5~7명, 출자 분야별 전문가로서 분과 위원이 2~4명 참여함
- 운용사 성과 평가에서는 지자체 및 정책출자기관 관리자급 3명과 출자 분야별 전문가로서 분과별 간사 1명씩 6명이 참여함

| 그림 4-4 | 전북 벤처투자위원회 구성도



출처: 전북특별자치도(2024a)

- 운용사의 선정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전문성과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
 - 모태펀드 계열 공모에 선정된 운용사를 우대하며, 정책목표 달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선정된 운용사는 지역 LP 출자금의 2배수 이상을 지역 소재 기업에 투자하고, 약정 총액의 3%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출자해야 함
 - 1차 평가는 운용사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총괄부서가 평가하는 서면 평가로 이루어지며, 2차 평가는 펀드 운용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벤처 투자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발표평가로 진행

- 1차 평가에서는 기초 적격여부를 평가하고, 운용계획의 적절성(투자전략 및 계획, 전북도 산업 연계 전략 등), 운용팀 구성 전문성(투자 수익률, 운용인력 구성 및 책임운용 여부, 전북 투자 성과 등), 운용사 안정성(재무 건전성 및 수익성, 결성능력 등)을 평가
- 2차 발표평가에서는 운용계획(투자조합 운용 전략의 적합성, 펀드 조성 정책 목적 부합 여부, 주목적 투자분야 이행을 위한 구체성·적정성·실효성, 투자 및 회수와 리스크 관리 등의 운용 프로세스, 조합결성 가능성 및 출자자 모집계획의 타당성 등), 운용팀 구성(금융투자 및 산업 분야 전문성, 경력 및 투자·회수 실적, 운용팀의 안정성, 운용 규모의 적정성 등), 운용사 개요(운용사 강점, 차별적 요소, 인센티브 제도, 재무적 안정성, 수익성 등)을 평가함

- 펀드의 운용 기간은 기본 8년에 투자기간은 4년으로 설정하였으며,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기존 펀드와 공동 조성을 유도하고 있음
 - 필요한 경우에는 펀드의 운용 기간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나 최소 5년 이상의 운용이 요구됨
 -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국모태펀드, 한국성장금융 및 공공기관 출자자 등과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리스크 분산 및 손실충당금 감소 유도

□ 투자 결정

- 정책 목표 달성 측면에서 전북 소재 주목적 투자 대상 기업에 도 출자금의 최소 200% 이상 투자가 요구되며, 운용사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과 적정 투자 여부에 대한 관리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음
 - 구체적인 투자 대상과 방법은 운용사별로 구성된 자체적인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자율성을 제공
 - 운용사별 자체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시 조합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책임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 적정 투자 여부 등에 대하여 '펀드 전문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도록 수단을 마련할 계획임

- 투자금은 기술개발, 설비구축 및 일반운영자금 등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업무부동산 취득, 채무상환,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와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사용이 제한됨

3) 성과 및 청산

- 운용사는 납입 출자금을 4년 간 나누어 직접 투자한 뒤 최소 4년 회수가 이루어지며, 분할납입 원칙이나 투자조합 결성 여건에 따라 수시납입을 허용
- 운용사에 대하여 성과관리 프로세스 기준과 함께 지역경제 공헌도에 대한 보상 체계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패널티 기준을 동시에 마련
 - 출자 펀드의 운용 성과, 지역투자 실적, 벤처투자 활성화 행사 참여 등 지역경제 공헌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보상 체계를 구축

【표 4-15】 운용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준

구분		인센티브 기준 및 부여 방식
인센티브	출자사업 공모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도 출자 펀드, 타 시도 비수도권 펀드 운용 경험 보유 운용사 • 도내 기업을 TIPS 프로그램에 추천하고 선정시킨 운용사 • 도내 지역기업 투자 실적이 있는 운용사 •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 관련 지역 행사 참여도가 높은 운용사
	선정 운용사 출자금 추가 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출자 펀드 운용 성과, 도내 투자 실적, 기업 스케일업 공헌도 등 정량/정성 분석을 기반으로 벤처투자위원회가 평가한 우수 운용사 • 약정 출자금 중 도 지분을 가산해 매칭
	기업 유치 성공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외 유망기업의 본사, 주원사업소, 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운용사의 노력과 도내 자본적지출(CAPEX) 규모에 따라 성공보수 차등 제공
	지역 고용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기업 중 투자시점 이후 고용 창출하거나, 지역 소재 청년이 취업에 성공한 경우 추가 성과보수 지급
패널티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기업 투자 후 1년 내 타 시도로 본점, 연구소 및 주사무소(공장) 이전 • 도내로 이전했으나 실제 영업활동이 없는 기업에 투자, 출자조건 미준수 등

주: TIPS 프로그램(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은 민간투자사를 통해 우수 기술 아이템을 가진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민간과 정부가 투자, 지원하는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
출처: 전북특별자치도(2023b)

- 전북에서 출자하여 투자 종료 후 회수 중인 벤처펀드의 수익률은 1.76배로 투자 시점 대비 직접고용이 714명 증가하였고, 매출이 4590억 원 증대
- 2022~2026년까지 전북에 벤처기업 100개사 육성, 매출액 성장 4,000억 원, 일자리 창출 840명과 8,400억 원의 유동성 증가가 기대되고 있음
 - 전북을 포함한 펀드 운용 전체 목표는 벤처기업 500개 사 육성, 매출액 성장 2조 원, 일자리 창출 4,200명임
 - 2018~2022년 기존 전북 펀드를 통한 276억 원의 벤처투자로 1,604억 원의 추가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2026까지 도내 기업에 8,410억 원 유동성 추가로 스케일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3. 런던 그린 펀드(London Green Fund) 조성 사례

1) 조성 측면

□ 배경 및 목적

- 런던 그린펀드는 런던의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2025년까지 선도적인 저탄소 수도 중 하나이자 탄소 금융의 글로벌 리더로 만들기 위해 ERDF(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의 지원을 받아 시작
 - 런던 그린 펀드는 유럽 투자 은행(EIB)과 유럽개발은행협의회(CEB)의 협력 아래 유럽 집행위원회가 유럽 도시지역 내 지속 가능한 투자와 성장, 일자리를 촉진하기 위한 JESSICA(Joint European Support for Sustainable Investment in City Area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
 - 런던 그린펀드는 투자 리스크와 불확실성으로 민간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자금 확보가 힘든 탄소중립 분야에 대하여 공공의 재정을 마중물로 투자 위험을 줄이고 투자 가능성을 입증하여 시장 투자 촉진을 도모하는 펀드로 볼 수 있음

| 표 4-16 | 런던 그린 펀드의 조성 현황(2015년 기준)

구분	세부 내용
조성목적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런던 조성
자금구성	ERDP + LWARB + LDA(이후 GLA) + GP + LP
조성규모	479.7m 유로
존속기간	FEF, LEEF: 2011~2021년 GSHF: 2013~2043년
회수방법	이익 배분, 대출 상환 등
투자분야	에너지 효율, 폐기물 등
비고	시장을 세 가지로 분류한 후, 각 특성에 맞게 금융상품 디자인

출처: fi-compass(2015) 내용을 연구진이 번역

□ 추진 근거

- 런던 그린 펀드는 광역 런던(Greater London)의 법정 공간 개발 전략으로 2004년 수립된 런던 계획(London Plan)을 기반으로 추진
 - 런던 계획은 런던의 미래 발전을 위한 통합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틀을 설정하는 전략적 공간 계획으로, 런던 전체의 맥락을 설정하여 개별 자치구의 지역 계획 정책의 방향성을 제공함
- 2008년 런던 계획에 런던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모범도시로 만들고, 잘 설계된 녹색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추가
 -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문제를 다루고, 런던의 성장이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을 포함
 - 에너지 사용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폐기물 감소 및 처리, 소음 공해 감소, 공기 질 개선, 생물 다양성 촉진 등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고, 자원의 더 나은 사용과 환경 개선을 위해 공간적 프레임 워크를 제공

2) 운용 측면

□ 투자 분야

- 런던 그린 펀드는 폐기물 관리, 에너지 분산, 에너지 효율에 중점을 두어, 폐기물과 에너지 효율, 친환경 사회 주택 투자를 목표로 하는 세 가지 도시 개발 펀드(Urban Development Fund, UDF)로 구성되어 있음
 - 초기에는 FEF와 LEEF를 위한 UDF를 구상했으나, 시장 테스트를 통해 GSHF를 신설하며 펀드의 범위를 확장함
 - Foresight Environmental Fund(FEF)는 폐기물 에너지 시설, 재사용(재활용) 시설, 화석 연료 대체 시설 등의 건립과 확장 등을 위한 투자를 제공하는 펀드로, 2010년 승인되어 2011년 3월에 출범
 - London Energy Efficiency Fund(LEEF)는 민간·공공건물 개보수 프로젝트와 에너지 분산 계획 등에 채무 금융을 제공하며, 2011년 9월 설립
 - Greener Social Housing Fund(GSHF)는 주로 사회 주택의 개보수 작업을 위한 대출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펀드로 2013년 3월 출범

| 표 4-17 | 런던 그린 펀드의 투자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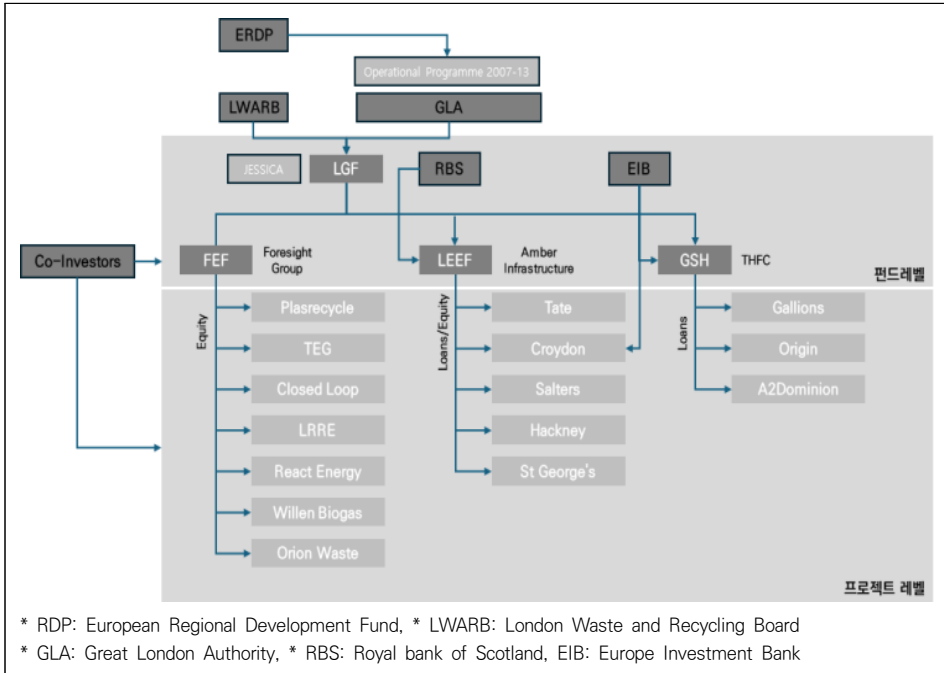
UDF	FEF	LEEF	GSHF
설립 시기	2011년 3월	2011년 8월	2013년 3월
초기 규모	£38m	£50m	£12m
운용사	Foresight Group	Amber Infrastructure	The Housing Finance Corporation
목표	폐기물 재활용 시설의 건설 및 확장	부동산의 에너지 효율 증대	공공주택 개조
지원형식	투자	채무	대출
투자분야	폐기물 에너지 시설, 재사용 및 재활용 시설, 화석 연료 대체 시설 등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건물 조성, 분산된 에너지 계획, 에너지 배포 시스템, 열병합 발전 및 지역 에너지 네트워크 개조 등	친환경 사회 주택 조성

출처: FMDV(2014) 내용을 연구진이 번역

□ 운용 체계

- 런던 펀드는 각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UDF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형태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런던 그린 펀드는 투자위원회에서 운영 업무를 담당하지만, 유럽 투자 은행(EIB)이 대신 관리하는 구조를 지님
 - 위원회는 the Greater London Authority(GLA), the Environmental Agency, the London Waste and Recycling Board(LWARB)의 대표자들 7인으로 구성되며, 분기별 회의를 통해 펀드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
 - 초기에 EIB는 LGF의 초기 자본과 투자로 발생하는 수익과 이자를 관리하고, UDF를 설립하며, 운용사를 선정함
 - EIB, GLA, LWARB의 대표가 참여하는 자문 위원회는 각 UDF는 거래 흐름을 모니터링하며, 적격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검토함. 이를 위해 각 UDF 펀드 매니저는 EIB에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EIB는 이를 투자 위원회와 GLA, LWARB에 보고함
- 각각의 도시개발 펀드는 고유의 특성에 따라 펀드의 운용사가 다르며, 성격에 따라 제공하는 금융 종류도 차이를 나타냄
 - FEF는 Foresight Group LLP가, LEEF는 Amber Green Consortium이, GSHF는 Housing Finance Corporation Limited가 운용함
 - Foresight Group은 영국의 자산, 인프라, 환경 투자회사이며, Amber Infrastructure는 국제 투자관리 콘소시엄, The Housing Finance Corporation은 사회주택 관리를 위한 비영리기관임

| 그림 4-5 | 런던 그린 펀드 운용 체계



출처: GLA(2014)(fi-compass(2015)에서 재인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재작성

□ 투자 결정

- 런던 그린 펀드에 포함된 각 UDF 펀드는 전문 펀드 매니저가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투자 위원회가 합의한 투자 정책에 따라 투자 대상을 결정함
 - FEF는 폐기물과 재활용, 재생 에너지를 생성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LEEF는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과 공공지원 민간 등 다양한 대상에게 열려 있으며, GSHF는 등록된 사회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 UDF별로 금융 상품이 다른 만큼 상품의 조건 또한 UDF별로 다르게 적용
 - FEF는 일반적으로 펀드의 10% 내로 주식을 제공하지만, 자문 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시 15%까지 가능함
 - LEEF는 최대 12년의 채무를 제공하며, 최소 100만 파운드에서 최대 2000만 파운드까지 가능함. 상환은 거치식으로 이자만 상환하고 나중에 원금을 상환

- 하는 방식이나 원리금을 초기에 모두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또한 프로젝트에 따라 메자닌 금융과 주식으로의 투자도 가능함
- GSHF는 사회 주택 제공자에게 30년 대출을 제공함
 - 관리 수수료도 펀드의 성격에 따라 설정되는데, 주식 펀드인 FEF는 연간 관리 수수료와 순이익의 일부를 성과 인센티브로 하며, 채무 펀드인 LEEF는 연간 관리 수수료와 환경 목표 달성에 연계된 성과 인센티브로, GSHF는 비영리 사업으로 성과 인센티브가 없음
 - LGF는 기술 지원, 조인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는 지원하지 않지만, 펀드 매니저가 UDF 산하 프로젝트에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제공하며, European Local Energy Assistance(ELENA)를 통해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음

3) 성과 및 청산

- 런던 그린펀드를 통해 2016년까지 18개 프로젝트에 총 1억 200만 파운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고, 이산화탄소 및 폐기물 매립 감소 등의 정책 목표 달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LGF는 15개 프로젝트에 약 1억 1천 730만 유로를 투자했으며, 이 프로젝트들의 총 가치는 약 8억 유로로 추정됨
 - 2014년 9월에는 2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214963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며, 330980톤의 폐기물 매립 감소를 예상
 - LEEF는 11개의 탄소 절감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9개 자치구 내 80개 건물에 자본을 투자함
- UDF별 시장구조와 운용방식 차이 등을 고려하여 투자금의 회수 방법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 FEF는 10년 기간 내에 프로젝트에서 엑시트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그 시점을 프로젝트 별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었음. 2017년 7월 EIB는 전체 지분을 GLA에 이양했음. FEF를 위한 파트너십은 2021년 3월 3일에 종료되었으며, 2022년 12월 12일에 청산됨

- LEEF를 운용한 Amber는 2015년 말까지 초기 자본을 모두 투자했으며, 2018년 8월까지 반환된 자금을 재투자하였음. 이후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중단하였고, 2021년까지 자금을 관리했음. LEEF는 이후 MEEF (The Mayor of London's Energy Efficiency Fund)로 계승됨
- GSHP는 장기 대출로, 최종 상환일은 2043년이며 모든 대출은 GLA로 직접 반환됨

제3절 펀드 운영 관련 시사점 도출

1. 조성 측면의 시사점 도출

□ 제도적 근거 마련 및 계획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며,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 마련이 선행될 필요
 - 서울과 전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각 지역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을 근거로 각각의 펀드를 조성
 - 전북의 경우 출자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일부를 펀드 형태로 운용하기 위해 계정 분리 및 용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음
 - 현재로서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는 벤처투자 분야와 달리 제도적인 근거가 부재하므로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지역 주도 펀드를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펀드의 조성과 운용, 청산 전 단계에 걸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계획 또는 로드맵이 필요
 - 정책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해서 변경이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관련 계획 또는 로드맵이 필요
 - 전북은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에 앞서 펀드 조성과 관련한 내용과 체계적인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운용을 도모
 - 계획에는 추진근거 및 필요성, 해당 펀드 조성 목표와 추진 전략, 출자 분야별 세부사항, 운용계획, 연차별 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

□ 행정의 전문성 강화 및 인력 확보

-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펀드는 기획과 운영 전반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행정의 전문성 강화 및 인력 확보가 필요
 - 정책펀드의 운용은 운용사에서 담당하지만, 제도 개선, 정책목표 수립, 출자 구조와 운용체계 등 전반적인 기획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

- 특히, 운용사가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정책목표와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기획과 관리가 필요
- 정부의 정책 펀드는 부처별로 전문적인 운용을 위한 별도의 운용기관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2. 운용 측면의 시사점 도출

□ 지역의 정책목표와 시장구조를 반영한 출자구조 설정

- 펀드의 정책적 목표와 수익성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시장구조, 시군별 수요를 반영하여 투자 분야와 출자 비중 선정 필요
 - 서울과 전북은 펀드의 목표, 지역의 산업구조 및 정책 방향, 당시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투자 분야를 세분화하고 출자 비중을 설계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비중은 목적투자 및 운용 성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분야별 시장 여건과 전망을 고려하여 출자 규모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광역에서는 시군의 출자 수요를 반영하되 전체적인 수익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투자 대상과 구체적인 출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문적인 운용을 위한 운용체계 및 운용사 선정 프로세스 마련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가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운용을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
 - 서울과 전북은 펀드의 체계적인 운용과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전문성 있는 운용사 선정, 합의제 기구를 운영
 - 출자자,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행정), 투자위원회 등 합의체, 펀드 운용사(자체 투자심사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추진체계 구성 및 역할 분담
- 운용사 선정은 펀드의 전문적인 운용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운용사의 역량과 운용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필요
 - 서울과 전북은 신청 자격, 펀드 운용계획, 운용팀 구성 전문성, 운용사 재무 안정성 등에 대한 기준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심사가 이루어짐

- 운용사 역량은 조직과 인력, 투자실적 및 성과, 재무 안정성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주요 정책펀드 운용 경험에 대해 가점이 부과
- 펀드 운용계획은 운용 전략의 적합성과 정책 목적 부합성, 투자분야 이행 실효성, 투자 및 회수, 리스크 관리 등 운용 프로세스를 평가

□ 전문성에 기반한 펀드 운영을 위한 합의제 기구 운영

- 전문성이 요구되는 펀드 운영에 대해 행정이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가 필요
 - 서울은 펀드 운영에 관한 심의·자문기구로 6개 투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펀드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은 기금운용심의회(기금운용 계획 심의), 벤처투자위원회(펀드 운용 관련 심의·자문)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펀드 운용사 소관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음
 - 합의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펀드운영 업무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특혜 등 부적절한 운용을 방지하는 안정장치로서의 기능을 담당
- 합의제 조직은 투자 분야별로 금융, 분야, 지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합의제 기구 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
 - 런던 그린 펀드는 펀드 성격에 맞는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위원회를 통해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투자 유형에 따른 수익성과 공익성 정도를 고려하여 합의제의 구성을 차등화 하고,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제도적 근거에 의해 법정 합의제로 운영할 경우 경직된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 합의제의 위상을 결정

3. 성과 및 청산 측면의 시사점 도출

□ 운용사 성과에 관한 보상과 부적절한 투자에 관한 패널티 기준 마련

-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운용사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운용을 위한 자율성과 부여하되, 명확한 성과 보상 체계와 관리 방안이 동시에 필요함

- 전북의 경우 운용사의 전문적인 운용과 성과에 따라 출자사업 공모, 출자금 추가 매칭, 성과 보수(기업 유치, 고용 창출) 등의 인센티브 체계 마련
 - 런던 그린펀드에서는 세부 펀드의 성격에 따라서 수익 창출, 환경 목표 달성, 비영리 사업 성과 등의 차별화된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
- 동시에 경제질서를 교란하거나 부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 패널티를 부과하여 적절히 운용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
- 전북에서는 도내 기업에 투자된 이후 1년 내 타 시도로 이전하거나, 실제 영업활동이 없는 기업에 투자된 경우 등에 대해 패널티를 적용

□ 리스크 관리 측면 투자금 회수 측면

-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 펀드 역시 공공 재정을 마중물로 하는 투자 방식의 정책금융 수단으로 투자금 회수에 관한 방안 마련이 필요
- 서울은 출자금이 회수되어 재투자되도록 IPO, M&A 등의 수단을 마련하고 운용사 선정 시 회수 재원 예측·파악·관리시스템을 평가 기준에 포함
 - 전북은 펀드의 적정 투자 여부 관리를 위한 펀드 전문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용 실적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 더불어 투자에 관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험 분산 체계 마련, 프로젝트별 수익성 분석 및 예측, 인허가 등 행정지원 등이 요구됨
- 정책 의지, 수익성, 시장구조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위험이 적절히 분산될 수 있도록 출자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프로젝트의 분산 구조 마련
 - 행정적 측면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선정 시에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관련 사전 준비 등의 검토 필요

제 5 장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 방안

제1절 자체펀드 조성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제2절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 전략

제3절 중앙정부와 경북의 제도개선 방안

05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 방안

제1절 자체펀드 조성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1. 자체펀드 조성의 필요성

1) '전략의 시대' 지역투자의 패러다임 전환

□ 지역정책의 트렌드 변화와 추진주체의 다변화

- 지역발전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영역은 확대되고 추진 주체가 다변화면서 분권형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
 - 지역정책의 메가트렌드는 지역경제 회복과 양극화 및 격차 해소가 최우선이고, 균등한 삶의 질 확보, 자치 분권과 지역 주도성의 강화, 상생발전과 연계협력, 친환경·건강 등 지속가능성의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음(차미숙 외, 2022)
 - 지역정책은 획일주의를 지양하고,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며,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추진주체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음
- 지역발전에서 '균형'의 영역은 점점 더 넓어지고, '균형'의 의미 속에는 '불균형 해소'뿐만 아니라 '삶의 질 보장'도 함께 포함되는 시대가 도래
 - 지역정책의 추진방식은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전환되고,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지역 정책을 다층적으로 추진해야 통합적이고 개성 있는 발전을 추구할 수 있어 지역경쟁력 강화 도모 가능
 - 지역의 발전에 있어 국가가 주도하는 획일적인 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표 5-1 |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주체 다변화

구분	내용
정책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병행, 접목 지방분권(지방의 자율성), 지역균형발전(주민 복리 향상) 가치 동시 달성
정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분권에 의한 균형발전 실현
정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방식이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전환 지자체 주도 정책 추진, 중앙정부는 보충성에 원리에 의한 사후적 지원 제공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발적 발전에 의한 지역의 특성화 및 개성있는 발전사업 추진 지방이 주도하는 정책, 중앙-지방-지역주민 거버넌스 형성 * 발전지체 및 저발전 지역에 대한 중앙 및 광역의 재정 및 제도지원

출처: 이원섭 외(2018) 수정한 김현호 외(2022)

□ 지역이 주도하는 펀드 방식의 민관협력 프로젝트 추진 수단 필요

- 정부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도입한 배경은 주요 이유는 재정사업으로 소규모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단발적·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민간자금을 끌어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함으로써 규모가 충분한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임(박진경·양원탁, 2024)
 -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인프라 공급 사업에 한정된 재정을 지속해서 투입하기는 한계
- 이제는 시·도 단위에서도 지방재정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 재정사업으로 소규모 인프라를 건립하는 경우 완공 자체가 어려워 흉물스럽게 남아있거나, 완공 후에도 지속된 적자로 인하여 시설 운영을 위한 지방비의 과도한 투입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건립비가 100억 원 이상인 공공시설은 전국에 872개로 97.6%를 차지하며, 이 중 건축비 500억 이상인 공공시설은 112개에 달함(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
 - 경북의 공공시설은 88개로 모두 건축비가 100억 이상 소요되었고, 2020년 기준 시설당 관리 인력은 14.5명으로 8.71억 원의 적자 발생하고 있으며, 순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은 3개에 불과

- 경북의 공공시설은 유형별로는 복지시설은 시설당 20.9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가장 적자 폭이 크며, 지역별로는 포항시(20.3억 원, 안동시(12.0억 원), 경산시(10.8억 원), 봉화군(10.4억 원)의 적자 규모가 큼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방식은 인프라시설을 공급하는 데 부족한 재원을 민간투자자 채워서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통하여 정부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김도일 외, 2021: p. 62)
 - 펀드 형태를 통해 지역실정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수익은 회수되어 지역에 재분배되는 구조 마련
 - 시도의 입장에서 지방재정을 적게 투입하면서도 부족한 재원은 민간자본으로 활용하여 인프라 갭(Infra Gap)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투자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펀드 방식의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투자에서도 민간투자 중심으로 전환 필요
 -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방이 주도하여 지역투자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
- 시·도가 지방비를 재정자금으로 단발적이고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민간자금을 통한 레버리지를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를 지원할 필요도 있음
 - 비수도권 지역에서 민간자금의 레버리지를 바탕으로 대규모·집중화된 지역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반 조성 및 지원이 필요
- 민간 중심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민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패러다임도 발맞추어 변화할 필요
 - 그동안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민간투자법」 하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99년 도입되었던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MRG) 제도가 '09년에 전면 폐지된 이후 민간투자사업이 위축되면서 '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음(박진경·양원탁, 2024)

-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민간투자 시장의 침체 상황에서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2)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도와 시너지 효과 창출

□ 공익성 기반 수익성에 초점을 둔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도입

-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한 지역투자가 단발적·소규모 투자 위주³⁾로 이루어져 지역활성화 효과가 미약했다는 진단하에 비수도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최초의 정책펀드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도입(관계부처 합동, 2023)
 - 그간 재정의존도 높은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레버리지를 활용함으로써 지역·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할 목적으로 도입
 - 혁신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자와 자펀드 운용사 육성을 목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한국모태펀드와는 목적과 운용구조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금융(산업은행) 모펀드 자금 3,000억 원 조성
 - '24년 4월 현재 충북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과 경북 구미 국기산단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이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됨
-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도는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단계에 거쳐 사업성을 검토하되 개별 추진 주체가 각자의 사업 수익성을 각각 검토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음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관계부처 합동, 2023.7.12)」상 발굴하는 프로젝트는 수익성과 공익성을 모두 추구하는 사업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고,

3) 연 1조 원씩 투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간 형평성을 중시하여 107개 기초자치단체에 분산되어 배분되며, 2023년 기준 총 558개 사업에 사업당 평균 18억 원씩 배분(관계부처 합동, 2023.7)

- 프로젝트 규모에 제한은 없으나 프로젝트 신청 가능 수에도 제한이 없어 전국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가 선정되는 구조(박진경·양원탁, 2024)
- 따라서 경상북도에서 발굴된 프로젝트가 반드시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고, 금융 관점에서 수익성만 보장된다면 한 지역에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음

|그림 5-1|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다층적 사업성 검증 단계



□ 지역의 특수성과 공공성에 기반하여 정부의 지역활성화 펀드 제도 보완 필요

-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수익형의 대규모 융복합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역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도모한다면, 경북의 자체 펀드는 지역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보다 강조하여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보완 가능
 - 정부는 신속하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유인이 크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 지역의 여건이나 특수성을 모두 받아안기에는 한계가 있음

- 지역 실정에 부합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융복합 프로젝트에 함께 투자하고, 수익은 회수되어 출자자에게 분배되거나 지역사회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수익성 기반 공익성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와 시너지를 창출하고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혜시비를 방지

3) 지역투자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지역소멸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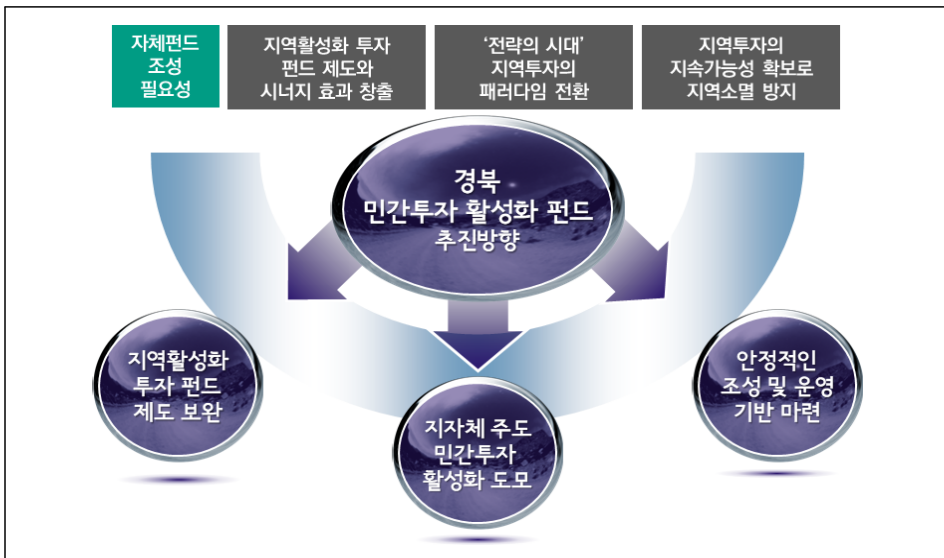
□ 지역 차원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융복합 프로젝트 추진 필요

-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모펀드 3,000억 원 중 1/3이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으로 출자되었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89곳의 인구감소지역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금융 논리’로만 접근할 경우 비수도권의 대규모 사업 위주로 추진되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밀려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나아가 일부 지역에서는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프로젝트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는 충북 단양군 관광복합단지 조성 사업과 경북 구미시 노후산단 기숙사 건립사업이 선정되어 경북의 경우 지역 내에서 비교적 투자 여건이 양호한 구미시가 선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정되어 있는 89곳의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경북의 경우에는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의 15곳이 지정되어 있음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가 국가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경북 자체 펀드는 지역 차원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지역투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함

□ 비수도권 지역별 시장구조 및 투자여건의 특수성 반영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중물로 시도가 비수도권 특성에 따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투자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지방소멸 방지 필요
 - 2024년 현재 고금리와 건설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비수도권은 수도권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임
-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비수도권 프로젝트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지역별로 시장구조와 투자 여건은 차이를 보이므로 이를 고려한 지역 단위의 펀드 설계가 필요함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한국성장금융에서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 PF 금리가 시중금리와 큰 차이가 없고, 지자체의 출자 비중이 1~3% 내외 수준이어서 비수도권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민간 입장에서 큰 이점이 없는 상황이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박진경·양원탁, 2024)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는 경북 내부의 시장구조와 민간투자 관련 여건을 반영하여 PF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그림 5-2|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 필요성 및 추진방향



2.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추진 방향

1)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 지역의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대규모 지역개발 프로젝트 추진

- 지역투자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지역활성화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여건은 지속해서 악화
 - 지역투자는 2018년 239조 원에서 2022년 330조 원으로 증가했고, '22년부터 연 1조 규모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소멸 위기는 심화하고 있으며, 지역의 발전 여건은 지속해서 악화(관계부처합동, 2023)
 - 국고보조사업이나 지방재정사업은 공통으로 투자재원의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정부 재원에만 의존하여 추진되는 지역개발 사업은 비용의 효율성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큼
 - 더욱이, 한정된 예산에서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이나 지방재정사업은 소규모 투자사업 위주여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창출하기에 한계가 발생
- 향후 지역개발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의 발전 전략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수도권으로의 집중 심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단위의 지역개발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함
 - 급격한 기술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며, 지역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단위의 개발사업 추진이 필요
- 단순히 프로젝트 규모를 키우기보다 경상북도가 지닌 강점과 여건을 바탕으로 지역의 발전 전략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적인 마중물로 펀드 제도를 활용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 경상북도가 지닌 자원을 바탕으로 민간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레버리지를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충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되, 인프라 부족 및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인프라 갭(Infrastructure Gap)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펀드를 활용

□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민관협력 활성화 도모

- 민관협력은 정부와 민간, 나아가 주민이 협력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협치의 방식을 의미하며, 90년대부터 영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도입
 - 90년대 다수의 국가에서 재정적자나 공공부채가 발생하면서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형태의 재화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공급할 때 화폐적 투자가치 또는 적격성(Value for Money, VFM)을 극대화할 수 있음
- 민관협력의 관점에서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는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지역개발 투자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 기획재정부는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하여 '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정 이후 지속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민간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경북의 자체펀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민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파트너십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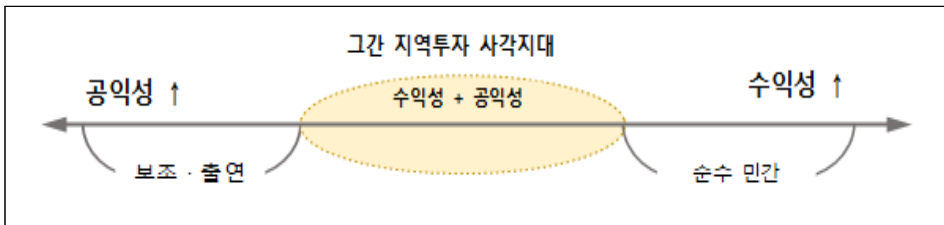
- PPP(Public-Private Partnerships)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속에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 가능성을 제공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은 파트너로써 지역 활성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면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음
 -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펀드 설계가 가능해지고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창출하게 됨
 - 경상북도에서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 맞춤형 펀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필요한 대형프로젝트를 설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경상북도는 민간과 협업하여 펀드 조성과 이를 바탕으로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성을 공유하고 습득할 수 있음
 - 펀드 운용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운용기관 선정, 자펀드 운용사(GP) 양성 등 민간 인재양성 병행, 민간과의 네트워킹 강화 등

2) 지역의 특수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도 보완

□ 지역의 특수성과 공익성에 초점을 둔 프로젝트 추진

-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컨셉은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자금과 금융기법(PF)을 활용하여 순수 민간사업(수익성)과 보조·출연사업(공익성) 사이에 있는 사업을 프로젝트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일정 수준의 재무성이 확보되는 분야를 타겟으로 사업에 투자하고, 투자이익은 회수되어 지자체에 배당함으로써 신규사업의 새로운 씨드머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그림 5-3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사업 영역



출처 : 관계부처 합동(2023a)

-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목적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의 '시의성'과 정책금융 측면에서의 '민간투자 활성화' 목적이 지역개발 사업의 '공공성'보다 다소 우위에 있어 전국을 대상으로 수익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추진 중이라 볼 수 있음(박진경·양원탁, 2024)
 - 현재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그리고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금융논리'가 공공성보다 다소 우선시되고 있음
 - 즉,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어도 추진될 수 있는 프로젝트였으나, 펀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마중물로 기존보다 더 빨리 추진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음

- 경북의 자체펀드는 이러한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익성’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
 - 민간영역-지역활성화투자펀드-공공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부의 펀드 제도와 시너지 창출 도모
-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상황이며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투자위축, 건설경기는 더욱 악화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경상북도의 여건을 반영할 필요도 있음
 - 정부의 지역활성화 펀드가 수익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신속하게 추진된다면 경북 펀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구조로 추진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지역 내 균형발전 도모 및 특혜시비 방지

-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23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22년부터 10년간 연 1조 원 규모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원
 - 경북은 22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1개(김천시) 시 지역이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모펀드 3,000억 원 중에서 1/3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으로 출자되고 있으므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고, 지방소멸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
 - 경북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이 지방소멸 대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 중이므로 이와 연계하여 경북의 자체 펀드를 운용
- 경상북도는 지역의 시장구조와 시·군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추진하여 편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를 창출
 - 경북 실정에 부합하면서 지속가능한 수익을 어느 정도 창출할 수 있는 융복합 프로젝트에 함께 투자하고, 수익은 회수되어 지역사회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수익성 기반 공익성 사업을 추진하여 특혜 논란을 사전에 방지

3) 안정적인 펀드의 조성 및 운영기반 마련

□ 펀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

- 경상북도가 민간투자 활성화 자체 펀드를 통한 민관협력 과정에 적절히 개입하여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 마련이 중요함
 - 공공이 스스로 민간 부문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와 통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의미(OECD, 2008)
- 현재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도를 신설하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44조의2(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에 의거 지자체가 펀드에 직접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자금 출자 대상의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와 관련된 출자만 행정안전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출자의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위험(Risk) 헷징 전략 및 인센티브 강화 조치 마련

- 경상북도에서 민관협력 방식의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를 안정적으로 조성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위험(리스크)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평가하는 지침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투자위험과 운영위험 등을 관리하거나 배분할 때 펀드의 운영 주체인 경상북도의 정책 방향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어야 하며, 단계별 발생하는 위험 요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동시에 경상북도는 민간 부문의 펀드 출자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늘리기 위하여 각종 규제 개선과 절차 간소화, 그리고 민간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강화 등의 행정적인 지원책도 함께 마련 필요
 -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황 속에서는 투자자본의 회수가 불투명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차원에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추진절차 간소화 등의 유인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

제2절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 전략

1. 민자유치 사전 준비와 민간투자 활성화 로드맵 수립

□ 시군의 민자유치 사전 준비를 통한 불확실성 해소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의 투자 대상은 지역개발 프로젝트이며, 추진을 위해 수반되는 인허가 등 자치단체의 사전 준비가 필요
 - 토지 확보, 개발 추진을 위한 인·허가 등은 프로젝트 추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프로젝트 발굴 단계에서는 행정 리스크를 고려하여 발굴하고, 발굴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관련 리스크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로드맵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운용 기반 마련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를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펀드의 조성, 운용, 청산에 걸친 전반적인 사항과 추진 방향에 관한 로드맵이 필요
 - 정책 및 시장환경이 지속해서 변경되는 상황에서 펀드 조성하고 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법률과 조례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의 목표, 출자구조와 분야, 재정 출자 규모, 운용체계, 연차별 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 로드맵 수립 필요

2.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자체펀드 운용구조 마련

□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발굴 및 포트폴리오 구성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투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융복합 프로젝트의 발굴이 필요함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활성화와 지역투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측면에서 융복합 프로젝트 발굴 필요
 -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효율화, 민자사업의 수익성 개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의 운용 촉진 등 3가지 측면에서 자체 펀드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이에 관한 프로젝트 발굴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출자 유형 또는 개별 프로젝트에 따라 시장구조와 특성은 차이를 보이므로 각각의 공공성과 수익성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는 지역 또는 프로젝트 유형별로 수익성과 공공성은 차이를 나타내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작성 필요
 - 시군별, 프로젝트별 수익성 등의 특성은 차이를 보이므로 위험 분산과 균형 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구성

□ 지방정부에 적합한 펀드 운용구조 및 자금 운용방안 마련

- 위험 분산과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자의 구성과 경북도의 출자 규모, 펀드의 운용 형태를 설정
 - 위험 분산 측면에서 출자자를 시군, 기존의 정책펀드,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를 고려할 수 있으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 수준의 자체 출자 규모 필요
 - 위험 분산 측면에서 모펀드가 프로젝트별 자펀드에 출자되는 재간접펀드를 검토할 수 있으나, 기타 출자자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태를 설정
- 투자 방식으로 경북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적절한 투자금 회수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프로젝트별 수익성, 회수 자원 예측, 관리 등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추진

3. 펀드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 전문성을 갖춘 운용사 선정 및 성과 보상 체계 마련

- 전문성 있는 운용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운용사의 역량, 운영계획 적절성을 중심으로 평가 기준과 공모 절차를 마련
 - 운용사 역량은 조직과 인력, 투자 실적 및 성과, 재무 안정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주요 정책펀드 운용 경험에 대해 가점을 부여
 - 운영계획은 해당 펀드에 부합하는 운용 전략과 정책 목적 부합성, 투자 분야 이행 실효성, 투자 및 회수, 리스크 관리 등 운용 프로세스에 초점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운용사의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운용을 위하여 명확한 성과 보상 및 관리 방안을 동시에 마련
 - 펀드 투자를 통한 지역 고용 창출, 기업 유입 등 지역 활성화 효과, 수익 창출 등 정책 목표 달성 또는 수익에 초점을 둔 성과 보수 체계 마련
 - 운용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따라 운용이 이루어지되, 주기적으로 투자 성과, 부적절한 투자에 관한 관리 방안을 동시에 마련

□ 전문성에 기반한 펀드 운영을 위한 합의제 기구 운영

- 전문성이 요구되는 펀드 운영에 대해 행정이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가 필요
 - 합의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펀드운영 업무에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의사결정 구조 마련과 특혜 등 부적절한 운영을 방지하는 안정장치의 기능 담당
- 합의제 조직은 투자 분야별로 금융, 분야, 지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합의제 기구 구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
 - 투자 유형별 수익성과 공익성, 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을 차등화하고,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민간위원장 선임도 검토 가능

4. 추진체계 구축 및 인재 양성

□ 민간투자 전담조직 신설

-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펀드는 기획과 운영 전반에 걸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행정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
 - 현재 경북은 민간투자 펀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부재하여 개별 단위 업무가 산재되어 이루어지고 있어 전문적인 업무 수행에 한계
 - 정책펀드의 전반적인 기획과 운영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며, 운용사가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운용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 정부의 정책 펀드는 부처별로 전문적인 운용을 위한 별도의 운용기관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경북도의 민간투자 펀드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민자 프로젝트 관련 전문가 영입과 민관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
 - 민간투자 업무 전담 조직(민간투자활성화과)을 마련하고, 조직 내에 펀드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조직을 두어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
 - 펀드 관련 조직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자체 펀드를 통합하되, 기획 총괄, 프로젝트 발굴, 프로젝트 운영에 걸쳐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
 - 기획 파트는 투자 펀드 관련 법규 및 제도 마련, 펀드 운용 설계, 거버넌스 조직 및 운영 등의 기획 및 총괄 업무를 담당
 - 프로젝트 발굴 파트는 투자 분야별로 구분하여 펀드 방식으로 추진할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 담당
 - 프로젝트 운영 파트는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 및 고도화 업무를 담당

□ 인재 양성 및 네트워킹 강화

- 펀드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금융·투자 관련 풍부한 업무 경험을 지닌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기획력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성공가능성을 제고
 - 채용 대상은 공공금융기관에서 민간투자사업 관련 경험이 풍부한 자로 프로젝트 사례 발굴, 프로젝트 공동 기획 및 컨설팅, 관련 연구 및 정책지원, 유관기관 및 전문인력과의 네트워킹 등의 업무를 수행
- 경북의 민간투자활성화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간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한 산업인재 양성을 도모
 -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 관련학과 신설, 협약체결 등을 통한 전문인력 공급체계 확보 등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
 - 펀드 프로젝트의 분야별 전문가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관계 기업을 연결하고 수익성 보장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 및 프로젝트 반영
 - 자산운용사·건설사·운영사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투자설명회(IR) 개최하여 사업참여자를 모집하고 프로젝트 컨소시엄을 형성

제3절 중앙정부와 경북의 제도개선 방안

1. 중앙정부 제도개선 방안

1) 행정안전부 고시에 자체펀드 출자근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도를 신설하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44조의2(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에 의거 지자체가 펀드에 직접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제1항1호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정부 지원 자금 또는 내부 자금을 직접적으로 출자한 대상
 - 제1항제2호는 제1호와 유사한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 기존에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가 가능했음
 -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7호(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의 출자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
 - 영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뜻함
 - 영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상은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를 받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는 「상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범위로 함

- 행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조치를 해야 함
- 그러나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와 관련된 출자만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7호로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출자의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7호 제3조제1항: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7호 제3조제2항1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자펀드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7호 제3조제2항2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SPC

【표 5-2】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펀드 출자 가능 여부

펀드 종류	지할펀드	지할펀드 자펀드	지할펀드 SPC	지자체 자체펀드
출자가 가능 여부	○	○	○	×
법적 근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1호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2호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2호	×
	행안부 고시 제3조제1항	행안부 고시 제3조제2항1호	행안부 고시 제3조제2항2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개선안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44조의2(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 제1항제2호에서 제1호와 유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대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하므로 시행령 개정보다는 행정안전부 고시 항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적근거를 마련
 - 광역자치단체가 자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분권형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출자 대상 범위 고시 제3조제2항에 항목을 추가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 지역혁신, 지역의 혁신성장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직접 출자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표 5-3 | 자체펀드 출자근거 마련(안)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출자 대상 범위 고시(행정안전부)**

제3조(대상의 범위) ① 영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뜻한다.

② 영 제4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등의 투자를 받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 지역활성화 펀드의 자펀드
2.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는 「상법」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주식회사 → 지역활성화 펀드의 SPC
3. (신설)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이외에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지방소멸대응, 지역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 민간과 지자체가 지역에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를 펀드 체계를 통해 투자함으로써 국가재정 예산 절감 및 새로운 민·관 협업체계 구축 가능
 -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펀드’ 설계 및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특화 프로젝트 발굴·추진 가능

2) 재정사업투자심사제도 개선⁴⁾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는 지방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 운영과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목적으로 2009년에 도입되었음

4)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와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상호보완적인 구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근거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함께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재정사업 투자심사제도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해당 내용은 박진경·양원택(2024)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활성화 방안」의 개선안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지방자치단체는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뒤 투자심사를 의뢰·심의 후 예산을 편성하며, 심사에는 국가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 지역발전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능력, 재무·경제적 수익성, 주민 숙원·수혜도 및 사업요구도 등의 심사기준 적용(박진경·양원탁, 2024)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SPC 투자기관 및 자펀드 투자기관의 사업성 검증, 모펀드 위탁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의 프로젝트별 사업성 평가보고서 심사 등 다층적인 사업성 검토를 통해 투자여부가 결정되나, 재정 측면의 행정절차는 지속
 - 민간 입장에서 행정절차로 인한 투자지연은 금융비용의 추가 발생을 유발하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전용 Fast-Track과 재정투자심사 면제 방안도 마련이 되었지만, 다수의 프로젝트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발생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가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동일한 목적과 근거하에 추진되는 구조에서 펀드 출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44조의2(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에 의거 해당 지방의 회의 의결을 미리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자 심사를 거쳐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자펀드에 출자하지 않고, SPC에만 출자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2~3% 내외로 출자함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자심사를 받게 되는 상황 발생

□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외 사업 목록에 추가(제1안)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의거하여 지방재정 투자사업에서 투자 심사를 제외하는 사업의 리스트를 명시하고 있음
 - 재년 예방,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유지보수, 투자심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심의를 거친 사업 등 27개 항목에 관한 사업이 투자심사 제외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의거하여 펀드에 출자하는 경우 다층적인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의거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경우 해당 지방의 회의 의결, 자펀드 투자기관, SPC 참여기관,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 및 대주단의 다층적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음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2 관련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출자 관련 항목을 추가하도록 개정하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표 5-4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2 별표 개정(안)

* 지방재정법 시행령 [별표] - 투자심사 제외 사업(제41조의2 관련)

1.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된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나. 「방조제 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 및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를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하는 사업
 - 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사업
 - 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반영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마.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사업
2.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3.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투자심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대상사업
5.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사업
6.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원 사업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사업
8.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9.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6조에 따른 건널목 개량 사업
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1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발기반정리 사업
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출자 대상

1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경지 정리 사업
1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배수(排水) 개선 사업
1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17.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 사업
18.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1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다만,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21.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22. 「어촌·어항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2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24.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25.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건축 사업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26. 총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27.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가.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업
 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자료: 박진경·양원탁(2024 발간 예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지방자치단체 자체 심사 규정의 적용(제2안)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재정투자사업 심사는 시·도의 투자심사 대상 사업과 시·군·자치구의 투자심사 대상으로 구분되며, 총사업비와 사업의 유형에 따라 실시 주체가 행정안전부(중앙), 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음
 - 시·도 사업 중에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300억 원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홍보관 및 행사성 사업 등은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해당
 - 시·도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투자사업,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는 사업,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홍보관과 공연·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은 자체 심사 적용

- 시·군·자치구의 투자심사 대상 사업 중에서 6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의 투자사업 등은 시·도지사의 투자심사, 20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중앙투자심사가 요구됨
 - 반면 시장·군수·자치구의 자체적인 투자심사는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60억 원 미만의 투자사업 또는 총사업비 20억 이상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는 사업,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홍보관,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행사성 사업 등이 해당됨
- 시·도와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해야 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또는 자체 펀드 출자를 위해 요구되는 중앙투자심사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음
- 즉,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SPC에 출자하는 재원이 시·도의 경우 40억원 미만, 시·군·구의 경우 20억 원 미만이라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면제해 주는 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표 5-5 |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구 분	(이전재원 有) 신규투자사업	청사문화체육 시설 신축사업	홍보관 사 업	행사성 사 업	차관도입 해외투자
중앙심사	도) 300억원 이상 시군) 200억원 이상	도) 40억원이상 시군) 200억원이상	3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도 심 사	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시군) 6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	시군) 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시군심사	20억원 이상 ~ 60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주: 전액 자체재원 투자사업의 경우 자체심사 기준은 도 40억 원 이상, 시군 20억원 이상임
출처: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연구진 정리

2. 경상북도 제도개선 방안

1) 펀드운영위원회(가칭) 구성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의 투자심의위원회 역할

-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경우 사업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모펀드 위탁 운용사(성장금융) 내에 민간 금융전문가로 구성되는 투자심의위원회가 프로젝트 자펀드 출자여부에 대한 독립적인 최종 의사결정을 수행
 - 모펀드 운영위원회는 출자사업의 추진계획 및 운용방향을 수립하고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표 5-6 | 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기관의 역할

구분	역할
모펀드 운영위원회	출자사업 추진계획 및 운용방향 수립, 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등
모펀드 위탁운영사 투자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자펀드 출자여부 의사결정
자펀드 위탁운영사	모펀드 출자 신청, 펀드 결성, 프로젝트 자금 집행 등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3a)

□ 경북 펀드운영위원회(가칭) 운영 기반 마련

- 경북이 자체펀드를 조성하는 경우에도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북 내에 펀드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경북 도에서 출자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며, 운영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펀드 운용사(GP)를 선정하고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등의 역할 담당
 - 펀드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거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또는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 위원회에서 관련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안을 고려

| 표 5-7 | (가칭)경북 민간투자활성화 펀드운영위원회 구성(안)

구분	내용
목적	• (가칭)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의 조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기능	• (가칭)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출자사업 공고(안) 심의 및 자문, 성과평가 관련 사항 • (가칭)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운용사(GP) 선정에 관한 사항 • 시장의 리스크 파악, 위험요소 대응, 신규 펀드조성에 관한 아이디어 제안 등
구성	• 위원장(행정부지사)1인과 부위원장(기획조정실장) 1인 •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총괄심의 절차 마련

- 행정안전부의 균형발전제도과를 중심으로 시도 자체 (가칭)민간투자 활성화 펀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총괄심의 절차를 마련하여 2 track으로 운영하는 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등 시·도의 자체적인 펀드 조성 시, 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되, 시도지사 주재 심의와 행안부 총괄심의를 모두 거치도록 하여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

2) 표준조례 제정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표준조례를 제정하고, 시·군으로 확산을 도모
 - 조례는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운용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계획 수립, 합의제 기구, 펀드 조성 및 운용(기관 선정), 네트워킹 지원 등으로 구성된 조례의 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 하지만 시장구조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이 필요한 펀드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 방향 명확화, 제도적 근거 마련 및 특혜시비 방지에 초점을 두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틀을 제시하되, 세부 내용은 따로 정하는 방향을 검토

참고문헌

[국내 및 해외 문헌]

- 경상북도. (2021). 경상북도종합계획(2021~2040).
- 경상북도. (2023). 민선8기 도정 방향과 중점추진과제.
- 관계부처 합동. (2023a).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 (2023.7.12.)
- 관계부처 합동. (2023b).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7.12) 후속조치 주요내용. (2023.8.31.)
- 관계부처 합동. (2023c). '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
- 국회입법조사처. (2024).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출자: 관련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중점과제(단기) 보고서 제2205호.
- 금융감독원. (2015). 금융생활안내서(은행·중소서민금융편).
- 기획재정부. (2022). 202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기획재정부. (2024). 202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김도일·한명주·김재영·유진석·장정연. (2021). 국내 민간투자사업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 김현호·최지민·전성민. (2022).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기초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남재우. (2022). 국내 정책펀드 현황 및 제도 개선. 자본시장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2022).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22). 알기 쉬운 농식품모태펀드.
- 박진경·양원탁. (2024).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발간예정).
- 서울특별시. (2022). '서울 Vision 2030 펀드' 조성·운영 기본계획. (2022.7.)
- 서울특별시. (2023a). 서울 Vision 2030 펀드 운영위원회 신규 구성·운영계획. (2023.4.)
- 서울특별시. (2023b). 2023년 서울 Vision2030 펀드 출자사업 통합공고. (2023.8.14.)
- 서울특별시. (2024a). 서울 Vision 2030 펀드 조성·운영 변경계획. (2024.2.)
- 서울특별시. (2024b). 서울 Vision 2030 펀드 운영위원회 구성 개편 계획. (2024.4.)

- 서울특별시. (2024c). 2024년 서울 Vision 2030 펀드 출자 사업 통합 공고. (2024.4.24.)
- 서울특별시. (2024d). 2024년 서울 Vision 2030 펀드 우선협상 운용사 선정 결과 통합 공고. (2024.6.5.)
- 서호준. (2015). 국내외 정책금융 현황과 시사점. 중소기업금융연구 2015년 여름호. 신용보증기금.
- 손상호. (2013). 한국 정책금융의 평가와 분석 및 미래비전. KIF 정책분석보고서. 2013년 6월호. 한국금융연구원.
- 안옥진. (2022).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 현황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이상엽·이창민. (2014). 정책금융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방안: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이원섭·양진홍·박태선·김진범·강창민·김현호. (2018).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 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 전북특별자치도. (2023a).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2023.08.)
- 전북특별자치도. (2023b).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1조원」= 벤처펀드 조성·운용 기본계획 변경. (2023.11.)
- 전북특별자치도. (2024a). 민선8기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1조원)」 개요. (2024.5.30.)
- 전북특별자치도. (2024b). 2024년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출자사업 업무집행조합원 모집 공고. (2024.5.17.)
- 지방시대위원회. (2023).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
- 차미숙·조은주·곽윤신·전봉경·송우경·최희선·이상대·이동우·남윤우·이수진. (2022). 국가균형발전 3.0 패러다임 구축과 실천전략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3a). 2022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3b). 2023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 포항 영일만신항(1단계) 개발사업.
- C40 CITIES. (2016). C40 Cities Good Practice Guide – City Climate Funds. (2016.11.)
- FMDV. (2014). Resolutions Europe: Local innovations to finance cities and

- regions. (2014.7.)
- fi-compass. (2015). London Green Fund Case Study. (2015.4.21.)
- Kenroy Quellennec-Reid. (2015). Lessons Learnt from London Green Fund. (2015.6.4.)
- Mayor of London. (2021). MD2865 London Green Fund Financial returns. (<https://www.london.gov.uk/decisions/md2865-london-green-fund-financial-returns>)
- OECD. (2008).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Pursuit of Risk Sharing and Value for Money」. OECD Publishing.

[신문기사 및 보도자료]

- 경상북도 보도자료. (2024). 경상북도 민간투자활성화 프로젝트 설명회 개최(2024.5.3.).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4). 제6호 국토교통 혁신펀드 250억 원 규모 조성(2024.1.7.).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3). 2022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2023.1.3.).
- 손주락. (2022). 포항영일신항만 ‘돈 먹는 하마’ 악순환… 대책 없이 혈세만 축내. 영남 경제신문. 2022.11.27. <https://www.yn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6114>.
- 유근일. (2017). 성장사다리펀드 회수자금 재투자 본격화...3년간 1조원 출자 목표. 2017.1.15. <https://www.etnews.com/20170113000274>.
- 전북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24c). 전북 벤처펀드 운용할 투자사 9개 모집(5.17~6.7.).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3). 2022년 벤처투자 동향 발표(2023.1.30.).

[법령, 조례 및 관련 규정]

- 「농림수산물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물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73호, 2018. 9. 7., 일부개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28호, 2023. 9. 14., 일부개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257호, 2024. 2. 27., 일부개정)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987호, 2023. 12. 29., 일부개정)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512호, 2024. 5. 31., 일부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설립 기준」(행정안전부, 2022. 6. 29., 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89호, 2020. 6. 9., 일부개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140호, 2024. 1. 16., 일부개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4-7호, 2024. 1. 16., 제정)
- 「지방재정법」(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110호, 2024. 1. 9., 일부개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464호, 2024. 3. 11., 일부개정)
-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34호, 2024. 5. 31., 일부개정)

[웹사이트]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s://alio.go.kr/>
- 김천녹색미래과학관 <https://gcsm.gc.go.kr/>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https://www.apfs.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서울경제진흥원. <https://www.sba.seoul.kr/>
- 스마트팜코리아 <https://www.smartfarmkorea.net/>
- 영주적십자병원 <https://www.rch.or.kr/web/rchyoungju/>

의성군공립요양병원 <http://www.uschp.kr/>
지방재정365 <https://www.lofin365.go.kr/>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 <https://www.kvic.or.kr/>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https://infrainfo.kdi.re.kr/>
KDI 민간투자사업 통계 <https://infrainfo.kdi.re.kr/pv/stats/pvtinvstStats.do>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Amber Infrastructure Group. <https://www.amberinfrastructure.com/our-funds/london-energy-efficiency-fund/>
GOV.UK. <https://find-and-update.company-information.service.gov.uk/company/LP014322/filing-history>
PitchBook. <https://pitchbook.com/profiles/fund/13618-72F#overview>

[통계자료]

국립중앙의료원. (2023). 「공공의료기관현황(2023)」.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2022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농림축산식품부. (2023).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 2023.
통계청. (2021). 「농림어업총조사(2020)」.
통계청. (2023). 「GRDP(시/군/구)(2021)」.
통계청. (2024). 「농가경제조사(2022)」.
통계청. (2024). 「농업면적조사(2023)」.
통계청. (2024). 「전국사업체조사(2022)」.
통계청. (2024). 「지역소득(2022)」.
한국국토정보공사. (2023). 「도시계획현황(2022)」.
한국산업단지공단. (2020).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통계표(19.4분기).

- 한국산업단지공단. (2023). 「2023 전국·시도별 전국산업단지 현황지도」.
- 한국산업단지공단. (2024).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통계표(23.4분기).
- 한국은행. (2020).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
- 한국호텔업협회. (2023). 「2022 호텔업운영현황」.
- 행정안전부. (2014-2023). 주민등록인구 현황.
- 행정안전부. (2021). 「공공시설운영현황(2020)」
- 행정안전부. (2022). 2020 한국도시통계.
- 행정안전부. (2023). 「고령인구비율(2023)」
- 행정안전부. (2023). 「주민등록인구현황(2023)」

정책연구 2024-29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조성 방안 연구

저 자 양원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진경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발 행 일 2024년 7월 3일

발 행 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 소 (26464)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21(반곡동)

전 화 033-769-9999

홈 페이지 <http://www.krila.re.kr>

인 쇄 처 웃고문화사 033-748-6577

